



세법연구 20-07

세법연구 20-07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외사례 연구

세법연구 20-07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외사례 연구

#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외사례 연구

2020. 12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외사례 연구

2020. 12

##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정 다 운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이 성 현 세무사

이 서 현 연구원

# 목 차

I. 서론 .....	9
II. 우리나라의 식료품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11
1. 개요 .....	11
가. 의의 .....	11
나. 면세 적용대상 .....	12
2.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13
가. 개요 .....	13
나. 미가공식료품 면세제도 .....	15
다. 미가공식료품의 과·면세 판정 방법 .....	25
III. 주요국의 식료품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32
1. 유럽연합(EU) .....	32
가. EU 부가가치세 지침(VAT directive) .....	32
나. EU 회원국별 현황 .....	34
2. EU 회원국 외 주요국 .....	38
가. 미국 .....	38
나. 일본 .....	42
다. 영국 .....	44
라. 캐나다 .....	55

마. 중국 .....	61
바. 싱가포르 .....	65
사. 호주 .....	67
아. 뉴질랜드 .....	71
IV. 국제비교 및 결론 .....	74
참고문헌 .....	80
부록. EU 회원국의 식료품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83
1. 벨기에 .....	83
2. 불가리아 .....	87
3. 체코 .....	87
4. 덴마크 .....	88
5. 독일 .....	89
6. 에스토니아 .....	92
7. 아일랜드 .....	93
8. 그리스 .....	94
9. 스페인 .....	98
10. 프랑스 .....	100
11. 크로아티아 .....	101
12. 이탈리아 .....	102
13. 키프로스 .....	109
14. 라트비아 .....	110
15. 리투아니아 .....	113

16. 룩셈부르크 .....	113
17. 헝가리 .....	114
18. 몰타 .....	115
19. 네덜란드 .....	117
20. 오스트리아 .....	118
21. 폴란드 .....	120
22. 포르투갈 .....	123
23. 루마니아 .....	126
24. 슬로베니아 .....	127
25. 슬로바키아 .....	127
26. 핀란드 .....	129
27. 스웨덴 .....	130

## 표 목차

〈표 II-1〉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	12
〈표 II-2〉 우리나라의 면세하는 미가공식품 분류표[별표 1] .....	17
〈표 II-3〉 미가공식품 관련 판례 등 현황 .....	26
〈표 II-4〉 우리나라 미가공식품의 주요 과·면세 판정 사례 .....	28
〈표 III-1〉 EU 회원국별 식품 등 부가가치세 세율 .....	36
〈표 III-2〉 미국 5개 주의 사탕 및 탄산음료의 식품 포함 여부 .....	39
〈표 III-3〉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과세 제외 식품 .....	41
〈표 III-4〉 영국의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	45
〈표 III-5〉 영국의 Jaffa Cake 부가가치세 과세 세율 적용 시 판단 기준 .....	53
〈표 III-6〉 캐나다의 영세율 대상 식품 등([별표 6] III) .....	56
〈표 III-7〉 캐나다의 영세율 판단 사례 .....	60
〈표 III-8〉 중국의 식품에 대한 증치세 세율 .....	63
〈표 III-9〉 호주의 과세대상 식품[별표 1] .....	68
〈표 III-10〉 호주의 영세율 대상 음료[별표 2] .....	69
〈표 IV-1〉 조사대상국의 부가가치세 세율 구조 .....	74
〈표 IV-2〉 주요국의 식품에 대한 면세규정 유무 .....	75
〈표 IV-3〉 주요국의 식품 과세 구분 .....	76

〈부표 1〉 벨기에의 식료품별 경감세율 .....	84
〈부표 2〉 체코의 식료품별 경감세율 .....	88
〈부표 3〉 독일의 식료품별 경감세율 대상 .....	90
〈부표 4〉 아일랜드의 식료품별 경감세율 대상 .....	94
〈부표 5〉 그리스의 13% 경감세율 대상 식료품 .....	95
〈부표 6〉 스페인의 식료품별 경감세율 대상 .....	99
〈부표 7〉 프랑스의 식료품별 경감세율 대상 .....	101
〈부표 8〉 크로아티아의 식료품별 경감세율 대상 .....	102
〈부표 9〉 이탈리아의 식료품별 경감세율 대상 .....	103
〈부표 10〉 키프로스의 5% 경감세율 대상 .....	109
〈부표 11〉 라트비아의 5% 경감세율 대상 과일, 딸기, 채소 .....	111
〈부표 12〉 헝가리의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	115
〈부표 13〉 오스트리아의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	119
〈부표 14〉 폴란드의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	121
〈부표 15〉 포르투갈의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	124
〈부표 16〉 슬로바키아의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	128



# I. 서론

- 우리나라는 1977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도입 당시부터 미가공식품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 면세대상 미가공식품은 순수 미가공식품,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식품, 단순가공식품, 국내산 미식용 농·축·수·임산물로 규정되어 있음
  - 미가공식품의 면세 범위는 도입 이후 몇 가지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그러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의 범위에 대해서는 판례 및 예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1차 가공식품이란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건조, 냉동, 냉장 외 첨가, 가열 등 하나 이상의 가공 공정을 거치므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가공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주요국의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미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와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자함
  - 우리나라, EU 회원국, EU 회원국 외 주요국의 식품에 대한 면세 여부 및 과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세율을 비교해 보고 어떤 식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과세하는지 구체적인 범위 등을 조사·비교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현황에 대한 해외사례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함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제Ⅱ장에서 우리나라의 식료품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봄
  - 제Ⅲ장에서 EU 회원국 및 주요국의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등을 기술함
  - 제Ⅳ장에서는 해외 사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EU 회원국, 주요국의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비교하고 결론을 도출함

## Ⅱ. 우리나라의 식료품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1. 개요

#### 가. 의의

- 「부가가치세법」은 일정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두고 있음<sup>1)</sup>
  - 부가가치세의 면제란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sup>2)</sup>
  
-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는 소득의 역진성 완화, 부가가치세 생산요소, 그 밖의 조세정책적 목적 등으로 시행되고 있음<sup>3)</sup>
  - 면세는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조치로 주로 일반 국민들의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 국민복리후생, 문화용역, 기타 공익용역 등에 한해 적용됨
  - 또한 토지·노동·자본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생산요소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함
  - 이 밖에 일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도 면세를 허용함

---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2)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0-1

3) 삼일아이닷컴, 「조문해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http://www.samili.com/tax/Jomun.asp?Code=54-1#middle>, 검색일자: 2020. 12. 10.

## 나. 면세 적용대상

-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면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열거하고 해당 재화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 등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음
- (기초생활필수품)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가공식료품 등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해 면세함
  - (국민후생) 의료, 교육 등에 대해 면세함
  - (문화생활 증진) 도서, 예술창작품, 도서관 등 문화 관련 재화 및 용역을 면세함
  - (부가가치세 생산요소) 토지, 금융, 인적용역에 대해서 면세함
  - (공익목적) 우표,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등은 면세함
  - (수입) 관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도서 등을 면세함
  - (조세특례제한법) 특정 재화와 용역을 면세함

〈표 II-1〉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구 분	내 용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 미가공식료품, 농·축·수·임산물 -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 여객운송용역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국민후생	- 의료보건용역, 혈액 - 교육용역 등
문 화	- 도서·신문·잡지·통신 및 방송 등(광고 제외) -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비직업 운동경기 -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예의 입장 등
부가가치 생산요소	- 토지 - 금융·보험용역 - 인적용역

〈표 II-1〉의 계속

구 분	내 용
조세정책 공익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표,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 특수용 담배</li> <li>- 공익단체가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li> <li>-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li> <li>-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li> </ul>
관세 면제 (수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가공식료품</li> <li>- 도서·신문·잡지</li> <li>- 과학·교육·문화용 수입품</li> <li>- 공익목적으로 기증되는 재화</li> <li>- 여행자 휴대품, 외교관 물품 등</li> <li>- 재수입재화 및 재수출조건의 일시수입 재화</li> <li>-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등</li> </ul>
「조세특례 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용도 석유류</li> <li>- 공장, 광산, 학교 등의 구내식당 음식용역</li> <li>- 농·어업 대행용역</li> <li>-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리모델링 용역</li> <li>-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li> <li>-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li> <li>-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li> <li>- 학교시설관리운영권,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li> <li>-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 사업용으로 공급되는 버스</li> <li>- 간이과세자에게 제공되는 개인택시</li> <li>- 희귀병 치료제</li> <li>-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li> <li>-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등</li> </ul>

자료: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0-2(2020. 10. 28. 개정)

## 2.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가. 개요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 당시부터 미가공 식료품에 대해 면세를 적용함

- 미가공식품이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이하 ‘순수 미가공식품’),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이하 ‘1차 가공식품’)으로 정하고 있음<sup>4)</sup>
- 또한 미가공식품은 순수 미가공식품, 1차 가공식품 이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함
  -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품
  -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미가공식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즉 「부가가치세법」은 미가공식품 및 국내산 미식용 농·축·수·임산물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면서 미가공식품의 범위에 순수 미가공식품뿐만 아니라 1차 가공식품 및 특정 단순가공식품까지 포함시키고 있음<sup>5)</sup>
- 미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면제하는 미가공식품 분류표’에 따름
-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됨<sup>6)</sup>
- 미가공식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입법 취지는 기초생활필수품, 낮은 부가가치 창출, 영세농민 지원 등의 사유를 들 수 있음<sup>7)</sup>
- (기초생활필수품) 일반 소비자가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미가공식품을 공급받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6)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7) 임소영·박지연, 2018. p. 26.; 서울고법 2020. 10. 21 선고 2020누46648 판결 등 다수

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필수품인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낮은 부가가치 창출)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순수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식용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급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필요성이 낮음
- (영세농민 지원 등) 영세농민의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장부 작성·비치 등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세무행정의 관점에서 그들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 나. 미가공식료품 면세제도

- 이하에서는 미가공식료품과 미식용 농·축·수·임산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미가공식료품은 순수 미가공식료품, 1차 가공식료품,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나누어 살펴봄

### 1) 순수 미가공식료품

-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포함한 순수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sup>8)</sup>
- 순수 미가공식료품이란 다음의 가공되지 아니한 것으로 수입산을 포함함<sup>9)</sup>
  - 곡류
  - 서류
  - 특용작물류
  - 과실류

8)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9)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채소류
- 수축류
- 수육류
- 유란류(우유와 분유 포함)
- 생선류(고래 포함)
- 패류
- 해조류
- 상기 외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 소금을 말함)

□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료품에서 식용이란 현실적·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 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함<sup>10)</sup>

○ [별표 1]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별표 1]에 속하는 품목인지 확인하여 분류함<sup>11)</sup>

- 특정 식료품 등이 [별표 1]이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열거는 되어 있지만 가공유의 무기물 포함 정도 등 그 구성 성분비 등을 다투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을 참고하여 면세 여부를 판정함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은 원생산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의미함<sup>12)</sup>

○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이란 기본적인 모양·형태·상태

10)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0-3 제1항

11) 황중대·강인·신정기, 2018, p. 694.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등의 외관적인 면에서 변화가 없어야 함<sup>13)</sup>

-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에는 껍질 벗기기, 단순 건조하기, 소금에 절이기, 자르기, 별목 등의 있음
- 반면 가루로 빵기(정제·제조), 분쇄, 공예 등은 원시 가공단계를 초과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표 II-2〉 우리나라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별표 1]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 곡류	1001	① 밀과 메슬린(meslin)
	1002	② 호밀
	1003	③ 보리
	1004	④ 귀리
	1005	⑤ 옥수수
	1006	⑥ 쌀(벼를 포함한다)
	1007	⑦ 수수
	1008	⑧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1101	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1102	⑩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3	⑪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pellet)
	1104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
	1106	⑬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관세율표 제0713호의 것)의 거친 가루, 가루
2. 서류	0714	① 매니옥(manioc)·취뿌리·살렘(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교야자(sago)의 심(pith)

13) 황종대·강인·신정기, 2018, p. 702.

〈표 II-2〉의 계속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2. 서류	1106	②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관세율표 제0714호의 것)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0701	③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105	④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레이크(flake), 알갱이, 펠릿(pellet)
3. 특용 작물류	0901	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껍질과 웨이스트(waste)
	0902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0904	③ 후추(파이퍼(Piper) 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 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 속의 열매
	1201	④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	⑤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6	⑥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	⑦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일[팜너트(palm nut)와 핵(核), 목화씨, 피마자, 잇꽃 종자, 양귀비씨는 제외하며, 부수었는지는 상관없다]
	1208	⑧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일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1212	⑨ 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11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1801	⑪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1802	⑫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2401	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0910	⑭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생강
	4. 과일류	0801
0802		②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3		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④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⑤ 감귤류의 과일(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		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표 II-2〉의 계속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4. 과실류	0807	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	⑧ 사과·배·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	⑨ 살구·체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1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0812	⑫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	②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	③ 양배추·꽃양배추·구경(球莖)양배추·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5	④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	⑤ 당근, 순무, 셀러드용 사랑무부리, 선모(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부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7	⑥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	⑦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은 제외한다)
	0711	⑩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3	⑫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쪄낸 것인지에 상관없다)

〈표 II-2〉의 계속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6. 수축류	0101	① 말(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제외한다), 당나귀, 노새와 버새
	0102	② 소(물소를 포함한다)
	0103	③ 돼지
	0104	④ 면양과 산양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0106	⑥ 그 밖의 살아있는 동물(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1	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	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	④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5	⑤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	⑥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버새의 식용 설육(脛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脛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8	⑧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脛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9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脛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脛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0504	⑪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511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腱)·근(筋)과 원피의 웨이스트(waste)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506	⑬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8. 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0402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표 II-2〉의 계속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8. 유란류	0407	③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8	④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1901	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아용 조제 분유로 한정한다.
	3502	⑥ 알의 흰자위(egg albumin)(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0302	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	③ 냉동어류[기름치 (Oilfish, 학명 <i>Ruvettus pretiosus</i> )와 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4	④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찢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8	⑧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511	⑨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류의 웨이스트(waste)(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백합·홍합·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표 II-2〉의 계속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미역·툇·파래·다시마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0409	① 천연꿀
	0410	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1212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2501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계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09	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 종자 ⑦ 쌀에 인산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 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

## 2) 1차 가공식료품

- 순수 미가공식료품에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1차 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1차 가공이란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함<sup>14)</sup>
- 원생산물은 경작되거나 자연 상태 그대로 있는 것, 이를 상품화 또는 운반 가능한 상태까지 작위를 가한 것, 운반되어 재고 등으로 남아 있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sup>15)</sup>

1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1차 가공식료품 관련 판단사례는 ‘다. 2) 국세청 해석편람’에서 살펴봄

### 3) 단순 가공식료품 등

- 단순 가공식료품은 김치, 두부 등으로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sup>16)</sup>
  - 단순 가공식료품이란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으로 규정되어 있음
  - 단순 가공식료품은 부패성이 강하여 유통 및 저장기간이 짧고 진열판매가 불가능하며, 구입 즉시 식용에 공하여야 하는 특성상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보다는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함<sup>17)</sup>
- 단순 가공식료품은 정책적 취지에 따라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sup>18)</sup>
  - 단순 가공식료품은 원칙적으로 미가공식료품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책적 취지에 따라 열거된 가공식료품에 한해 면세 혜택을 부여함
- 한편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제조시설이란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정의는 없으나 판례에 따르면 원료를 가공하여 그 본래의 성질이 변화된 제품을 만드는 시설은 물론 그와 같이 만들어진 제품을 보관·소분·포장하기 위한 시설(설비, 도구)도 제조시설에 포함된다고 판시함<sup>19)</sup>
  - 독립된 거래단위란 김치·젓갈류·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을 말함<sup>20)</sup>

15) 황종대·강인·신정기, 2018, p. 697.

1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⑤

17) 조심2011광2674, 2012. 5. 21.

18) 서울행법 2020. 09. 04. 선고 2019구합72458 판결

19) 대전고법 2016. 11. 17. 선고 2016누11610 판결

20)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4-5

- 즉 김치를 시장의 반찬가게에서 구입하는 경우 면세대상이나 마트 등 진열대에서 포장된 김치를 구입하는 것은 과세대상임

#### 4) 국내산 미식용 농·축·수·임산물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sup>21)</sup>
  -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거나 미식용인 경우에는 해당 재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다 함은 국내에서 재배, 사육, 번식, 채취된 것을 의미하며 외국에서 수입된 것은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면 과세대상임<sup>22)</sup>
- 농산물이란 농업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말하고 축산물이란 축산업 및 수렵업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말함<sup>23)</sup>
  - 미식용 농·축·수·임산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세대상에서 제외됨
    - 가마니, 이엉(따름), 광강, 탈지강 및 왕겨, 계분, 닭 또는 오리의 털,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축의 뼈, 제재 후 생기는 폐목, 목탄(숯), 흙, 자연석, 인노 등은 농·축·수·임산물 등에 해당되지 않음

#### 5) 그 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대상임<sup>24)</sup>
  -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22) 황종대·강인·신정기, 2018, p. 702.

23) 황종대·강인·신정기, 2018, p. 701.

2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

-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 기능성 쌀
  - 쌀에 인산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함) 쌀의 함량이 9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식료품에는 다음의 것 등이 있음
  -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sup>25)</sup>
    - 전분, 면류, 팥·콩 등의 앙금, 떡, 한천, 묵, 인삼차, 엿기름
  - 조미료·향신료 등을 가미하여 가공 처리한 식료품<sup>26)</sup>
    - 맛김, 볶거나 조미한 멸치, 조미하며 건조한 쥐치포 등 어포류

## 다. 미가공식료품의 과·면세 판정 방법

-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판례 및 예규 등을 통해 사실판단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미가공식료품 관련 판례 및 국세청 해석편람을 살펴봄

### 1) 판례 등

#### 가) 현황

- 최근 3년간(2018~2020년) 미가공식료품 관련 판례 등은 총 72건임<sup>27)</sup>

2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4-4

2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4-3

27) 판례는 이택스코리아(<http://www.etaxkorea.net>) 「예규판례」에서 2018. 1. 1.~ 2020. 12. 31.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법 미가공'으로 검색한 결과임. 상기 결과는 하나의 청구대상이 심판(사)청구,

- 항목별로 판례 15건, 심사 및 심판청구 34건, 예규 23건이 있음
  - 포장 김치 등이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1차 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 및 면세품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판단기준, 정육식당 과세 여부 등이 있음

〈표 II-3〉 미가공식료품 관련 판례 등 현황

(단위: 건)

구분	판례	심판(사)청구	예규	합계
포장 김치 등	14	32	3	49
천연감미료, 염장액 등 투입			7	7
과·면세 혼합 판매			5	5
소금	1	1		2
정육식당		1		1
기타			8	8
합계	15	34	23	72

주: 2018~2020년  
 자료: 이택스코리아, 「예규검색/세목별예관」, <http://www.etaxkorea.net>, 2018~2020년 기준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 나) 주요내용

### □ 포장 김치 등 과세대상 여부<sup>28)</sup>

-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포장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김치·두부 등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포장 형태를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달리 판단하도록 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 미가공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법 취지, 미가공식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면서 중복 집계된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 건수는 이보다 적음

28) 대법 2020. 11. 26. 선고 2020두46578 판결, 서울고법 2020. 10. 21 선고 2020누46648 판결, 외 다수

료품에 있어서 1차가공의 의미, 포장의 기능과 부가가치 창출 등에 비추어 포장 형태를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장 김치는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함

- 천연감미료, 염장제 등을 투입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 토마토의 단맛을 향상시키고 저장성과 신선도를 좋게 하기 위하여 소량의 천연 감미료를 흡착 투입한 토마토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sup>29)</sup>
  -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sup>30)</sup>
  
-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 별개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나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는 경우는 주된 재화에 따름<sup>31)</sup>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양념장, 우동사리, 당면사리)와 면제되는 재화(곱창과 채소류)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면세 여부에 따르는 것임<sup>32)</sup>
  
- 정육식당 과세대상 여부
  - 식육으로 판매된 후 음식점에서 소비된 식육 매출은 과세대상임<sup>33)</sup>
    - 식육판매장과 음식점이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사용되고 식육대금과 음식점 이용대금이 한꺼번에 결제되는 점, 일반음식점과 비교할 때 고기를 직접 고르는 점 이외에 실질적인 차이점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됨

29) 사전법령해석 부가2020-264, 2020. 04. 16

30) 사전법령해석 부가2019-809, 2020. 01. 14, 서면부가2018-1489, 2018. 05. 31. 외 다수

31) 사전법령해석 부가2020-532, 2020. 06. 26.

32) 사전법령해석 부가2018-803, 2018. 12. 26

33) 갑심2017-162, 2019. 02. 14.

2) 국세청 해석편람

- 미가공식품 관련 국세청 해석편람을 순수 미가공식품, 1차 가공식품, 단순가공식품, 미식용 농·축·수·임산물로 구분하여 과·면세 여부에 대해 사례별로 정리함
  - 1차 가공식품은 크게 건조, 첨가, 가열, 냉동, 단순포장으로 분류함
- 해석편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조미, 가열, 혼합 등은 미가공식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조미, 가열, 혼합의 경우에도 보존을 위한 조미 여부, 형태유지를 위한 가열 정도, 단순가공식품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있음

〈표 II-4〉 우리나라 미가공식품의 주요 과·면세 판정 사례

구분	면세	과세
순수 미가공 식품	- 북한산 농·축·수·임산물	
	- 타조, 사슴	- 곰, 거북이 수입·판매
	- 쇠고기	- 수삼덩어리 및 수삼엑기스를 주입하여 진공포장한 후에 숙성시킨 상태의 쇠고기
	- 유당 분해우유, 조제분유, 고지방우유, DHA 우유	- 초코우유
1차 가공 식품	-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분쇄한 것, 분상한 것에 한함)	
	- 단순 건조한 오징어 등	- 구운생선, 구운 오징어
	- 잘게 썰은 냉동부추	- 냉동 전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냉동채소
등 장	- 신선·냉장·냉동한 돼지고기 등	- 돼지고기 등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
	- 단순히 운반의 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젓갈류(액젓 포함)	- 액젓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
	- 염장미역 - 염장해파리 - 포장하지 아니한 염장 무우	

〈표 II-4〉의 계속

구분	면세	과세
포장	- 천연꿀을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 사업자가 일회용 컵꿀에 물을 부어서 꿀차로서 판매하는 경우(무인판매기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 삼계탕용 재료인 대추, 인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첨가·조미	- 선어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인산염 및 솔비톨 등)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	- 어류의 살코기를 조미하여 건조한 것
	- 김	- 설탕, 구루타민산소다, 소금 등을 가한 맛김, 즉석구이 김
1차 가공 식료품	- 누에고치(생견)를 열처리로 건조시킨 마른 누에고치	- 누에번데기 - 누에가루(약간의 찹쌀가루를 혼합한 경우 포함)를 반죽한 후 열을 가하고 압축하여 일정한 형태로 가공한 누에환 등
	- 국내산 약초를 건조·절단·가공·포장한 규격품 한약	- 규격품 한약 중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법제 대상
	- 골뱅이·문어·새우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냉동·보관 후 판매	
	- 보리를 마찰 및 연삭 가공하여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시켜 증자한 압편보리쌀	- 메밀 또는 도토리를 분쇄 가열하여 만드는 메밀묵 등
가열·볶음		- 증기로 삶은 찹옥수수 - 볶은 소금, 볶은 땅콩 - 군밤 - 죽염 -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찌서 익혀 말린 홍삼 및 홍삼 분말 - 끓는 물에 5분간 데치고 다시 85도의 물속에서 50분간 살균과정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 - 삶은 계란, 삶은 냉동채소 - 열처리하여 절단 포장한 생미역, 양파, 부추 등 - 어류, 패류를 탈피 탈곡하여 정육만을 물에 삶은 것 - 생고막에 고압의 증기를 가하여 생고막의 껍질을 벗겨 수요자가 원하는 상태로 포장·공급

〈표 II-4〉의 계속

구분		면세	과세
1차	가열·볶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계를 삶아 홍계살을 분리한 후 계육만 포장 판매</li> <li>- 삶아서 소금으로 조미하여 냉동한 우엉, 토란, 연근, 시금치</li> <li>- 차나무의 생엽 등을 볶아서 만든 작설차</li> <li>- 옥수수나 보리를 볶아서 얻어진 차류</li> <li>- 쌀과 밀가루로 만든 가래떡</li> <li>- 팥과 강낭콩으로 제조한 앙금</li> <li>- 볶은 쌀가루, 튀긴 쌀가루, 옥수수로 만든 전분</li> </ul>
	가공식품 등	혼합·양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종의 곡분 등 혼합·포장</li> <li>- 생크림, 유당, 카제인, 중조,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혼합 전지분유</li> <li>- 꿀벌새끼에 꿀, 로얄제리, 소금, 마늘, 계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장아찌</li> <li>- 닭에 밀가루, 우유, 계란, 미원, 후추, 소금 등을 혼합한 반죽을 씌워 공급하는 경우</li> <li>- 순대</li> <li>-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즉석 돈까스</li> <li>- 맛을 내기 위하여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li> <li>-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생강, 소금, 구연산 등을 배합하여 만든 조미료(다데기), 양념류</li> </ul>
단순가공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계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별표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li> <li>-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두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땅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땅콩두부</li> <li>-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두부제조용 두유(콩물)</li> </ul>
국내산미식용농·축·수·임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용에 공하지 않는 수입한 축산물을 성장시킬 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육한 후 판매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히 보관을 목적으로 사육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렁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지렁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벗짚</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끼(농가부업소득자는 면세)</li> </ul>

〈표 II-4〉의 계속

구분		면세	과세
국내산 미식용 농·축· 수· 임산물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패각	- 패각으로 제조한 패분 - 목탄(숯) - 계분
		- 잔디	- 수입한 화훼류종자(꽃씨)
		-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	
그 외	부 산 물	- 제분업체의 소맥분 제조가공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속의 밀눈 -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썬미·설미 - 식용의 내장, 두골, 족 등 식용 설육 - 천일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즙 -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싸래기	

자료: 「국세청 해석편람」 12-1-1 내지 12-11-3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 Ⅲ. 주요국의 식료품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1. 유럽연합(EU)

##### 가. EU 「부가가치세 지침(VAT directive)」

-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간 세율을 평준화하고 부가가치세의 중립성을 추구하기 위해 여러 차례 「부가가치세 지침」을 제·개정해 왔으며, 2006년에 제6차 EU 「부가가치세 지침」을 개정하여 현행 EU 부가가치세제 기틀을 세움<sup>34)</sup>
- 제6차 EU 「부가가치세 지침」은 1977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1993년 일부 개정되었다가 최신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2006년 전면 개정되었음
  - 1993년 개정 시 표준세율을 최저 15%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경감세율(reduced rate)을 최대 2단계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음
- 현행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15% 이상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standard rate)을 적용하여야 함<sup>35)</sup>
- 단 각 EU 회원국은 EU 「부가가치세 지침」 부록(Annex) III에 규정된 재화와 용역에 한해 5% 이상의 경감세율을 1개 또는 2개 적용할 수 있음<sup>36)</sup>
- 경감세율을 적용할 때 회원국은 관세(CN) 코드를 사용하여 정확한 범위를 규정할 수 있음<sup>37)</sup>

---

34) 안창남, 2019, p. 31.

35) EU 「부가가치세 지침」 제97조

36) EU 「부가가치세 지침」 제99조 제1항

- 부록(Annex) III에 열거된 경감세율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은 식료품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것들임
  - 사람·동물용 식료품(foodstuffs)
    - 살아있는 동물, 종자, 식물, 일반적으로 식품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 일반적으로 식품을 보충하거나 대체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을 포함함
    - 음료를 포함하나 알코올음료는 제외함
  - 물의 공급
  - 의약품, 장애보조기구·카시트 등, 면세대상이 아닌 의료·치과진료 용역 등
  - 승객 및 수하물 운송
  - 서적 및 신문, 정기간행물, 문화행사·시설 입장료, 라디오 및 TV 방송 서비스 수신, 스포츠 행사 입장, 스포츠 시설 사용
  - 사회정책의 일환인 주택 공급·건설·개조·변경, 호텔 등 숙박시설,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공급한 재화와 용역, 쓰레기 수거·폐기물 처리 관련 용역 등
  - 농업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기계·건물 등 자본재는 제외함)
  
- 각 EU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제는 기본적으로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르나, 일부 이와 부합하지 않는 규정도 존재함
  - 일례로 2020년 현재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의 5개국은 식료품 등 일부 품목에 5% 이하의 초경감세율(super reduced rate)을 적용할 수 있음
    - 1991년 전부터 사회 정책적 목적(저소득층 지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화의 소비 촉진 등)으로 5% 이하의 세율로 과세하던 품목이 있다면 각 EU 회원국은 현재에도 해당 품목에 5% 이하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음<sup>37)</sup>
    - 1991년 이전에 이미 5% 이하의 세율로 과세하던 품목에 한하므로, 식료품에 대해 초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EU 회원국은 한정됨<sup>38)</sup>

37) EU 「부가가치세 지침」 제98조 제3항

38)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2016, p. 277.

39) European Commission, 2020, p. 2.

- EU 「부가가치세 지침」은 명령이 아니므로 EU 각 회원국이 일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임
- 다음 절에서는 각 회원국의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제도를 조사함<sup>40)</sup>

## 나. EU 회원국별 현황

- EU 회원국은 부가가치세 세율로 표준세율과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등 대부분 복수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음
  - EU 회원국의 표준세율은 17~25%이며, 경감세율은 5~18%로 다양함
    - 단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의 5개국은 5%보다 낮은 초경감세율을 일부 식료품에 적용함
  - 덴마크는 경감세율 없이 25%의 단일세율로만 과세함
  
- EU 회원국은 식료품에 대해 대부분 경감세율을 적용하나 표준세율 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도 있음
  -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는 식료품에 대해 표준세율을 적용함
  - 아일랜드는 기본식료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며 그 외 식료품은 경감세율·표준세율로 과세함
  - 몰타는 식료품에 기본적으로 영세율로 과세하나 과자류는 경감세율, 케이터링 과정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표준세율로 과세함
  - 그 외 국가는 경감세율을 적용함
  
- EU 회원국은 국가별로 경감세율 대상 식료품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
  - 국가별 식료품 분류가 상이하므로 주요 식료품을 다음과 같이 임의로 분류함
    - ① 필수식료품: 빵, 우유 등
    - ② 기본식료품: 곡류, 육류, 생선, 채소, 과일, 유제품 등

40) 일부 EU 회원국의 「부가가치세법」을 원문이 아닌 IBFD의 비공식 영문 번역본에 근거하여 작성함

- ③ 일반식료품: 기본식료품에 과자류 포함
- ④ 과자류: 과자, 코코아, 초콜릿 등
- ⑤ 고급식료품: 랍스터, 캐비어 등
- ⑥ 모든 식료품: ①~⑤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 다만 식료품의 종류가 필수식료품, 기본식료품, 일반식료품 중 2개 이상의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선행번호를 우선 적용함

□ EU 회원국의 개략적인 식료품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및 세율은 <표 III-1>과 같이 분류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에 수록함

○ 일부 EU 회원국(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스웨덴)은 모든 식료품에 경감세율을 적용함

○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식료품을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경감세율로 과세하는데, 일부 열거된 식료품, 필수·기본식료품과 그 외 식료품(과자류 등)을 차등함

- 스페인, 크로아티아, 이탈리아는 빵·우유 등 필수식료품에 한해 가장 낮은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경감세율을 적용함

- 루마니아는 모든 식료품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나 고품질 음식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라트비아는 과일·채소·딸기류에 한해 경감세율을 적용하며, 슬로바키아는 육류·유제품·생선·채소·케이크·빵 등 열거된 일부 식료품에 한해 경감세율을 적용함

- 몰타는 식료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자류에는 경감세율, 케이터링 과정에서 공급된 식품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함

- 벨기에, 독일, 프랑스, 폴란드는 일반적인 식료품은 경감세율로 과세하나 랍스터·캐비어와 같은 고급식료품은 표준세율로 과세함

〈표 III-1〉 EU 회원국별 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세율

(단위: %)

구분	표준세율	경감세율	식료품 등 세율 <sup>1)</sup>
벨기에	21	6, 12	-6: 일반식료품 -12: 마가린 -21: 고급식료품
불가리아	20	9	-20: 모든 식료품
체코	21	10, 15	-10: 유아 및 어린이 식품, 제분제품, 맥아, 전분 등 -15: 그 외 식료품
덴마크	25	-	-25: 모든 식료품
독일	19	7	-7: 일반식료품 -19: 주스, 랍스터·캐비어 등 고급식료품
에스토니아	20	9	-20: 모든 식료품
아일랜드	23	4.8, 9, 13.5	-0: 기본식료품 -4.8: 가축 등 -9: 뜨거운 식음료, 자판기 또는 케이터링 식음료 -13.5: 케이크 등 -23: 주스, 과자류 등
그리스	24	13	-13: 일반 식료품 -24: 주스 등
스페인	21	4, 10	-4: 필수식료품(빵, 우유, 치즈, 달걀, 과일, 채소, 곡류) -10: 그 외 식료품
프랑스	20	2.1, 5.5, 10	-5.5: 기본식료품 -10: 식품제조용 미가공 농수산물 -20: 초콜렛이 포함된 가공식료품, 마가린, 캐비어
크로아티아	25	5, 13	-5: 필수식료품(빵, 우유) -13: 신선, 냉장, 건조한 기본식료품
이탈리아	25	4, 5, 12	-4: 필수식료품(우유, 버터, 빵, 곡류, 과일, 채소 등) -5: 바질 등 특정 식물 -12: 일반식료품 -25: 고급식료품
키프로스	19	5, 9	-5: 모든 식료품 -19: 특정음료
라트비아	21	5	-5: 과일, 딸기, 채소(열거된 것에 한함) -12: 유아용 식품 -21: 그 외 식료품
리투아니아	21	-	-21: 모든 식료품

〈표 III-1〉의 계속

구분	표준세율	경감세율	식료품 등 세율 <sup>1)</sup>
룩셈부르크	17	3	-3: 모든 식료품
헝가리	27	5, 18	-5: 기본식료품(육류, 달걀, 생선, 식품 보조제 등) -18: 기본식료품(유제품, 곡물) -27: 그 외 식료품
몰타	18	0, 5	-0: 기본식료품 -5: 과자류 -18: 케이팅 과정에서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는 식품(공급된 장소에서 섭취되는 것이 일반적인 식사 또는 스낵, 액상형태로 공급된 밀크셰이크·차·커피·초콜릿,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등)
네덜란드	21	9	-9: 모든 식료품
오스트리아	20	10	-10: 모든 식료품
폴란드	23	5, 8	-5: 기본식료품(빵, 육류, 신선과일, 채소, 유제품 등) -8: 일반식료품(신선감귤류 과일, 보존 처리된 과일, 말린 채소, 견과류, 일부 과자류(pastry goods) 등) -23: 고급식료품, 감미료, 미네랄워터 등
포르투갈 <sup>2)</sup>	23	6, 13	-6: 기본식료품(곡류·육류·생선·유제품·채소 등) -13: 기본식료품(연체동물의 통조림·조리된 식사·탄산수 등) -23: 그 외 식료품
루마니아	19	5, 9	-5: 고품질음식(루마니아 농촌개발부가 산악·친환경적·전통적 제품이라고 인정한 음식) -9: 모든 식료품
슬로베니아	22	9.5	-9.5: 모든 식료품
슬로바키아	20	10	-10: 일반식료품(육류, 유제품, 생선, 채소, 케이크, 빵 등 열거된 것에 한함) -20: 그 외 식료품
핀란드	24	14	-14: 모든 식료품 -24: 수돗물, 살아있는 동물, 사람·동물 섭취용 식품의 제조 외의 산업용도로 사용된 제품
스웨덴	25	12	-12: 모든 식료품

주: 1) EU 「부가가치세 지침」은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식료품의 범위에서 알코올음료를 제외하므로, 본 표에서도 알코올음료에 대한 서술은 생략함

2) 포르투갈은 부가가치세 과세 시 3개 지역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데, 본문은 포르투갈 본토(mainland Portugal) 지역의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본 보고서 〈부록〉의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2. EU 회원국 외 주요국

### 가. 미국

#### 1) 개요

-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없으며 소비세로 각 주별로 판매세(sales tax)를 부과하고 있음<sup>41)</sup>
  - 판매세는 일반적으로 주 판매세에 지방판매세(local tax)가 합산되어 부과됨
  
- 미국의 대부분 주는 식료품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과세 제외되는 식료품의 범위는 각 주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sup>42)</sup>
  - 식료품을 식료품 고유의 특성으로 분류한 후 판매세 면제대상에 포함하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식료품에 한해 판매세를 면제함
    - 매사추세츠주는 식료품을 육류 및 육류제품, 생선 및 생선제품, 계란 및 계란 제품, 채소 및 채소제품, 과일 및 과일제품으로 구분하고 판매세를 면제함
    -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미 농무부 식품 쿠폰으로 구입할 수 있는 미가공식료품(unprepared food)에 대해 판매세를 면제함
    - 애리조나주는 적격 식품 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정 내 소비를 위한 식료품에 대해 판매세를 면제함
  
- Katherine Loughead(2018)에 따르면 식료품에 대한 판매세 면제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식료품을 과세 제외 식료품으로 정할 것인가

41) IBFD, "United States - Sales and Use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 June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us\\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us_s_007.html), 검색일자: 2020. 12. 8.

42) Katherine Loughead, 2018, pp. 2~3.

가의 문제는 난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sup>43)</sup>

- 가령 사탕과 탄산음료를 살펴보면 주별로 식품품 포함 여부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음
  - 애리조나주는 사탕과 탄산음료를 식품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매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사탕은 식품품으로 보아 판매세를 면제하는 반면, 탄산음료는 식품품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에 해당됨

〈표 III-2〉 미국 5개 주의 사탕 및 탄산음료의 식품품 포함 여부

(단위: %)

구분	판매세 세율	식품품에 대한 판매세 세율	식품품 포함 여부	
			사탕	탄산음료
애리조나주	5.60	면제	○	○
아칸소주	6.50	1.5	×	×
캘리포니아주	7.25	면제	○	×
콜로라도	2.90	면제	×	×
그루지야	4	면제	○	○

자료: Katherine Loughead, 2018, p. 5.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 이하에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식품품 관련 판매세 제도를 알아봄

## 2) 캘리포니아주의 식품품 관련 판매세

- 캘리포니아주의 판매세는 7.25%임
  - 일부 카운티와 도시에서는 더 높은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음<sup>44)</sup>
    - 로스앤젤레스 산타페 스프링스의 판매세는 10.5%로 가장 높게 부과되고 있음

43) Katherine Loughead, 2018, p. 4.

44) 캘리포니아주 세무관청, "California City & County Sales & Use Tax Rates," <https://www.cdfa.ca.gov/taxes-and-fees/rates.aspx>, 검색일자: 2020. 12. 8.

- 캘리포니아주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소비하는 식음료는 과세하지 않음<sup>45)</sup>
  - 식료품은 곡류, 육류, 생선, 달걀, 채소, 과일, 소금, 설탕, 소스 등이 있으며 사탕, 과자, 껌을 포함함
  - 또한 모든 과일 및 채소주스, 기타 음료를 포함하나 탄산음료, 탄산수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식료품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미식용의 경우 과세대상임<sup>46)</sup>
  - 알코올음료, 탄산음료 등은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됨
  - 애완동물이 소비하거나 생선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 판매되는 식료품은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임
  
- 한편 뜨겁게 조리된 식료품은 과세대상이나 뜨거운 제빵 제품은 판매세가 면제됨<sup>47)</sup>
  - 뜨겁게 조리된 식료품은 포장(sold to-go)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임
    - 뜨거운 식료품은 상온 이상으로 가열하거나, 식었을지라도 뜨거운 상태로 판매하기 위한 것은 뜨거운 것으로 간주됨
  - 다만 갓 구운 프레첼이나 크로와상 같은 뜨거운 제빵 제품은 포장하는 경우 판매세가 과세되지 않음
    - 뜨거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료와 함께 판매하거나 매장에서 먹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

45) Sales And Use Tax Regulations, Regulation 1602 (a) Food Products

46) CDTFA, 2020, p. 2.

47) 캘리포니아주정부 세무관청, "Tax Guide for Grocery Stores," <https://www.cdtfa.ca.gov/industry/grocery.htm#Topics>, 검색일자: 2020. 12. 8.

〈표 III-3〉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과세 제외 식료품

과세 제외 식료품
- 곡물 및 곡물 제품
- 맥아 및 맥아 추출물
- 우유 및 우유 제품,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아이스크림·아이스밀크 노벨티, 셔벗, 모조 아이스크림, 모조 아이스밀크, 건조 우유 제품, 우유 설탕, 밀크 웨이크, 맥아 우유, 우유 및 우유제품이 포함된 기타 유사한 음료
- 올레오마가린
- 육류 및 육류제품, 생선 및 생선제품, 계란 및 계란제품, 채소 및 채소제품, 과일 및 과일제품
- 조미료 및 소금, 커피 및 커피대용품, 차, 코코아 및 코코아제품, 설탕 및 설탕제품, 유아용 식품, 제빵 제품, 마시멜로, 베이킹파우더, 베이킹소다, 타르타르 크림, 코코넛, 향료 추출물
- 밀가루, 젤라틴, 젤리 가루, 겨자, 땅콩버터, 소스, 수프, 시럽, 이스트 케이크
- 올리브오일, 부일론큐브, 육류 추출물, 팝콘, 꿀, 잼, 젤리, 세르토, 마요네즈, 향이 첨가된 아이스 제품
- 사탕, 과자, 껌
- 과일주스, 채소주스, 기타 음료(액체 및 냉동불문, 과일 및 채소의 농축액, 분말, 기타 베이스로 구성된 음료 포함, 비탄산 생수 포함, 배송방법 불문)
- 다량 탄산수, 탄산음료 등은 식품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Sales And Use Tax Regulations, Regulation 1602 (a) Food Products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 3) 관련 판례

- 코팅된 과일(Glacéd Fruits)이 ‘사탕 또는 과자’로 분류되는지 여부(Mission Pak Co. v. State Board of Equalization (1972) 23 Cal.App.3d 120)<sup>48)</sup>
  - (납세자) 1972년 1월 이전에는 식료품이 ‘사탕 또는 과자’로 분류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코팅된 과일은 ‘사탕 또는 과자’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코팅된 과일은 ‘과일 및 과일제품’ 또는 ‘설탕 및 설탕제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 ‘사탕 또는 과자’란 설탕과일, 설탕이 첨가된 결정화된 과일 및 코팅된

48) 캘리포니아주 세무관청, “Laws, Regulations & Annotations,” <https://www.cdtfa.ca.gov/lawguides/vol1/sutcd/sales-and-use-tax-court-decisions-all.html#f1>, 검색일자: 2021. 1. 4.

과일을 포함한다고 행정해석(Board's administrative ruling)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 대상은 가공 후 80%가 설탕이기 때문에 '사탕 또는 과자'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 나. 일본

- 일본은 단일세율제도를 적용하다가 2019년부터 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하여 2021년 현재 소비세 세율로 표준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두고 있음<sup>49)</sup>
  - 표준세율은 10%이며 경감세율은 8%로 식료품(주류, 외식, 케이터링은 제외함)과 신문(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에 한함)에 대해 적용함
    - 외식을 포장해 가는 경우 경감세율을 적용하나 매장 내에서 취식하는 경우 표준세율을 적용함
    - 케이터링(고객이 지정한 장소에서 식음료품을 제공하는 영역)은 기본적으로 표준세율 적용대상이나 유료 노인복지시설·학교의 급식 등은 경감세율 적용대상임
  - 영세율은 수출 거래 등에 대해 적용하며 면세는 금융, 보험, 의료, 교육 영역 등에 대해 적용함
  
- 2020년 현재 일본은 모든 식료품에 대해 8%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경감세율 적용대상인 식료품은 「식품표시법」에 규정된 식품(「주세법」에 규정된 주류는 제외함)으로 사람의 음용 또는 식용에 사용되는 것이 대상이며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첨가물 또한 포함함<sup>50)</sup>
  
- 일본에서는 경감세율 도입 여부와 적용 범위를 두고 논의가 있었으나, 주류와 외

49) IBFD, "Japan - Consumption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 August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jp\\_s\\_7.4.&refresh=1610324786008#evat\\_jp\\_s\\_7.4.](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jp_s_7.4.&refresh=1610324786008#evat_jp_s_7.4.), 검색일자: 2021. 1. 11.

50) 일본 국세청, 「II 軽減税率の対象となる課税資産の譲渡等」,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zeimokubetsu/shohi/keigenzeiritsu/pdf/qa/02-05.pdf>, 검색일자: 2021. 1. 11.

식·케이atering을 제외한 모든 식료품에 대해서 경감세율을 적용함

- 일본은 오랫동안 8%의 단일세율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2014년 세제개정으로 세율 인상이 확정되면서 경감세율 도입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음
- 자민당·공명당 여당 세제협의회는 경감세율 적용대상 식품의 범위를 두고 8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세수 변화와 적용 범위 설정 시 문제점을 검토했음<sup>51)52)</sup>
  - 모든 식·음료품을 경감세율 적용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첫 번째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경감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식료품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방식으로 나머지 7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 일반적으로 주류와 외식 등을 경감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주요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 등)의 사례를 참고대상으로 제시함
  - 경감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식료품이 늘어날수록 이를 구분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세수감소가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이 제시됨
- 이후 전문가와 관련 업계 등의 최종 찬반의견과 근거를 설문조사한 뒤<sup>53)</sup> 식료품 전체를 경감세율로 과세하되 주류와 외식·케이atering은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함
  - 찬성 근거로는 소비세의 역진성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 소비세 세율 인상의 여파를 줄여야 한다는 점, 농업·수산업·음식료품 제조업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이 있었음
  - 반대 근거로는 세수가 감소한다는 점, 고소득자도 혜택을 누리게 되며 적용대상 품목을 합리적으로 구획하기 쉽지 않다는 점, 세제가 복잡해진다는 점, 사업자의 세무행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역진성 문제는 저소득 계층에게 직접적인 급부를 제공하여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었음

51) 自由民主党, 「消費税の軽減税率に関する検討について」自由民主党・公明党(与党税制協議会), [https://jimin.jp-east-2.storage.api.nifcloud.com/pdf/news/policy/pdf179\\_1.pdf](https://jimin.jp-east-2.storage.api.nifcloud.com/pdf/news/policy/pdf179_1.pdf), 검색일자: 2021. 1. 11.

52) 경감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식품을 주류-외식-과자류-음료-가공식품 전체-쌀·된장·간장을 제외한 모든 식품-쌀을 제외한 모든 식품 순으로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나머지 7가지 시나리오를 설계함

53) 自由民主党, 「消費税の軽減税率に関する検討について」ヒアリング概要: 自由民主党・公明党(与党税制協議会), [https://jimin.jp-east-2.storage.api.nifcloud.com/pdf/news/policy/125067\\_1.pdf](https://jimin.jp-east-2.storage.api.nifcloud.com/pdf/news/policy/125067_1.pdf), 검색일자: 2021. 1. 11.

## 다. 영국

### 1) 개요

- 영국은 부가가치세 세율로 표준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둬<sup>54)</sup>
  - 표준세율은 20%이며 경감세율은 5%임
    - 식당·케이터링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을 적용함
    - 경감세율은 어린이카시트, 가정용 연료, 에너지 절감장치, 난방기구, 주택개축, 여성용 위생용품 등에 대해 적용함
  - 영세율은 일반적인 식료품(단 케이터링 과정에서 공급된 것은 제외함), 서적, 주택건설, 여객운송, 의약품, 수출 등에 대해 적용하고<sup>55)</sup> 면세는 금융, 의료, 교육 용역 등에 대해 적용함
  
- 식료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나 일부 식료품은 표준세율 적용대상으로 열거하며 구체적인 범위를 지침에서 제시함<sup>56)</sup>
  - 식료품(food of a kind used for human consumption)이란 일반적인 사람이 음식 또는 음료로 간주하는 제품으로 사람의 식용에 적합한 것을 의미함<sup>57)</sup>
    - 가정에서 조리·제빵용 재료로 사용한 첨가물 등을 포함함
  - 영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으로 열거한 식료품은 아이스크림, 과자류(케이크와 비스킷은 제외함), 기타 음료(스무디 등), 감자칩·구웠거나 소금간

54) IBFD, "United Kingdom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31 July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uk\\_s\\_007.html#evat\\_uk\\_s\\_7.4.](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uk_s_007.html#evat_uk_s_7.4.), 검색일자: 2021. 1. 4.

55) 영국 「부가가치세법」 section 30 of Schedule 8

56) 영국 정부, "Food products (VAT Notice 701/14)," <https://www.gov.uk/guidance/food-products-and-vat-notice-70114>, 검색일자: 2021. 1. 4.

57) 동물용 식품은 종류에 따라 영세율 또는 표준세율로 과세함. 예를 들어 개·고양이를 위한 신선·냉동·냉장 육류 및 생선 제품은 영세율로 과세하나 비스킷·통조림은 표준세율로 과세함(영국 정부, "Animals and animal food (VAT Notice 701/15)," <https://www.gov.uk/guidance/animals-and-animal-food-notice-70115>, 검색일자: 2021. 1. 25.)

을 한 견과류 등이 있음

- 단 표준세율 적용대상으로 열거된 식료품일지라도 먹기 전에 해동 등의 조리과정이 필요한 것, 특정 원료를 포함하는 것 등 아래와 같은 것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먹기 전에 해동해야 하는 요구르트
- 건조한 체리, 설탕에 졸인 과일껍질
- 음료 중 우유와 그 가공품, 차·마테차·허브차와 그 가공품, 코코아·커피·커피대용품과 그 가공품, 식용효모·고기·계란준비물

〈표 III-4〉 영국의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세율	내용
0%	기초 식품(Basic foodstuffs)
	-육류, 가금류(예: 소, 양, 돼지, 닭 등)
	-특수 육류(예: 말, 타조, 악어, 캥거루 등)
	-살아있는 동물로 일반적으로 사람의 섭취용으로 사용되는 것
	-생선, 살아있는 생선(사람의 섭취용, 관상용 어류일지라도 사람의 섭취용으로 제공하였다면 포함함)
	-사람의 섭취용으로 적합한 채소, 과일
	• 재배를 위한 뿌리줄기 및 종묘(growing plants and seedling)는 제외하되 토마토와 오이 뿌리줄기는 포함함
	-조리용 허브와 향신료
	-과일, 야채 펄프(요리용 사과 퓨레 등)
	• 스무디와 같이 과일, 야채 펄프를 음료로 만든 것은 제외함
	-곡물
	-견과류
	• 껍질을 벗기고 볶았거나 소금 간을 한 견과류(Nuts if shelled and either roasted or salted)는 제외함
	요리재료, 첨가물(가정 조리 및 제빵용으로 사용된 것)
	-기조리된 케이크, 소스, 수프, 다른 혼합물(가정용인 것)
-식물유, 옥수수, 유채, 땅콩, 올리브(올리브오일 BP 포함), 아몬드(비터아몬드오일은 제외함), 참깨씨, 해바라기씨, 야자씨, 호두, 콩 및 이들의 혼합물: 향수를 포함하는 등 조리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외함	
-식용 전분, 젤라틴	

〈표 III-4〉의 계속

세율	내용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리용 소금(암염, 천일염도 12.5kg 이하의 중량으로 포장되었다면 포함함)</li> <li>-감미료(꿀, 설탕, 사카린, 아스파탐, 소르비톨 등을 포함함)</li> <li>-향료 및 향미제(페퍼민트, 바닐라, 요리용 로즈워터, 합성향료 등을 포함함)</li> <li>-혼합조미료, 양념 혼합물(천연, 인공을 모두 포함함)</li> <li>-베이킹파우더, 타르타르 크림, 레넷·락타아제·펙틴과 같은 기타 식품 첨가물</li> </ul>
	가공식품(Processed foo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조림, 동결식품(아이스크림이나 그와 유사한 것은 제외함): 미가공식품과 같은 기능을 해야 함(어류, 완두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냉장·냉동 상태의 기조리식품, 편의식품 등(집에서 다시 데우는 등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가운 샌드위치(케이팅 과정에서 공급된 것은 제외함)</li> </ul>
	제빵류(bakery products)
	일반 제빵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빵, 피타빵·롤빵과 같은 빵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식사(hot take-away meal) 제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케이크: 스펀지케이크, 과일케이크, 머랭, 결혼·기념일·생일기념 케이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이팅 과정에서 공급된 케이크는 제외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사각형 생강케이크(slab gingerbread)</li> </ul>

<표 III-4>의 계속

세율	내용
0%	<p>케이크장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콜릿 커버칩, 칩, 잎, 스크롤 등등(케이크 장식용으로 고안된 것. 단 초콜릿 버튼은 제외함)</li> <li>-케이크 장식용으로 특별히 디자인된 젤리 모양, 설탕 꽃, 잎 등</li> <li>• 초콜릿 플레이크는 베이커리·아이스크림 산업에서 공급되었으며 총 1개 이상의 팩으로 판매되었고 케이크장식 전용상품이며 소매품이 아니라고 기재되지 않은 한 제외함</li> <li>-버미첼리, 설탕 가닥</li> <li>• 과자류(confectionery)와 같은 형태로 판매되는 기타 품목은 제외함</li> <li>-로열아이싱(royal icing)</li> <li>-구워진 코코넛과 아몬드, 제빵용으로 판매된 것</li> <li>-제빵에 사용된 체리(glace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li> <li>-식용 케이크장식으로 케이크의 일부로서 또는 독립적으로 판매된 것(과자류나 구워진 견과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li> <li>• 장식 자체를 먹을 수 없다면 제외함</li> </ul>
	<p>비스킷: 전체 또는 일부가 초콜릿 또는 이와 맛과 모양이 초콜릿과 유사한 다른 제품으로 덮여지지 않은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죽에 포함되거나 제빵 전에 표면에 눌러진 초콜릿 칩 비스킷</li> <li>-초콜릿 또는 유사한 제품이 두 개의 비스킷 사이에 샌드위치 층으로 끼어 있으며 외부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버번·기타 비스킷</li> <li>-자파 케이크(Jaffa cakes)</li> <li>-캐러멜 또는 맛과 모양에서 초콜릿과 유사하지 않은 다른 제품으로 덮여진 비스킷</li> </ul>
	<p>따뜻한 식품(hot food): 빵, 파이, 페이스트리 및 기타 짭짤한 음식으로 소매 목적으로 구워져 따뜻한 상태로 판매된 것</p>
	<p>아이스크림 및 유사 냉동식품: 냉동 상태로 공급되었지만 섭취할 때 조리·해동되어야 하는 제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이크드 알래스카</li> <li>-크림 가또</li> <li>-무스</li> <li>-열린 요구르트로 먹기 전에 해동할 필요가 있으며 보관 목적으로만 냉동한 것</li> <li>-냉동된 상태로도, 냉동되지 않은 상태로도 먹을 수 있는 디저트</li> <li>• 아이스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제품처럼 주로 냉동된 상태로 먹도록 고안된 제품은 제외함. 또한 아이스크림과 기타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파우더와 그 혼합물은 제외함</li> </ul>
	<p>과자류(confectione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케이크(스폰지 케이크, 페이스트리, 에클레어, 머랭, 플랩 잭, 레이프쿠헨, 마시멜로 터케이크, 스코티쉬 스노우볼 등을 포함함)</li> </ul>



〈표 III-4〉의 계속

세율	내용
0%	스포츠 관련 식품 중 글루코오스, 덱스트로스, 홀릭스 정제
	종교용 식품: 성사(聖事)용 미발효 포도주, 기독교 예배 시 성체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웨이퍼 등
0%	첨가물: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만 사용되었으며, 해당 식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것(천연, 인공 향료를 모두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을 수 있는 소시지 껍질도 포함함</li> </ul>
0%	첨가물: 영양요소를 포함하지는 않으나 식품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유래 유효제 및 레시틴과 같은 안정제, 식품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정제되었거나 혼합된 것으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마가린 등)</li> <li>• 인공 감미료</li> <li>• 인공 향료</li> <li>• 천연착색제로 그 자체가 식품인 것(캐라멜, 코코아, 샤프론, 강황, 코치닐 등)</li> </ul>
20%	기초 식품(Basic foodstuffs)
	-재배를 위한 뿌리줄기 및 종묘(growing plants and seedling): 토마토와 오이 뿌리 줄기는 제외함
	-주스, 주스 응축물
	-스무디와 같이 과일, 야채 펄프를 음료로 만든 것
	-껍질을 벗기고 볶았거나 소금간을 한 견과류(Nuts if shelled and either roasted or salted)
	요리재료, 첨가물(가정 조리 및 제빵용으로 사용된 것)
	-아이스크림 및 유사 냉동제품을 위한 혼합물
	-사용된 기름과 그 찌꺼기
	가공식품
	-아이스크림, 소르베, 얼린 요구르트(와 같은 식으로 섭취되도록 고안된 것), 막대기가 달린 얼음과자(ice lollies)
	제빵류(bakery products)
	일반 제빵제품
-시리얼바, 뮤즐리바 등 기타 단맛이 나는 바(Cereal, muesli and similar sweet tasting bars)	
-스웨디쉬 스노우볼 등 유통기한이 긴 스노우볼	
-플로렌타인(florentines, 견과류와 과일을 섞고 초콜릿을 씌워 만든 비스킷)	
-전체 또는 일부가 초콜릿으로 코팅된 쇼트브레드 비스킷	
-코코넛 아이스	
케이크장식	
-초콜릿버튼	
-초콜릿 플레이크	
(단 베이커리·아이스크림 산업에서 공급되었으며 총 1개 이상의 펙으로 판매되었고 케이크장식 전용상품이며 소매품이 아니라고 기재된 것은 제외함)	
-과자류(confectionery)와 같은 형태로 판매되는 기타 상품	
-먹을 수 없는 케이크 장식	

〈표 III-4〉의 계속

세율	내용
20%	비스킷: 전체 또는 일부가 초콜릿 또는 이와 맛과 모양이 초콜릿과 유사한 다른 제품으로 덮여진 것
	-초콜릿 또는 유사한 제품으로 전체 또는 일부가 코팅된 비스킷
	-초콜릿으로 덮인 쇼트 브레드
	-초콜릿 장식이 2개의 눈을 그리는 것 외에도 사용된 진저브레드맨 케이크
	-chocolate oysters와 같이 초콜릿으로 덮인 아이스크림 웨이퍼
	아이스크림 및 유사 냉동식품: 냉동 상태로 섭취하도록 고안된 모든 제품
	-아이스크림과 막대기가 달린 얼음과자(ice lollies)
	-arctic roll을 포함하는 아이스크림 가토·케이크
	-워터 아이스·소르베·그레니타
	-냉동된 채로 섭취하도록 만들어진 요구르트(frozen yoghurt)
과자류(confectionery): 초콜릿, 스위트, 캔디, 초콜릿 비스킷, 기타 가당 식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손가락으로 먹는 것(자체가 이미 단 맛을 가지고 있어 감미료를 넣을 필요가 없는 제품, 예를 들어 과일·곡물바 제품도 기타 가당 식품에 포함됨)	
-초콜릿, 견과류, 과일, 토피 또는 기타 재료를 포함한 초콜릿바, 리큐어 초콜릿과 이와 유사한 과자류	
-과자, 알약, 껌, 막대 사탕, 캔디플룻, 셔벗, 풍선껌, 터키시 딜라이트, 마시멜로, 풍당 및 이와 유사한 과자류	
-압축한 과일바, 기타 기조리된 말린 과일로 만든 단 과자류(confectionery that are sweet to the taste)	
-단맛이 가해진 팝콘(Sweetened popcorn)	
-결정화되었거나 설탕, 초콜릿으로 덮인 생강	
-말렸거나 glacé, 결정화된 과일(pentha, marrons glacé를 포함함)	
-주로 씨앗과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로 만들어진 것	
-시리얼바(초콜릿으로 덮여졌는지 여부는 불문함): 단 케이크로 인정되는 것은 제외함	
-단맛이 나는 말린 과일로 과자류, 스낵으로 판매되는 것	
-전체 또는 일부를 초콜릿이나 맛과 모양이 초콜릿과 유사한 다른 제품으로 덮은 비스킷 형태의 다이어트 식사제품(slimmers' meal)	
음료	
-밀크셰이크용 가향제, 가미제(단 코코아, 커피 추출물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센나와 같은 설사·변비용 차, 유사 약용차	
-기호음료(beverage)로 판매된 미네랄워터, 테이블워터 등	
-무알코올 맥주, 와인	

<표 III-4>의 계속

세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강, 포도당, 꿀, 페퍼민트, 보리수 음료</li> <li>-음료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시럽, 결정, 파우더, 향료 등</li> <li>-레모네이드,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 토닉과 소다의 혼합물</li> <li>-과일 코디얼(cordial)과 스쿼시</li> </ul> <p>짭짤한 스낵(Savoury snacks): ① 감자·감자가루·감자전분으로 만든 감자스낵 및 이와 유사한 것 ② 곡물을 부풀려 만든 스낵 ③ 볶고 소금간을 한 견과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소비자가 추가로 조리 등의 준비를 하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자 칩, 포테이토 스틱, 포테이토 퍼프 및 이와 유사한 제품(감자 전분 또는 밀가루와 시리얼 밀가루의 조합으로 만든 제품을 포함함)</li> <li>-짭짤한 팝콘(단 '전자레인지' 팝콘과 같은 팝콘은 제외함)</li> <li>-곡물로 만든 새우 크래커(테이크아웃 식사의 일부로서 밀봉되지 않은 봉투에 담아 공급된 크래커 등과 같이 포장되지 않은 새우 크래커는 제외함)</li> <li>-떡(단 치즈나 다른 토핑과 함께 섭취할 용도로 만들어진 무향 떡은 제외함)</li> <li>-기타 모든 구웠거나 소금간이 된 견과류</li> </ul>
20%	<p>다이어트용 보조식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종류의 비타민, 미네랄 보조물</li> <li>-로열젤리 제품(단 꿀에 로열젤리가 첨가된 일반적인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외함)</li> <li>-밀 배아, 철분, 칼슘, 섬유질, 효모, 마늘, 인삼, 꽃가루, 프로폴리스, 해초, 달맞이꽃 또는 이와 유사한 약초 제제(마늘, 효모를 제외함)와 그 분말을 함유한 정제·알약·캡슐</li> <li>-목탄비스킷(charcoal biscuits)</li> <li>-식이 보충제로 판매되는 대구 간유, 기타 어유</li> <li>-엘릭서 및 강장제(식이 보충제로 판매되는 사이다 식초, 꿀의 혼합물을 포함함)</li> <li>-대구 간유와 맥아 추출물(단 플레인 맥아 추출물의 공급은 가정양조를 위해 판매된 것이 아니라면 제외함)</li> </ul> <p>식이요법, 저자극 제품(Diabetic and hypoallergenic products) 중 무가당 과자류, 글루텐 없는 초콜릿 비스킷</p> <p>다이어터 식품(Slimmers' foods) 중 과자류에 해당하는 것(초콜렛이나 캐롯이 코팅된 비스킷, 가당 곡물, 압축된 과일바 등)</p> <p>스포츠 관련 식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운동 후 회복을 돕거나 근육 증진에 도움을 주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되거나 마케팅된 스포츠 에너지음료, 영양음료(시럽, 농축액, 에센스, 파우더, 결정, 우유 및 우유 추출물을 포함하는 것 모두)</li> <li>-정제(글루코오스, 텍스트로스, 홀릭스 정제는 제외함)</li> <li>-곡물, 과일바(초콜릿 코팅 여부는 불문함)</li> </ul>

〈표 III-4〉의 계속

세율	내용
	-주성분이 크레아틴인 제품
	종교용 식품: 특정한 종교의 방식으로 제조된 식품(코셔푸드, 할랄푸드 등)
20%	<p>첨가물: 영양적 목적보다 상업적 목적(예: 유통기한 증가, 모양 향상)으로 첨가된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향의 습식·건식 염수혼합물을 포함한 방부제 및 육류(염장 육류 포함) 경화제</li> <li>• 비타민 A와 E를 포함한 항산화제</li> <li>• 비타민 보충제</li> <li>• 안정제, 증점제(한천, carageenan, guar gum, gum arabic, gum tragacanth and xanthan gum을 포함하나 옥수수 전분은 제외함)</li> <li>• 밀가루 또는 전분이 아닌 충전제 및 증량제</li> <li>• 착색제(단 천연착색제로 그 자체가 식품인 카라멜, 코코아, 샤프론, 강황, 코치닐 등은 제외함)</li> <li>• 글루타민산 모노 나트륨(MSG), ribonucleotides 및 가수분해된 식물성 단백질(HVP)과 같은 풍미 증진제</li> <li>• 밀가루 개선제 및 표백제</li> </ul>

자료: 영국 정부, “Food products (VAT Notice 701/14),” <https://www.gov.uk/guidance/food-products-and-vat-notice-70114>, 검색일자: 2021. 1. 4.를 저자 정리, 요약

## 2) 판단 사례 등

- 영국은 지침에서 영세율, 표준세율 적용대상 식료품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나 과세 시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영국은 일반적인 식료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일부 표준세율 적용대상 식료품을 열거함
- 본래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사치재에 해당하는 식료품에 표준세율로 과세하고 그 외의 식품은 영세율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구분 기준의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sup>58)</sup>
  - 우유에 타먹는 초콜릿 분말(네스퀵 등)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바나나, 딸기 분말은 표준세율 적용대상임<sup>59)</sup>

58) Insider.co.uk, “It’s time to end confusion over VAT tax on food,” <https://www.insider.co.uk/news/its-time-end-confusion-over-12272733>, 검색일자: 2021. 1. 12.

59) 네스퀵을 판매하는 네슬레사가 자사의 초콜릿 우유용 분말과 동일하게 바나나, 딸기 우유용 분말에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소를 제기한 바 있음. 단 1심 법원은 해당 제품이 음료를 만들기 위한 파우더에

- 초콜릿 케이크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초콜릿 비스킷은 표준세율 적용대상임
- 오렌지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오렌지 주스는 표준세율 적용대상임
- 신선샐러드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과일스무디는 표준세율 적용대상임
- 또띠아 콘칩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감자칩은 표준세율 적용대상임
- 갓 구워 따뜻한 파이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재가열된 파이는 표준세율 적용대상임

- 특히 과자류의 경우 판단 기준이 복잡하고 애매하여 논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Jaffa Cake의 사례를 살펴봄
  - 과자류(confectionery)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나 케이크와 비스킷에 해당한다면 영세율을 적용함
  - 그러나 비스킷 중에서도 초콜릿이 코팅된 비스킷은 표준세율 적용대상인 등, 판단 기준이 매우 복잡하고 애매함

〈표 III-5〉 영국의 Jaffa Cake 부가가치세 과세 세율 적용 시 판단 기준

특성		케이크 (영세율)	초콜릿으로 덮인 비스킷(표준세율)
제품명	케이크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음 - 단 중요 판단 기준은 아니었음	○	
개봉 직후 식감	케이크는 부드럽고 잘 부서지며 비스킷은 바삭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해당 제품의 식감은 스펀지 케이크에 가까웠음	○	
제품의 크기, 포장 패키지	비스킷에 더 가까움		○
소매 마케팅 진열	매장에서 일반적으로 케이크 코너가 아닌 비스킷 코너에 진열되어 함께 팔리고 있었음		○
개봉 후 방치한 경우 식감	오래 두면(on going stale) 케이크는 딱딱해지고 비스킷은 부드러워지는데, 해당 제품은 케이크와 마찬가지로 오래 두면 딱딱해졌음	○	

해당하며 이는 표준세율 적용대상이고, 초콜릿 우유용 파우더는 코코아를 포함하기에 예외적으로 영세율이 허용될 뿐이라고 판시함(Croner tax wise, "FOOD FOR THOUGHT: VAT IN THE FOOD INDUSTRY," <https://www.cronertaxwise.com/community/food-thought-vat-food-industry/>, 검색일자: 2021. 1. 11.)

〈표 III-5〉의 계속

특성		케이크 (영세율)	초콜릿으로 덮인 비스킷(표준세율)
먹는 방법	해당 제품은 손으로 먹는 스넬으로 보이는 데 비해, 케이크는 더 비싸고 먹을 때는 포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른 디저트와 마찬가지로 아동이 한 입에 먹을 수 있음		○
최종 판결		◎	×

자료: 영국 정부, “Excepted items: Confectionery: The bounds of confectionery, sweets, chocolates, chocolate biscuits, cakes and biscuits: The borderline between cakes and biscuit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at-food/vfood6260>, 검색일자: 2021. 1. 12.을 저자 정리

- Jaffa Cake의 경우 크기, 모양, 식감, 판매 시 진열코너, 원료, 포장, 먹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케이크와 비스킷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과자류로, 1991년 법원은 식감에 근거하여 해당 제품을 케이크로 판결하였음<sup>60)61)</sup>
- Jaffa Cake는 비스킷 크기로 날개 포장되어 판매되는 상품으로 스펀지케이크, 오렌지맛 잼,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과자류이며, 케이크로 볼 것인지 초콜릿이 코팅된 비스킷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음
  - 영국 과세당국은 당초에는 케이크로 보고 영세율로 과세해 왔으나 해당 제품이 비스킷과 유사한 특징을 다수 갖고 있다고 보고, 초콜릿이 코팅된 비스킷으로 구분을 변경하여 표준세율로 과세하고자 하였음
- 영국 과세당국은 해당 제품의 모양이 케이크보다는 비스킷과 유사하다는 점을 이유로써 표준세율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했으며, Jaffa Cake 제조·판매사는 해당 제품의 식감이 케이크의 특성과 부합한다는 것을 근거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였음

60) 영국 정부, “Excepted items: Confectionery: The bounds of confectionery, sweets, chocolates, chocolate biscuits, cakes and biscuits: The borderline between cakes and biscuit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at-food/vfood6260>, 검색일자: 2021. 1. 12.

61) 참고로 아일랜드 과세당국 또한 Jaffa Cake의 수분 함량이 12% 이상이므로 케이크라고 구분함(아일랜드 국세청, “JAFFA CAKES (Food and drink for human consumption),” <https://www.revenue.ie/en/vat/vat-rates/search-vat-rates/j/jaffa-cakes-food-and-drink-for-human-consumption-.aspx>, 검색일자: 2021. 1. 11.)

## 라. 캐나다

### 1) 개요

- 캐나다의 부가가치세는 GST(Goods and Services Tax, GST)와 HST(Harmonized Sales Tax, HST)가 있음
  - GST는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로 세율은 5%임
  - HST는 일부 참여 지방정부(participating province)가 GST에 8~10%의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HST 세율은 13~15%임<sup>62)</sup>
    - 참여 지방정부로는 온타리오(8%), 노바스코샤(10%), 뉴브런즈윅(10%),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10%), 노바스코샤 해안지역(10%), 뉴펀들랜드 해안지역(10%)이 있음<sup>63)</sup>
  
- 캐나다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율로 표준세율, 영세율,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표준세율은 연방정부 GST 기준 5%임
    - 참여정부에 따라 HST 13~15%가 적용됨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식료품은 기본식료품의 경우 GST/HST 모두 영세율이 적용됨<sup>64)</sup>
  - 기본식료품은 사람이 소비하는 대부분의 식음료가 포함됨
    - 기본식료품은 [별표 6] III 제1항에서 사람이 소비하는 식음료라고 규정하고 있음

62) Excise Tax Act, PART IX Goods and Services Tax 165 (1) 및 165 (2)

63) Excise Tax Act, SCHEDULE VIII, Subsection 123(1), Participating Provinces and Applicable Tax Rates 및 캐나다 정부, "GST/HST calculator (and rate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gst-hst-businesses/charge-collect-which-rate/calculator.html>, 검색일자: 2020. 12. 17.

64) Excise Tax Act, Schedule VI의 Part III

- 식음료에 대한 정의는 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캐나다 국세청은 일반 소비자가 식음료 구입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식음료로 인식하고 구매하는 제품을 식음료로 간주함<sup>65)</sup>

- 다만 알코올음료, 탄산음료, 사탕류, 스낵류, 아이스크림 등 [별표 6] III에 열거된 특정 식료품은 과세대상에 해당됨

〈표 III-6〉 캐나다의 영세율 대상 식료품 등([별표 6] III)

구분	내용
기본 식품	1. 사람이 소비하는 식음료(감미료, 양념 및 기타 식품 또는 음료 가공 및 혼합에 사용되는 재료 포함). 다만 다음은 제외함 (a) 와인, 양주, 맥주, 맥아 주류 또는 기타 알코올음료 (b) 2001년 「소비세법」 제2조에 따른 대마초 제품 (c) 탄산 음료 (d) 무탄산과일음료 또는 과일향 첨가 음료(우유 기반 제품 제외)로 양이 25% 미만인 다음의 것 또는 여기에 물을 첨가하여 만든 제품 - 천연 과일주스 또는 천연 과일주스의 혼합물 - 원래 상태로 재구성된 천연 과일주스 또는 천연과일 주스의 혼합물 (e) 사탕, 사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과자류, 플로스, 껌, 초콜릿 같은 사탕류(천연 또는 인공감미료 첨가 여부를 불문). 사탕, 초콜릿, 꿀, 당밀, 설탕, 시럽, 인공감미료로 코팅되거나 처리된 과일, 씨앗, 견과류, 팝콘 포함 (f) 감자칩, 옥수수칩, 치즈퍼프, 감자 스틱, 베이컨 크리스프(crisps) 및 치즈킬 같은 칩, 크리스프, 퍼프, 킴 또는 스틱, 기타 유사한 스낵 또는 팝콘과 브리틀 프레첼(단 주로 아침 식사용 시리얼로 판매되는 제품 제외) (g) 짭짤한 견과류 또는 짭짤한 씨앗류 (h) 그레놀라 제품(단 주로 아침 식사용 시리얼로 판매되는 제품 제외) (i) 시리얼, 견과류, 씨앗, 건조한 과일 또는 기타 제품을 혼합한 스낵(단 주로 아침 식사용 시리얼로 판매되는 혼합물 제외) (j) 얼음 막대기, 주스 바, 향·색·감미료가 첨가된 얼음물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냉동 여부 불문) (k)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셔벗, 냉동 요거트 또는 냉동 푸딩, 이들의 대체품, 포장되어 있거나 1회 제공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의 전술한 모든 제품 (l) 과일바, 롤, 드랍 또는 이와 유사한 과일 기반 스낵 식품 (m) 케이크, 머핀, 파이, 페이스트리, 타르트, 쿠키, 도넛, 브라우니, 가당이나 코팅된 크로와상 또는 다음의 유사한 제품(가당이나 코팅여부와 상관없이 베이글, 잉글리시머핀, 크로와상, 롤빵은 제외)

65) 캐나다 국세청, "Basic Grocerie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4-3/basic-groceries.html>, 검색일자: 2020. 12. 21.

〈표 III-6〉의 계속

구분	내용
기본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 제공량이 6개 이하로 사전에 포장된 경우</li> <li>- 사전에 포장되지 않고 1회 제공량이 6개 이하로 판매되는 경우</li> <li>(n) 음료(향이 첨가되지 않은 우유 제외), 푸딩, 향이 첨가된 젤라틴, 무스, 향이 첨가된 휘핑크림 디저트 제품, 푸딩과 유사한 기타 제품. 단 다음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용으로 준비되거나 미리 포장된 경우</li> <li>- 제조사 또는 생산자가 1회 제공량을 미리 포장하여 여러 개로 판매하는 경우</li> <li>- 캔, 병 또는 기타 주요 용기에 1회 제공량을 초과하는 양이 포함된 경우</li> </ul> </li> <li>(o) 가열 식음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1) 통조림 또는 진공 밀봉되지 않은 샐러드</li> <li>(o.2) 샌드위치 및 이와 유사한 제품(냉동 제외)</li> <li>(o.3) 치즈 플래터, 냉장햄, 과일 또는 채소 및 기타 즉석 식품</li> <li>(o.4) 판매 장소에서 제공되는 음료</li> <li>(o.5) 케이터링 서비스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와 관련하여 판매되는 식품 또는 음료</li> </ul> </li> <li>(p)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되는 식품 또는 음료</li> <li>(q)(a)~(p) 식품 또는 음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판매 시설에서 판매되는 경우, 단 다음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또는 음료가 제품의 특성, 수량 또는 포장으로 보아 즉각적인 섭취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li> <li>- (m)에 해당하는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이상(1회 제공량)의 종류로 사전에 포장되어 있을 것</li> <li>· 미리 포장되지 않고 5개 이상(1회 제공량)으로 판매될 것</li> </ul> </li> </ul> </li> <li>(r) 생수(얼음 제외)</li> </ul>
	<p>2. 자동판매기나 공급자의 영구시설을 통해 1회 제공량 이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경우 사람이 섭취하기 위한 병에 담기지 않은 물</p>
농업 및 수산	<p>1. 일반적으로 사육되거나 생산되거나 사람이 소비하거나 양모 생산을 위한 가축(토끼 제외), 가금류 또는 벌</p> <p>1.1. 토끼(애완동물로 공급하는 경우 제외)</p> <p>2. 다음의 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자연 상태의 곡물 또는 씨앗(「대마초법」 제2(1)항에서 정의된 대마초 제외), 파종 목적으로 처리되거나 보관 목적으로 방사능 처리한 곡물 또는 씨앗</li> <li>(b) 건초 또는 사일리지</li> <li>(c) 기타 사료 작물</li> </ul> <p>일반적으로 사람이 소비할 식품 또는 가축이나 가금류용 사료로 사용되거나 생산하기 위하여 판매되거나 소비자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양보다 많은 양을 공급하는 경우(야생 조류나 애완동물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포장, 제조 또는 판매되는 곡물이나 씨앗, 종자 혼합물은 제외됨)</p> <p>2.1. 법 제164.1(2)(a)항에 따른 별도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공급</p>

〈표 III-6〉의 계속

구분	내용
	3. 홉, 보리, 아마씨, 짚,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 3.1. 다음의 대마초의 잎, 꽃, 씨앗 또는 가지가 없는 성숙한 줄기의 공급 (a) 곡물 또는 종자의 경우 살균 이상의 처리나 파종 목적이 아니며 야생 조류의 사료나 애완동물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포장, 준비 또는 판매되지 않을 것 (b) 바이블 곡물 또는 종자의 경우, 「약물규제법(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에 따라 만들어진 「산업 대마규정」의 섹션 1에 있는 산업 대마 정의에 포함되거나 「대마초법」의 목적을 위한 산업용 대마일 것 (c) 「약물규제법」 또는 「대마초법」에 따른 공급일 것
	4. 부화 목적으로 생산되는 가금류의 알 또는 어란
	5. 비료(비료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토양 또는 토양 혼합물로 판매되는 상품 제외) (a) 대량일 것 (b) 25kg 이상의 용기에 비료를 공급하고 총공급량은 500kg 이상일 것
	6. 세척 이외에 가공하지 않은 울
	7. 건조 및 분류공정 이외에 가공하지 않은 담뱃잎
	8. 냉동, 염장, 훈제, 건조, 비늘 제거, 적출 또는 필레 이외에 가공되지 않은 생선 및 기타 해양 또는 민물 생선으로 다음은 제외함 (a) 일반적으로 사람이 소비하는 식품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b) 레크리에이션 낚시용 미끼로 판매되는 경우
	9. 리스, 먼허 또는 유사한 약정을 통해 농지 등록자에게 제공되는 공급
	10. 규정된 재산

자료: Excise Tax Act, SCHEDULE VI, PART III Basic Groceries 및 PART IV Agriculture and Fishing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 Michael Smart(2012)에 따르면 식료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복잡하고 모호하나 저소득층 세금 감면 등 형평성 유지를 위한 핵심 척도로 간주되고 있다고 함<sup>66)</sup>
- 감자칩은 과세대상이나 크래커는 영세율로 그 구별 원리를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저소득층은 기본식료품과 같은 필수품에 더 많은 비중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식품에 대한 세금 감면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큰 세금감면 효과가 있음

66) Michael Smart, 2012, p. 15.

- 그러나 Michael Smart(2012)는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세금의 상당 부분이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며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감면보다는 소득세 조치가 더 효율적인 조치라고 주장함<sup>67)</sup>
-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적은 비중의 식료품비를 지출하지만 절대 금액으로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지출하므로 비과세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불균형적으로 더 많이 발생함
- 부가가치세 감면보다는 소득세 조치가 저소득층을 위해 수익과 경제효율성 측면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원하는 수준의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2) 판단 사례 등

- 국세청은 기본식료품의 과세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해당 제품의 표시, 특징, 포장, 판매방식 등을 고려해 영세율 여부를 판단함<sup>68)</sup>
- 유사스낵의 경우 속성, 라벨링, 포장 및 마케팅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 아이스크림, 빵 등은 1회 제공량(single servings)으로 사전에 개별포장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함
  - 사전에 포장된 제품이란 제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매 시점에 소비자가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 가열된 식음료는 가열 시점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함

67) Michael Smart, 2012, p. 18.

68) 캐나다 국세청, "Basic Grocerie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4-3/basic-groceries.html>, 검색일자: 2021. 1. 12.

〈표 III-7〉 캐나다의 영세율 판단 사례

구분	영세율	과세
스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 제품 특징</li> <li>• (성분) 강화밀가루, 식물성기름 쇼트닝, 설탕, 포도당-과당, 소금, 맥아향, 칼슘인산염, 중탄산나트륨, 중탄산암모늄, 대두레시틴, 단백질 분해효소</li> <li>• (맛) 레귤러, 피자, 치즈</li> <li>• (판매) 슈퍼마켓 크래커 섹션에서 200g 단위로 판매됨</li> <li>• (크기) 작은 사이즈, 충전재 없음</li> <li>• (라벨표시) 크래커, 놀라운 맛, 풍미 가득</li> <li>- (판단) 제품 특성이 [별표 6] III 1 (f)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세율 대상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제품 특징</li> <li>• (성분) 강화밀가루, 식물성기름 쇼트닝, 감자 플레이크</li> <li>• (맛) 오리지널, 렌치, 바비큐, 드레드드, 소금, 식초, 치즈</li> <li>• (판매) 슈퍼마켓 크래커 섹션에서 200g 단위로 판매됨</li> <li>• (크기) 감자칩 사이즈</li> <li>• (라벨표시) 칩, 크래커, 감자로 만들, 아주 바삭함, 크래커스낵, 크래커처럼 오븐에 구움</li> <li>- (판단) 주성분이 감자이고 외형(슬라이스)과 질감(바삭함)이 [별표 6] III 1 (f)에 열거된 제품과 유사하므로 유사한 스낵 식품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임</li> </ul>
아이스크림 <sup>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용기를 덮는 뚜껑은 하나이나 왁스종이나 플라스틱으로 6등분된 2L 아이스크림은 1회 제공량으로 개별포장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영세율 대상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5mL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12개가 각각 1회 제공량으로 포장되어 들어 있는 아이스크림 박스는 개별포장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임</li> </ul>
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줄씩 4칸으로 된 상자에 들어있는 8개의 타르트는 사전 포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6개 이상이므로 영세율 대상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빵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개별 또는 6개 이하로 사전에 포장된 경우는 과세대상임</li> </ul>
가열식음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리된 식품이 차갑거나 냉장 상태로 판매된 후 먹기 전에 재가열하는 경우는 영세율 대상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대상임</li> <li>• 가열 캐비닛(heated cabinet)에서 판매되는 경우</li> <li>• 식당에 별도의 테이크아웃 카운터가 있고 여기서 가열 식음료를 판매하는 경우</li> <li>• 식음료를 구입하고 구매시점에 가열하는 경우</li> </ul>

주: 1) 아이스크림의 1회 제공량은 500mL 또는 500g 이하임

자료: 캐나다 국세청, "Basic Grocerie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4-3/basic-groceries.html>, 검색일자: 2020. 12. 21.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마. 중국<sup>69)</sup>

- 중국은 증치세 세율로 표준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둠<sup>70)</sup>
  - 표준세율은 13%이며 경감세율은 9%, 6%가 있음
    - 9%는 식료품(농산품·식용식물성기름·식용소금)·수돗물·냉난방·가스·도서·신문·잡지·사료·화학비료·농약·농기구 등과 같은 재화의 공급 및 운송·우편·기초통신서비스 등과 같은 용역의 공급에 대해 적용함<sup>71)</sup>
    - 6%는 부가통신·금융·생활서비스, 무형자산 매출 등에 대해 적용함
  - 영세율은 수출 등에 대해 적용하며 면세는 재무부가 별도로 정한 재화 및 용역(농업생산자가 직접 생산하고 판매한 농산품, 피임약품과 용구, 개인이 자가 사용하였던 물품을 매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적용함
  
- 농산품으로 열거된 식료품, 식용식물성기름, 식용소금에 대해서는 9%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식료품(통조림·기조리된 수산품·가공 유제품 등)에 대해서는 13%의 세율을 적용함
  - 식용식물성기름의 범위는 「증치세부분화물 과세범위 주석(国税发[1993]151号)」과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예로는 야자유·면화자유·회향유·코코넛유·호두유·올리브유·후추유·아몬드유·포도씨유·모란씨유가 있음<sup>72)</sup>
  - 식용소금은 「식용염(GB/T 5461-2016)」과 「식용염위생표준(GB2721-2003)」이라는 두 가지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식용소금을 의미함<sup>73)</sup>

69) 단 중국은 고시를 제정하여 세율 등 과세체제를 자주 변경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함. 본문은 2021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70) IBFD, “China (People’s Rep.)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 July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cn\\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cn_s_007.html), 검색일자: 2020. 12. 8.

71) 国家税务总局, 「自4月1日起, 适用9%税率的增值税应税行为包括哪些?」,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810219/n810744/n4016641/n4171132/n4255813/c4257502/content.html>, 검색일자: 2020. 12. 8.

72) 财税[2017]37号 附件1.适用11%增值税税率货物范围注释第二条

73) 财税[2017]37号 附件1.适用11%增值税税率货物范围注释第七条

- 농산품이란 작물업·번식업·임업·목축업·수산업을 통해 생산한 각종 동식물 1차 제품(初级产品)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농업 상품 과세범위 주석」 및 현행 관련 규정에 따름
    - 동 주석은 농산품을 인공적으로 사람이 기르거나 자연적으로 생장한 동식물을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원료 또는 1차 가공된 식료품(곡물, 채소, 찻잎, 수산물, 육류, 알, 천연꿀, 신선우유 등)이라고 함
    - 그 외 재정부 세무총국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른 농산품으로 건면, 건생강, 강황, 옥수수 알, 동물의 뼈조각, 저온살균우유, 멸균우유 등을 예시함<sup>74)</sup>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농업상품 과세범위 주석」은 통조림, 기조리된 수산물, 가공 유제품 등을 농산품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들 식료품에 대해서는 13%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단 중국은 농업생산자가 스스로 생산하여 판매한 농산품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하는 우대조치를 둠
- 농업생산자가 스스로 생산하여 판매한 농산품(农业生产者销售的自产农业产品)은 농산품으로서 농업생산자가 직접 재배·수확한 작물, 사육·포획한 가축가금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면제함<sup>75)</sup>
    - 농업생산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농업 종사자로 구성된 법인(农民专业合作社)을 의미함
    - 농산품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농업상품 과세범위 주석」상 농산품과 동일한 것을 의미함
    - 단 농업생산자가 외부에서 농산품을 구입하여 생산·가공한 후 매출한 경우, 농업생산자가 선별·수확·분쇄·건조 등의 과정을 통해 정제차를 만든 경우에는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함

74) 财税[2017]37号 附件1.适用11%增值税税率货物范围注释第一条; 财税[2018]32号第二条; 财政部 税务总局 海关总署公告2019年第39号第二条

75)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第五条 第一项; 财税字[1995]52号第一条

〈표 III-8〉 중국의 식료품에 대한 증치세 세율

세율	내용
9%	농산품(「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농업상품 과세범위 주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곡물): 주식이 되는 식물 과실 식료품의 총칭으로 밀, 쌀, 옥수수, 수수, 기장 및 기타 잡곡(예: 보리, 귀리 등)</li> <li>• 제분, 만두피, 완탕피, 면피, 쌀국수 등 양식의 재생산품(复制品)도 이에 포함함</li> <li>• 단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한 냉동식품, 컵라면, 비주식 식품과 곡물을 원료로 하는 각종 기조리식품(熟食品)은 양식에 포함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소: 부식을 만들 수 있는 풀, 나무 등 식물의 총칭으로 균류식물과 기타 부식을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나무를 의미함</li> <li>• 건조·냉장·냉동·포장·탈수 등의 과정을 거쳐 가공한 채소, 절임 채소(腌菜), 염장채소(咸菜), 간장절임채소(酱菜), 염지한 채소(盐渍蔬菜) 등도 포함함</li> <li>• 단 각종 채소 통조림(금속 통에 들은 것, 유리병이나 기타 재료로 포장한 것으로 진공 밀봉 포장한 각종 식품을 의미함)은 포함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잎: 차나무에서 딴 신선한 잎과 순, 그리고 바람건조(吹干)·반죽(揉拌)·발효·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1차 제작한 차(初制的茶)</li> <li>• 각종 미가공차(毛茶)를 포함하나 정제차(精制茶), 전차(边销茶), 다양한 약용물질이 들어간 차음료는 포함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예식물: 먹을 수 있는 과실</li> <li>• 과일, 건과일(果干: 말린 여지, 말린 룡안, 건포도 등), 굽거나 햇볕에 말린 과일(干果), 후추, 산초, 아니스, 커피콩 등을 의미함</li> <li>• 냉동·냉장·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가공된 원예식물 또한 포함함</li> <li>• 단 각종 과일 통조림, 과일 설탕절임(果脯), 꿀에 쥘 과일(蜜饯), 볶은 견과류(炒制的果仁), 견과류(坚果), 껍질을 벗겨 가공한 원예식물(碾磨后的园艺植物, 예: 후추가루, 산초가루)은 포함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용식물: 약용 원료가 되는 각종 식물의 뿌리, 줄기, 잎, 꽃, 과실 등</li> <li>• 약용식물을 가공하여 토막, 실, 덩어리, 조각 등 약용으로 만든 것 또한 포함함</li> <li>• 단 한방 제약·제제(中成药)는 포함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름의 원료식물: 주로 짜서 유지를 채취하는 데 사용하는 각종 식물의 뿌리, 줄기, 잎, 과실, 꽃 또는 순 등 1차 제품으로 유채(겨자 포함), 땅콩, 대두, 해바라기씨, 피마자씨, 참깨, 아마씨, 차의 씨, 오동나무씨, 올리브씨, 야자씨, 목화씨 등</li> <li>• 방향성 오일을 추출하는 데 사용하는 아로마오일 원료 식물도 포함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섬유질 식물: 섬유, 제지, 목화(중자 면화, 보푸라기, 피면, 면모 포함), 대마, 황마, 케나프, 모시, 아마, 두메개정향풀, 마닐라삼, 사이잘삼 등</li> <li>• 린터(棉短绒) 및 대마섬유를 탈교한 후 잘 말린(씻은) 대마 또한 포함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료식물: 사탕수수, 사탕무 등 주로 당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각종 식물</li> </ul>

〈표 III-8〉의 계속

세율	내용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제품: 나무·관목·대나무류식물 및 천연수지, 천연고무</li> <li>• 나무 자체: 나뭇가지, 새싹, 나무 껍질을 제거하기 위해 잘라내서 일정 길이의 조각으로 절단한 나무와 관목</li> <li>• 대나무 자체: 대나무를 잘라 가지, 끝, 잎을 제거한 대나무류 식물과 일정 길이로 절단한 대나무 조각</li> <li>• 천연수지: 식물의 분비물로 테레빈유, 복숭아검, 체리검, 아카시아검, 쿠바검, 천연고무 등을 포함함</li> <li>• 기타 임업제품: 죽순, 마른 죽순, 종려나무, 등나무 등등</li> <li>• 소금물에 잠긴 죽순도 포함하나 죽순 통조림은 포함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식물: 위에서 열거한 식물 외에 인공적으로 심어 기르거나 야생으로 자란 각종 식물로 묘목, 꽃, 식물 종자, 식물의 잎, 풀, 밀짚, 콩류, 감자류, 해조류 식물 등을 포함함</li> <li>• 말린 꽃·풀·감자류, 말려서 만든 해조류, 농업상품 폐기물 또한 포함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사람이 인공적으로 양식하고 수확한 어류, 새, 게, 거북이, 조개류, 극피동물, 연체동물, 강장동물, 해양 동물</li> <li>• 물고기, 새우, 게, 자라, 조개류, 극피동물, 연체동물, 강장동물, 해양 동물, 치어(알), 새우 모종, 게 모종, 조개 모종과 냉동·냉장·염장 등 부식방지 처리와 포장을 거친 수산품을 포함함</li> <li>• 말린 물고기, 건새우, 게, 조개, 극피동물, 연체동물, 강장동물 등(예: 건어물, 건새우, 껍질과 머리를 떼고 말린 새우, 말린 조개), 그리고 공산품으로 가공되지 않은 조개와 진주도 포함함</li> <li>• 이미 조리한 수산품과 각종 수산품 통조림은 포함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축산품: 사람이 인공적으로 사육하고 번식, 포획한 각종 가축과 가금류</li> <li>• 소, 말, 돼지, 양, 닭, 오리와 같은 짐승·가금류·파충류</li> <li>• 짐승·가금류·파충류의 전체 또는 일부 분할된 신선한 육류와 냉장·냉동된 육류, 염장한 육류 및 내장·머리·꼬리·발굽 등 신체조직</li> <li>• 알: 각종 가금류 및 파충류의 알로 신선란과 냉장란을 포함하며 가공된 가염란·송화란·절임란 등도 포함하나 알의 통조림은 포함하지 않음</li> <li>• 신선우유: 각종 포유류 동물의 젖과 정제·살균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 젖으로 요구르트, 치즈, 크림 등 신선우유를 가공하여 만든 유제품은 포함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의 가죽: 다양한 동물(야수, 가금류, 파충류)의 몸에서 직접 채취하였으며 무두질을 거치지 않은 생가죽과 모피</li> <li>• 무두질을 거치지 않은 생가죽과 모피로서 물세척·염장·부패방지 약품처리·제모·햇볕 건조·훈증한 것 또한 포함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동물 조직: 위에서 열거한 것 외의 짐승류, 조류, 기타 곤충류 동물</li> <li>• 누에(신선한 누에와 말린 누에), 번데기를 포함함</li> <li>• 천연꿀: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천연꿀, 신선한 로열젤리 등</li> <li>• 셀락과 같은 동물성 수지</li> <li>• 기타 동물의 뼈, 껍질, 뿔, 혈액, 분비물, 누에 알 등 신체조직</li> </ul>

〈표 III-8〉의 계속

세율	내용
9%	농산품(그 외 재정부 세무총국이 열거한 것)
	- 건면
	- 건생강, 강황
	- 옥수수 알
	- 동물의 뼈조각
	- 「식품안전 국가표준-저온살균우유」에 따라 생산된 저온살균우유 - 「식품안전 국가표준-멸균우유」에 따라 생산된 멸균우유 등
면세	- 식용식물성기름(야자유·면화자유·회향유·코코넛유·호두유·올리브유·후추유·아몬드유·포도씨유·모란씨유 등)
	- 식용소금: 「식용염(GB/T 5461-2016)」과 「식용염위생표준(GB2721-2003)」이라는 2가지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식용소금
	- 동물사료와 첨가제(단 두박이 아닌 기타 박류 제품은 면세대상임) • 동물을 사육하는데 사용하는 상품 또는 그 가공품을 의미하며 두박, 반려동물 사료, 양식용 피시오일(饲用鱼油), 양식용 미네랄미량원소 덩어리, 사료, 사육용 인산칼륨상품(磷酸二氢钙产品)첨가제를 포함함
표준세율	- 농업생산자가 스스로 생산하여 판매한 농산품(农业生产者销售的自产农产品) - 두박이 아닌 기타 박류제품(동물사료)
표준세율	- 기타 9% 경감세율 또는 면세대상 식품이 아닌 것 (예: 식품의 통조림, 꿀이나 설탕에 잦 과일, 볶은 견과류, 기조리한 수산물, 요구르트·치즈·크림 등 신선우유를 가공하여 만든 유제품, 두박 등)

자료: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농업상품 과세범위 주석」과 财税[2017]37号 附件1.适用11%増值税税率货物范围注释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바.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부가가치세 세율로 표준세율, 영세율, 면세를 두고 있음<sup>76)</sup>

○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단일세율 제도를 운영하며 표준세율은 2021년 현재 7%임<sup>77)</sup>

76) IBFD, “Singapore - Goods and Services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 September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sg\\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sg_s_007.html), 검색일자: 2020. 12. 2.

77) Ministry of Finance Singapore, 2018, p. 43.

- 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까지 표준세율을 9%로 인상할 예정임

- 영세율은 수출에 대해 적용하며 면세는 금융, 주거용 부동산의 판매·임대 등에 대해 적용함

□ 단일세율 제도를 운영하므로 식료품에 대해서도 표준세율을 적용함

□ 2011년 식료품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싱가포르 정부는 그 효익에 비해 실이 많을 수 있다고 보고 단일세율 제도를 유지함<sup>78)</sup>

- 당시 싱가포르 재무부 장관 Tharman Shanmugaratnam은 다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식료품에 대해 경감세율이 아닌 단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첫 번째, 싱가포르 저소득층의 기초식료품 지출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보다 직접적 지원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함

- 2007~2008 싱가포르 가계지출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들의 총지출액 중 8대 기초식료품(쌀, 소금, 설탕, 식용유, 장유(soya sauce), 채소, 밀가루, 생선)에 대한 지출액은 6%, 다른 비조리된 식료품(uncooked food items)에 대한 지출액은 15% 수준이라고 함

- 또한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 비해 기초식료품에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고 함

- 두 번째, 복수세율을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식료품에 대한 적용세율 분류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하게 되며 결국 부가가치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법인세를 인상하여 메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단일세율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영국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시 식료품의 구분(예를 들어 스무디가 음료인지, 액체음식인지 등)을 두고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함

78) Ministry of Finance Singapore, 2011a, pp. 34~36.

## 사. 호주

### 1) 개요

- 호주는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세율 관련 표준세율, 영세율, 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표준세율은 10%임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식품품은 명시된 특정 식품품 등을 제외하고는 영세율(GST-free)을 적용함<sup>79)</sup>
  - 식품품은 다음의 하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조합을 의미함<sup>80)</sup>
    - 가공 또는 처리가 필요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사람이 소비하기 위한 식품품
    - 식용 식재료
    - 식용 음료
    - 식용 음료 재료
    - 사람이 소비하는 식품품에 혼합되거나 첨가되는 제품(조미료, 향신료, 양념, 감미료 또는 향료 포함)
    - 요리용으로 판매되는 지방 및 오일
  - 다만 다음은 식품품에 포함되지 않음
    - 살아있는 동물(갑각류 또는 연체동물 제외)
    - 가공되지 않은 우유(cow's milk)
    - 형태, 성질, 상태의 변형 등 가공 또는 처리되지 않은 곡물, 시리얼, 사탕수수
    - 추가 가공이나 처리 없이 식용할 수 있는 재배 중인 식물
  
- 식품품은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되 특정 식품품에 한해 과세하며, 음료는 원

79) GST Act SECTION 38-2 Food

80) GST Act SECTION 38-4 Meaning of food

칙적으로 과세하되 특정 음료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함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특정 식음료 등은 다음과 같음<sup>81)</sup>

- 공급되는 장소에서 소비하는 식품
- 공급되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비하기 위한 뜨거운 식품
- [별표 1]에 열거된 즉석식품, 과자, 짹짹한 스낵, 제빵제품, 아이스크림, 비스킷
- [별표 2]에 열거된 우유제품, 두유, 차, 주스, 유아용 음료, 물을 제외한 음료

〈표 III-9〉 호주의 과세대상 식료품[별표 1]

구분	내용
즉석 식품	1. 키시
	2. 샌드위치(모든 종류의 빵 또는 롤 포함)
	3. 피자 및 이와 유사한 식료품
	4. 즉석 판매용 식품(수프 제외)
	5. 치즈, 냉햄, 과일 또는 채소의 플래터 및 기타 식료품
	6. 햄버거, 치킨 버거 및 이와 유사한 식품
	7. 핫도그
과자	8. 과자, 과자로 판매되는 식료품, 과자의 원료로 판매되는 식료품 또는 주로 과자로 구성된 식료품
	9. 팝콘
	10. 노벨티
	11. 뮤즐리 바 또는 건강식 바로 알려진 식료품 및 이와 유사한 식료품
	12. 설탕에 절인 과일, 코팅 처리된 과일 및 물기를 뺀 과일
	13. 설탕에 절인 생강과 보존 처리된 생강
	14. 식용 케이크 장식
짹짹한 스낵	15. 감자칩, 옥수수 칩 또는 칩, 베이컨 또는 돼지고기 크래킹 또는 새우칩
	16. 염장, 조미, 훈제, 볶음 또는 기타 유사한 방식으로 가공 또는 처리한 씨앗 또는 견과류
	17. 캐비어 및 이와 유사한 생선 알
	18. 채소, 허브, 과일, 육류, 해산물 또는 유제품 또는 추출물로 전체 또는 일부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인공향료 첨가 여부에 관계없이 항목 15 또는 16에 해당하는 식료품과 유사한 식료품
	19. 항목 15~18에 해당하는 식료품과 유사한 식료품

81) GST Act SECTION 38-3 Food that is not GST-free

〈표 III-9〉의 계속

구분	내용
제빵 제품	20. 케이크, 슬라이스, 치즈케이크, 팬케이크, 와플, 크레이프, 머핀 및 푸딩
	21. 파블로바와 머랭
	22. 파이(고기, 채소 또는 과일), 페스트리 및 소시지를
	23. 타르트와 페스트리
	24. 도넛과 크로와상
	25. 파스티지, 칼조니, 브리오체
	26. 스콘과 스크롤
	27. 달콤한 필링이나 코팅한 빵(번 포함)
아이스 크림	28.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및 아이스크림 대용품
	29. 냉동 과자, 냉동 요거트 및 냉동 과일 제품(전체 냉동 과일 제외)
	30. 향이 첨가된 아이스 블럭
	31. 항목 28~30에 해당하는 식료품과 유사한 식료품
비스킷	32. 비스킷, 쿠키, 크래커, 프레즐, 콘 또는 웨이퍼로 구성되거나 이들로 주로 구성된 식료품

자료: GST Act, Schedule 1 — Food that is not GST-free

〈표 III-10〉 호주의 영세율 대상 음료[별표 2]

구분	내용
우유 제품	1. 다음 제품 중 하나 - 우유, 탈지우유 또는 버터 밀크(액체, 분말, 농축 또는 응축 여부 무관) - 카세인 - 유청, 유청 분말 또는 유청 페이스트
	2. 최소 95%의 범위 내에서 항목(1)에서 언급된 제품 또는 이들 제품의 조합으로 된 음료(향이 첨가된 음료 제외)
	3. 유당
두유 쌀우유	4. 주로 두유 또는 쌀 우유로 구성된 음료(향이 첨가된 음료 제외)
차, 커피 등	5. 차(허브차, 과일차, 인삼차 및 기타 유사한 음료 제제 포함), 커피 및 커피 에센스, 치커리 및 치커리 에센스 및 맥아
	6. 맥아 추출물(주로 음용 목적으로 판매되는 경우)
	7. 주로 차, 커피 또는 맥아 음료로 판매되는 음용 목적을 위한 제제
	8. 주로 항목6 또는 7에 해당하는 제제의 대체품으로 판매되는 제제
	9. 우유 향료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건조 제제

〈표 III-10〉의 계속

구분	내용
과일 채소 주스	10. 무알코올 음료를 만들기 위한 농축액(농축액이 과일주스 부피의 최소 90% 이상일 것)
	11. 무알코올 탄산음료(과일 또는 채소주스로만 구성될 것)
	12. 무알코올 무탄산음료(과일 또는 채소주스 부피의 최소 90% 이상일 것)
유아용 음료	13. 유아 또는 장애인용 식품으로 판매되는 음료 및 음료 재료
물	14. 천연 물로 탄산이나 기타 첨가물이 첨가되지 않을 것

자료: GST Act, Schedule 2 — Beverages that are GST-free

## 2) 관련 판례

- 이탈리아에서 수입 판매하는 ‘미니 Ciabatte’가 빵인지 크래커인지 여부(LANSELL HOUSE PTY LTD & ANOR v FC of T, [2011]FCAFC 6, 2011. 1. 31.)<sup>82)</sup>
  - 일반적으로 식료품은 GST가 면제되지만 [별표 1] 32에 명시된 비스킷, 쿠키, 크래커, 프레즐, 콘 또는 웨이퍼로 구성되거나 이들로 주로 구성된 식료품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됨
  - 미니 Ciabatte는 성분, 성분 비율, 효모, 설탕 비율, 이탈리아 기원, 수분 함량, 단백질 비율, 외형, 보관수명 등을 고려했을 때 크래커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임
- 탄산 과일음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P&N BEVERAGES AUSTRALIA PTY LTD v FC of T, [2007] NSWSC 338, 2007. 4. 18.)<sup>83)</sup>
  - [별표 2] 11에 따라 과일이나 채소주스로 구성된 무알코올성 탄산음료는 과세에서 제외됨
  - 여기서 ‘과일이나 채소로 구성’됨이란 과일이나 채소가 100%인 것을 의미하므

82) 호주 정부, "LANSELL HOUSE PTY LTD & ANOR v FC of T,"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locid=%27JUD/2011ATC20-239%27&PiT=99991231235958>, 검색일자: 2020. 12. 11.

83) 호주 정부, "P & N BEVERAGES AUSTRALIA PTY LTD v FC of T,"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docid=JUD/2007ATC4481/00001>, 검색일자: 2020. 12. 11.

로 P&N가 공급하는 과일주스에 과일이 아닌 첨가제가 1%라도 들어가면 과세 대상에 해당됨

#### 아.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세율 관련 표준세율, 영세율, 면세 제도를 두고 있음
  - 표준세율은 15%임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식료품은 세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표준세율 15%를 적용함
  
- 한편 뉴질랜드의 식료품에 대한 GST 면제 여부는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이었음
  - 2008년 관련 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식료품에 대한 GST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함<sup>84)</sup>
    - 정부는 식료품에 대한 GST 폐지 시 기업에 관련 규정 준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GST 폐지를 고려하지 않기로 함
  - 2010년 기사에 따르면 과일, 채소, 빵, 시리얼, 유제품을 건강식품으로 정의하고, 이에 한해 GST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무산됨<sup>85)</sup>
    - 정부는 건강식품에 한해 GST를 면제하면 다른 식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으며 건강식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식품을 분류하는 것 또한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사유로 반대함
  - NZ First는 2011년 선거 캠페인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대한 GST 폐지 정

---

84) *NZherald*, "Removal of GST on food unlikely - PM," 2008. 4. 28., <https://www.nzherald.co.nz/nz/removal-of-gst-on-food-unlikely-pm/GUQOBX2ONXIL7EYLG7DHQTUEKA/>, 검색일자: 2020. 12. 15.

85) *NZherald*, "Key rules out GST-free food", 2010. 7. 21., <https://www.stuff.co.nz/national/3942921/Key-rules-out-GST-free-food>, 검색일자: 2021. 1. 12.

책을 내세우기도 하였으나 몇 년 후 철회함<sup>86)</sup>

- 뉴질랜드의 TWG(Tax Working Group)는 2018년 『세금의 미래(Future of Tax)』 보고서에서 식음료(알코올음료 제외)에 대한 GST 면제 시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sup>87)</sup>
  - 식음료에 대한 지출 비중은 2분위(저소득) 가구의 경우 주당 평균 가구지출의 약 19%, 10분위(고소득) 가구는 약 14%를 차지함
    - 즉 식음료에 대해 GST를 면제하면 저소득 가구에 더 큰 영향을 미침
  - 그러나 고소득 가구는 전체 소득에서 식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식음료에 더 많은 지출을 하기 때문에 GST를 면제하는 경우 2분위 가구는 14.35뉴질랜드달러의 혜택을 받지만 10분위 가구는 53.03뉴질랜드달러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함
  - 따라서 GST 면제가 누진세(income tax progressivity) 또는 직접 복지이전과 같은 다른 조치와 비교하여 사회적 분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함
- 보고서는 식음료에 대한 GST 예외 규정은 분배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복잡한 규정 준수 비용 및 예외 범위에 대한 논쟁을 유발시키는 등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함<sup>88)</sup>
  - GST 예외 규정으로 인해 감소된 세수는 저소득 가구만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식음료에 대한 GST 면제로 인한 세수는 26억뉴질랜드달러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가 재분배로 지출할 금액이 이와 동일하다면 각 가구에 주당

86) *NZherald*, "Should NZ copy Aussie and scrap GST on food?," 2018. 1. 25., <https://www.nzherald.co.nz/business/should-nz-copy-aussie-and-scrap-gst-on-food/I57CJ4YC2N3O4VF56PJIMFIGTI/>, 검색일자: 2020. 12. 15.

87) New Zealand Government, 2018, P. 87.

88) New Zealand Government, 2018, P. 89.

28.85뉴질랜드달러의 현금이전이 가능하므로 2분위 가구의 경우 현금이전이 2배로 증가됨

- GST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과세와 과세 제외의 경계가 모호하여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음
    - 기업은 GST가 면제되는 제품을 식별하고 분리해야 하는 등 이와 관련된 준수 비용이 발생함
  - GST에 대한 예외가 늘어나면 또 다른 예외에 대한 논쟁뿐만 아니라 감소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음
- 결론적으로 TWG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식료품에 대한 GST 폐지를 권고하지 않음<sup>89)</sup>
- GST 예외 규정은 복잡성을 유발함
  - GST가 면제되는 식료품을 선택하는 데 드는 관리 및 규정 준수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함
  - GST 면제로 인한 이점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89) New Zealand Government, 2019, p, 22.

## IV. 국제비교 및 결론

-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세율체제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주요국과 달리 단일세율 체제이며 세율 또한 낮다는 특징이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로는 싱가포르, 호주, 덴마크가 있으며 그 외 모든 주요국은 복수세율을 적용함
  - 일본은 기존에 8%의 단일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세율을 10%로 인상하면서 복수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함

〈표 IV-1〉 조사대상국의 부가가치세 세율 구조

(단위: %)

국가	세율체제	세율
우리나라	단일세율	표준세율 10
미국 <sup>1)</sup>	-	-
일본	복수세율	표준세율: 10/경감세율: 8
영국	복수세율	표준세율: 20/경감세율: 5
캐나다	단일세율	표준세율 5 <sup>2)</sup>
중국	복수세율	표준세율: 13/경감세율: 9
싱가포르	단일세율	표준세율: 7
호주	단일세율	표준세율 10
뉴질랜드	단일세율	표준세율 15
27개 EU 회원국	덴마크: 단일세율/그 외: 복수세율	표준세율: 17~25/경감세율: 5~18 <sup>3)</sup>

주: 1. 2021년 기준

- 1) 미국은 부가가치세 제도는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소비세로 각 주별로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판매세는 7.25%임
- 2) 캐나다의 표준세율은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GST 기준 5%이며 참여정부에 따라 HST 13~15%가 적용됨
- 3)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5% 이상의 경감세율을 둘 수 있음. 단 아일랜드(4.8%), 스페인(4%), 프랑스(2.1%), 이탈리아(4%), 룩셈부르크(3%)는 이에 불구하고 5% 미만의 초경감세율을 별도로 두고 있음

자료: 제III장 내용을 저자 정리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 10%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과세하는 국가로 일본(10%, 8%), 싱가포르(7%), 호주(10%)가 있으며, 그 외 모든 주요국은 이보다 높은 세율(17~25%, 5~18%)로 과세함
-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를 비교해 보면 식료품에 대해 면세규정을 둔 국가로 우리나라, 중국이 있음
  - 우리나라와 중국은 식료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대상을 우리나라는 미가공식료품으로 하는 데 비해 중국은 농업생산자가 직접 생산하여 판매한 농산품으로 한정하여 차이가 있음
  - 그 밖에 모든 주요국은 식료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두지 않음<sup>90)</sup>

〈표 IV-2〉 주요국의 식료품에 대한 면세규정 유무<sup>1)</sup>

국가	면세규정	면세대상
우리나라	○	미가공식료품
일본	×	-
영국	×	-
캐나다	×	-
중국	○	농업생산자가 직접 생산하여 판매한 농산품
싱가포르	×	-
호주	×	-
뉴질랜드	×	-
27개 EU 회원국	×	-

주: 1) 미국은 부가가치세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제III장 내용을 저자 정리

- 대부분의 주요국은 식료품을 경감세율 또는 영세율로 과세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 있음
  - 싱가포르와 리투아니아는 모든 식료품, 우리나라는 가공식료품에 대해 표준세율

90) EU 회원국 중 모유에 대해 면세하는 국가(포르투갈 등)가 존재하나 이에 대한 서술은 생략함

로 과세함

- 체코·스페인·키프로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오스트리아·루마니아·슬로베니아·핀란드·스웨덴은 모든 식료품, 일본은 주류·외식·케이타링을 제외한 모든 식료품을 경감세율로 과세함
- 영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몰타는 식료품을 영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 - 단 과자류 및 일부 열거된 식료품은 표준세율 또는 경감세율로 과세함
- 그 외 주요국은 자국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경감세율 및 표준세율 적용대상 식료품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표 IV-3〉 주요국의 식료품 과세 구분<sup>1)</sup>

국가	영세율	경감세율	표준세율
우리나라	-	-	식료품(미가공 면세)
미국 <sup>2)</sup>	-	-	-
일본	-	모든 식료품	주류·외식·케이타링
영국	일반식료품	-	과자류/일부 일반식료품
캐나다	그 외 식료품	-	과자류
중국	-	기본식료품 (농업생산자 면세)	일부 기본식료품 그 외 식료품
싱가포르	-	-	모든 식료품
호주	그 외 식료품	-	과자류
뉴질랜드	-	-	모든 식료품
EU 회원국	벨기에	-	일반식료품
	불가리아	-	-
	체코	-	모든 식료품
	덴마크	-	-
	독일	-	일반식료품
	에스토니아	-	-
	아일랜드	기본식료품	특정 과자류
	그리스	-	일반식료품
	스페인	-	모든 식료품
	프랑스	-	기본식료품 특정농수산물

〈표 IV-3〉의 계속

국가	영세율	경감세율	표준세율	
EU 회원국	크로아티아	-	필수식료품 기본식료품	그 외 식료품
	이탈리아	-	필수식료품 일반식료품	고급식료품
	키프로스	-	모든 식료품	-
	라트비아	-	과일, 딸기, 채소	그 외 식료품
	리투아니아	-	-	모든 식료품
	룩셈부르크	-	모든 식료품	-
	헝가리	-	일부 기본식료품	그 외 식료품
	몰타	그 외 식료품	과자류	케이팅 과정에서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는 식료품
	네덜란드	-	모든 식료품	-
	오스트리아	-	모든 식료품	-
	폴란드	-	기본식료품	고급식료품 / 그 외 식료품
	포르투갈	-	일부 일반식료품	그 외 식료품
	루마니아	-	모든 식료품	-
	슬로베니아	-	모든 식료품	-
	슬로바키아	-	일부 일반식료품	그 외 식료품
핀란드	-	모든 식료품	-	
스웨덴	-	모든 식료품	-	

주: 1) 식료품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주류 및 음료는 구분대상에서 제외함(다만 2개 이상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선행번호를 우선 적용하였으며 국가별 예외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Ⅲ장 및 부록을 참조할 것)

- ① 필수식료품: 빵, 우유 등
- ② 기본식료품: 곡류, 육류, 생선, 채소, 과일, 유제품 등
- ③ 일반식료품: 기본식료품에 과자류 등 포함
- ④ 과자류: 과자, 코코아, 초콜릿 등
- ⑤ 고급식료품: 랍스터, 캐비어 등
- ⑥ 모든 식료품: ①~⑤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2) 미국(캘리포니아주)은 식료품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음(과세 제외)

자료: 제Ⅲ장 내용을 저자 정리

□ 주요국의 경감세율·영세율 적용대상 식료품의 범위를 보면 큰 공통점은 확인되지 않으며 자국의 정치·경제적 필요에 따라 과세구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임

○ 영국, 몰타는 과자류를 다른 식료품에 비해 고율로 과세하나 벨기에, 체코, 그리

스, 독일, 프랑스 등은 차등과세하지 않음

- 특히 영국은 과자류에 표준세율을 적용하나 케이크, 비스킷은 특별히 영세율을 적용하며 표준세율 적용대상이라도 특정 원료를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자국의 고유한 기준에 따라 차등과세함<sup>91)</sup>

- 벨기에, 체코, 독일, 프랑스, 폴란드는 고급식품(랍스터·캐비어 등)을 일반적인 식품에 비해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나 그 외 국가들은 차등과세하지 않음
  - 루마니아는 고품질음식(산악·친환경적·전통적이라고 정부가 인증한 음식)은 다른 식품에 비해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하여 정책적으로 우대함
  - 포르투갈은 생선을 통조림으로 만든 경우 원료가 일반적인 생선인지, 황새치·철갑상어·연어인지에 따라 차등과세함
- 우리나라와 같이 식품을 가공처리 정도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국가는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국가들은 특정한 가공처리를 한 경우 차등과세함
- 우리나라는 식품을 가공하였으나 그 가공처리 정도가 단순·원시가공에 해당한다면 미가공식품으로 보아 면세하고 그렇지 않다면 표준세율로 과세함
  - 이에 비해 대부분의 주요국은 특정 식품에 과세할 시 일정한 가공(절단, 냉장, 냉동, 파쇄, 으깨기, 껍질 벗기기 등)을 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규정함
  - 단 중국과 포르투갈은 일부 식품에 특정한 가공처리(통조림, 훈제)를 한 경우 그 외의 가공처리를 한 경우와 차등과세함
    - 중국은 농산품을 절단·염장 등을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감세율로 과세하나 통조림으로 만든 경우 표준세율로 과세함
    - 포르투갈은 연체동물에 대해 건조·염장 등을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6%의 세율로 과세하나 통조림으로 만든 경우 13%의 세율로 과세하며, 생선에 대해 냉장·냉동·염장·건조 등을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6%의 세율로 과세하나 훈

91) 예를 들어 일반적인 비스킷, 초코우유 분말은 영세율로 과세하나 초콜릿으로 덮여진 비스킷, 바나나·딸기우유 분말은 표준세율로 과세함

## 제한 경우 13%의 세율로 과세함

- 주요국은 식료품의 가공 정도가 아닌 열거된 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경감세율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열거된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미가공식료품에 대해 법에서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등이라고 정의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세세히 구분하고 있으나 미가공 정도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판례 및 예규 등을 통해 사실판단하고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코팅된 과일(Glacéd Fruits)이 '사탕 또는 과자'에 해당하는지 '과일 및 과일제품' 또는 '설탕 및 설탕제품'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행정해석에 따라 '사탕 또는 과자'로 보아 과세함
  - 영국은 식료품의 과세 구분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여러 식료품의 특징을 함께 가진 제품이 다수 존재하여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식감·제품크기·포장패키지·소매판매점의 진열 구분·먹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판례가 있음
  - 호주는 미니 Ciabatte가 빵(영세율)인지 크래커(과세)인지에 대해 성분 등을 분석한 결과 크래커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캐나다는 기본식료품의 과세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해당 제품의 표시, 특징, 포장, 판매방식 등을 고려해 영세율 여부를 판단함
- 결론적으로 주요국의 식료품의 과세기준을 보면 큰 공통점은 확인되지 않으며 자국의 정치·경제적 필요에 따라 과세구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임
  - 주요국들은 과세대상 식료품의 범위를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며 큰 공통점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어느 제도가 바람직한지 단정하기 어려움
- 식료품 과·면세 기준 및 범위의 재정비는 해외사례를 참조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문헌

- 안창남, 『주요국의 소비세제도(I)-부가가치세: 유럽연합 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임소영·박지연, 『농업부문 부가가치세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EU 정책 브리핑』, 외교부, 2016.
- 황종대·강인·신정기, 『부가가치세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8.
- CDTFA, *Grocery Stores*, 2020.
- European Commission, “VAT rates applied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 Situation at 1st January 2020,” European Commission, 2020.
- Katherine Loughhead, *Sales Taxes on Soda, Candy, and Other Groceries*, 2018.
- Michael Smart, “DEPARTURES FROM NEUTRALITY IN CANADA’S GOODS AND SERVICES TAX,” *THE SCHOOL OF PUBLIC POLICY*, University of CALGARY, 2012.
- Ministry of Finance Singapore, *BUDGET 2011 DEBATE ROUND-UP SPEECH BY MINISTER FOR FINANCE, MR THARMAN SHANMUGARATNAM ON 2 MARCH 2011*, Singapore Government, 2011.
- \_\_\_\_\_, *Budget 2018-Budget Speech: Together, A Better Future*, Singapore Government, Singapore Government, 2018.
- New Zealand Government, *Future of Tax, Interim Report*, Tax Working Group, 2018.

\_\_\_\_\_, *Future of Tax, Final Report Volume I, Recommendations*, Tax Working Group, 201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삼일아이닷컴, <http://www.samili.com/>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  
 이택스코리아, <http://www.etaxkorea.net>  
 国家税务总局, <http://www.chinatax.gov.cn/>  
 自由民主党, <https://jimin.jp>  
 네덜란드 정부, <https://www.belastingdienst.nl/>  
 뉴질랜드 해럴드, <https://www.nzherald.co.nz/>  
 라트비아 법무부, <https://likumi.lv/ta/en>  
 룩셈부르크 정부, <https://logistics.public.lu/>  
 벨기에 재무부, [www.fisconetplus.be/](http://www.fisconetplus.be/)  
 부가가치세 계산 사이트, <https://www.mehrwertsteuerrechner.de/>  
 아일랜드 국세청, <https://www.revenue.ie/>  
 영국 정부, <https://www.gov.uk/>  
 이탈리아 법령정보사이트, <https://def.finanze.it/>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  
 캐나다 법령정보사이트, <https://laws-lois.justice.gc.ca/>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  
 캘리포니아주정부 세무관청, <https://www.cdtfa.ca.gov/>  
 크로아티아 법령정보사이트, <https://www.zakon.hr/>  
 프랑스 공공재정 총국, <https://bofip.impots.gouv.fr/>  
 프랑스 법령정보사이트, <https://www.legifrance.gouv.fr/>  
 호주 법령정보사이트, <https://iknow.cch.com.au/>

Business World Magazine, <https://smiraponitke.com/>

Croner tax wise, <https://www.cronertaxwise.com/>

IBFD, <https://research.ibfd.org/>

Insider.co.uk, <https://www.insider.co.uk/>

Tornos News International Edition, <https://www.tornosnews.gr/en>

## 부록. EU 회원국의 식료품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1. 벨기에

- 벨기에는 부가가치세 세율 관련 표준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및 면세를 운영하고 있음<sup>1)</sup>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21%이며 경감세율은 6%, 12%임
    - 벨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Royal Decree No. 20에 재화와 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율을 정하고 있음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의료, 교육, 문화서비스 등에 적용됨<sup>2)</sup>
  
- 식료품은 Royal Decree No. 20, [부록] table A, B, C에 열거된 것에 한해 영세율 또는 경감세율(6% 또는 12%)을 적용함<sup>3)</sup>
  - 모유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함<sup>4)</sup>

---

1) 벨기에 재무부, "VAT Comment - Chapter 7. Tax rates," 2020, p. 11. <https://www.vatupdate.com/wp-content/uploads/2020/04/2020-05-03-VAT-comment-chapter-7-VAT-rates.pdf>, 검색일자: 2020. 11. 25.

2) IBFD, "Belgium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 August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be\\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be_s_007.html), 검색일자: 2020. 11. 25.

3) 벨기에 재무부, "VAT Comment - Chapter 7. Tax rates," 2020, p. 11., <https://www.vatupdate.com/wp-content/uploads/2020/04/2020-05-03-VAT-comment-chapter-7-VAT-rates.pdf>, 검색일자: 2020. 11. 25.; IBFD, "Belgium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 August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be\\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be_s_007.html), 검색일자: 2020. 11. 25.

4) IBFD, "Belgium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 August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be\\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be_s_007.html).

- 살아있는 동물, 육류, 어류, 유제품, 식품용 채소, 과일, 식물성 제품, 가루, 지방과 오일, 동물성 제품, 기타 식품 등은 6%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일반적으로 식료품은 가공 또는 보존(prepared or preserved) 여부를 불문하고 경감세율 적용 대상임
  - 랍스터, 캐비어 등 고급식품은 표준세율 과세대상임
-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서비스, 농림부 장관이 인정한 식물 의약품, 마가린 등은 12% 경감세율을 적용함

〈부표 1〉 벨기에의 식료품별 경감세율

세율	구분	내용
0%	- 모유	- 모유 공급
6%	- 살아있는 동물	- 소, 돼지, 양, 염소, 당나귀, 노새, 히니, 사슴, 말, 판매용 말, 도축용 말(수입 포함) - 다만 열거되지 않은 야생 비둘기, 야생 토끼, 산토끼, 개, 고양이, 벌은 표준세율을 적용함 - 가금류, 길들인 비둘기, 집토끼
	- 육류 및 내장	- 모든 종류의 육류 및 식용 내장(가공 또는 보존 여부 불문) - 동물의 내장, 방광 및 위(전체 또는 일부 포함)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가공 또는 보존 여부 불문) - 다만 다음은 제외함 • 캐비어 및 캐비어 대체품 • 가재, 바닷가재, 게, 굴 등(생물, 가열, 냉장, 냉동, 건조, 염장, 껍질 유무 불문) • 가재, 바닷가재, 게, 굴 등 가공 또는 즉석식품(prepared meals)
	- 우유, 유제품, 달걀, 꿀	- 우유 및 유제품(요거트, 크림, 버터, 치즈, 커드, 우유 음료 등) - 새알 및 노른자 - 천연꿀
	- 채소, 식물, 식용 뿌리 및 줄기	- 채소와 식물, 뿌리, 줄기(가공 또는 보존 여부 불문) - 식용 버섯, 송로버섯 포함
	- 과일, 감귤껍질, 멜론 껍질	- 과일(가공 또는 보존 여부 불문) - 감귤류 과일과 멜론의 껍질(가공 또는 보존 여부 불문)

〈부표 1〉의 계속

세율	구분	내용
6%	- 식물성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물</li> <li>- 기름 종자 및 유성 과일(파손 여부 무관)</li> <li>- 씨앗</li> <li>- 사탕무 및 사탕수수(절단 여부 무관)</li> <li>- 치커리 뿌리</li> <li>- 홉</li> <li>- 주로 향수, 의약, 방제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물, 식물의 일부, 씨앗, 과일</li> <li>- 성 요한의 빵(주로 식품에 사용되는 과일 종자 및 채소 제품)</li> <li>- 곡물의 짚과 왕겨(다진 여부 불문)</li> <li>- 사료용 사탕무 및 기타 사료 뿌리: 건초, 클로버, 사료 양배추 및 기타 유사한 사료 등</li> <li>- 턴</li> <li>- 목재, 작업하지 않은 목재, 장작, 목재 폐기물</li> <li>- 살아있는 산림 나무, 살아있는 과일 나무, 관목 및 그 묘목(정원의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공급되는 경우 포함)</li> <li>- 살아있는 관상용 나무, 관목 및 기타 살아있는 관상용 식물, 전구, 괴경(정원의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공급되는 경우 포함)</li> <li>- vlas 다만, 개, 고양이, 앵무새 같은 새장용 새, 수족관의 물고기, 햄스터, 기니피그, 기타 애완동물 동물 등을 위한 식품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표준세율을 적용함</li> </ul>
	- 제분 제품, 맥아, 전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물, 콩과 식물의 씨앗, 과일, 감자, 기타 뿌리 및 괴경의 밀가루, 플레이크(겉질을 벗기거나, 분쇄 등 여부 불문)</li> <li>- 맥아(로스팅 여부 불문)</li> <li>- 전분(용해성, 로스팅 또는 접착 제품 제외)</li> </ul>
	- 지방, 오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성 지방 및 오일(원유, 용융, 정제 또는 정제된 것)</li> <li>- 원유, 정제 또는 정제된 식물성 지방유</li> <li>- 동물성 및 식물성 지방과 오일(수소화, 응고 또는 경화 정제 여부 불문)</li> <li>- 마가린을 제외한 식용 지방</li> </ul>
	- 기타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피(로스팅 불문, 디카페인 커피 포함) 차 종류, 향신료</li> <li>- 잼 및 젤리 제조에 사용되는 펙틴 및 펙틴 기반 액체 또는 분쇄 제품</li> <li>- 고기 추출물과 국물</li> <li>- 설탕, 시럽 및 당밀(캐러멜 처리, 방향 처리 또는 착색 여부 불문), 과자류, 인공 꿀: 코코아 콩, 코코아 페이스트, 코코아 분말, 코코아 버터, 초콜릿 및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식품</li> <li>- 맥아 추출물, 유아용 영양식품, 조리용 제품, 파스타, 타피오카; 팟핑 또는 로스팅한 시리얼, 베이커리 제품, 케이크 및 비스킷, 웨이퍼, 의약품용 웨이퍼 및 유사 제품</li> <li>- 잼, 젤리, 마멀레이드, 과일 퓨레 및 과일 페이스트</li> <li>- 로스팅 치커리, 기타 로스팅 커피 대용품 및 그 추출물</li> </ul>

## 〈부표 1〉의 계속

세율	구분	내용
	- 기타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피, 차 및 마테 추출물 및 에센스</li> <li>- 겨자 가루와 가공된(prepared) 겨자</li> <li>- 소스, 복합 양념 등</li> <li>- 수프 또는 국물용 제품, 즉석 수프와 국물</li> <li>- 천연 효모(활성 여부 불문), 베이킹파우더, 식품 제조를 위한 미생물 배양액</li> <li>- 천연 또는 인공 식초</li> <li>- 식용 소금</li> <li>- 식용 젤라틴</li> <li>- 상기 외 기타 식용 제품(실제 알코올 도수가 0.5% 이상인 맥주와 실제 알코올 도수가 1.2% 이상인 기타 음료는 제외)</li> </ul>
	- 동물성 식품, 비료, 동물성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조된 혈액</li> <li>- 갈거나 가루로 만든 육류, 내장, 생선, 갑각류 및 연체 동물</li> <li>- 밀기울 및 기타 곡류 또는 콩과 식물의 체질, 분쇄 또는 기타 가공의 잔여물</li> <li>- 사탕무 펄프, 사탕수수 분쇄 및 설탕 생산의 기타 잔류 물, 맥주 및 증류 제품의 찌꺼기, 전분 생산의 잔류물 및 이와 유사한 잔류물</li> <li>- 올리브를 포함한 오일 케이크 및 찌꺼기와 퇴적물을 제외한 식물성 기름을 제조할 때 얻은 기타 잔류물</li> <li>- 사료로 사용되는 식물성 제품(사과 및 기타 과일 등)</li> <li>- 당밀 또는 설탕으로 생산되는 동물 사료 및 기타 조제 된 동물 사료, 기타 동물 사료로 사용되는 제품(보조 제품 등)</li> <li>- 비료</li> <li>- 번식에 사용되는 동물성 제품</li> <li>- 양모</li> <li>- 다만, 개, 고양이, 앵무새 같은 새장용 새, 수족관의 물고기, 햄스터, 기니 피그, 기타 애완동물 동물 등을 위한 식품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표준세율을 적용함</li> </ul>
	- 레스토랑, 케이터링 서비스	-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서비스(음료 제공 제외)
	- 식물의약품	- 농림부 장관이 인정한 식물 의약품
12%	- 마가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물성·동물성 지방에서 얻은 지방 함량이 80% 이상 90% 이하인 제품으로 '마가린'이라고 판매되는 것</li> <li>- 식물성·동물성 지방에서 얻은 지방 함량이 60% 이상 62% 이하인 제품으로 '3/4 마가린'이라고 판매되는 것</li> <li>- 식물성·동물성 지방에서 얻은 지방 함량이 39% 이상 41% 이하인 제품으로 '세미 탈지마가린, 미나린, 할바린'이라고 판매되는 것</li> </ul>

자료: 벨기에 재무부, "VAT Comment - Chapter 7. Tax rates," <https://www.vatupdate.com/wp-content/uploads/2020/04/2020-05-03-VAT-comment-chapter-7-VAT-rates.pdf>, 검색일자: 2020. 11. 25.; IBFD, "Belgium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 August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be\\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be_s_007.html), 검색일자: 2020. 11. 25.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 2. 불가리아

- 불가리아는 부가가치세 세율 관련 표준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두고 있음<sup>5)</sup>
  - 표준세율은 20%임
  - 경감세율은 9%로 숙박시설 등의 공급에 대해 적용되며 관광서비스의 일부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식료품은 세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표준세율을 적용함
  - 다만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서비스, 영유아용 식품에 한해 9%의 경감세율을 적용함<sup>6)</sup>

## 3. 체코

- 체코는 부가가치세 세율 관련 표준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두고 있음<sup>7)</sup>
  - 표준세율은 21%임
  - 경감세율은 10% 또는 15%임
    - 이유식,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신문 등은 10%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10%가 적용되지 않는 식료품과 의약품, 문화서비스 등은 15%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5) IBFD, "Bulgaria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 January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bg\\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bg_s_007.html), 검색일자: 2020. 11. 27.

6) 불가리아 「부가가치세법(VAT Act)」 제66조 제2항

7) IBFD, "Czech Republic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 September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cz\\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cz_s_007.html), 검색일자: 2020. 11. 27.

- 식품품은 부가가치세법(ZDPH) [부록 1]에 열거된 것에 한해 15% 또는 10%의 경감세율이 적용됨<sup>8)</sup>
  - 식품품, 음료(알코올 음료 제외), 동식물 등은 15%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이유식 및 제분제품(Products of milling industry) 등은 10%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부표 2〉 체코의 식품품별 경감세율

세율	내용
15%	- 식품, 음료(알코올음료 제외), 살아있는 동물, 씨앗, 식물, 첨가물 및 사료
	- 살아있는 종과 식물, 구근, 뿌리 및 이와 유사한 것, 장식용 잎사귀
	- 식물 및 씨앗
10%	- 12개월 이하 유아용 우유 및 이유식
	- 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식품
	- 제분제품(Products of milling industry) 및 전분제품 혼합물
	- 맥아, 전분, 글루텐 및 이들의 혼합물
	- 글루텐 프리 제분제품과 그 변형제품

자료: 체코 ZDPH [별표 1] Reduced/Increased Rates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 4. 덴마크

- 덴마크는 부가가치세 세율로 표준세율, 영세율, 면세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경감세율은 두고 있지 않음<sup>9)</sup>
  - 표준세율은 25%임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식품품은 세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표준세율을 적용함

8) IBFD, "Czech Republic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7. Annex I: Reduced/Increased Rates,"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cz\\_annex\\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cz_annex_1.html), 검색일자: 2020. 11. 27.

9) IBFD, "Denmark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dk\\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dk_s_007.html), 검색일자: 2020. 11. 27.

## 5. 독일

- 독일은 부가가치세 세율로 표준세율, 경감세율, 특별세율, 영세율, 면세를 두고 있음<sup>10)</sup>
  - 표준세율은 19%이며 경감세율은 7%임
    - 다만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율을 각각 19%에서 16%, 7%에서 5%로 낮춤
  - 농업 및 임업은 5.5%, 10.7% 등 특별세율이 적용됨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UStG)」 [부록 2]에 열거된 항목에 한해 7%의 경감세율이 적용됨<sup>11)</sup>
  - 대부분의 식료품은 경감세율 대상이며 제빵, 시리얼, 완제품과 같은 가공식품에도 적용됨
    - 다만 피자 등을 집에서 먹는 경우 7%의 경감세율 대상이나 식당에서 먹는 경우 서비스로 간주되어 표준세율이 적용됨
  
- 한편 특정 음료와 고급식품 등은 표준세율을 적용함<sup>12)</sup>
  - 특정음료
    - 음료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코코아, 카푸치노, 차 또는 커피
    - 과일 및 채소주스
    - 유제품 비율이 75% 미만인 혼합우유

10) IBFD, "German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30 September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de\\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de_s_007.html), 검색일자: 2020. 11. 27.

11) 독일 「부가가치세법(UStG)」 제12조 제2항

12) 부가가치세 계산 사이트, "식품에 대한 VAT," <https://www.mehrwertsteuerrechner.de/steuern/mehrwertsteuer-auf-lebensmittel-und-getraenke/>, 검색일자: 2020. 11. 27.

- 미네랄 워터, 알코올 음료

○ 고급식품 등

- 굴, 랍스터, 달팽이, 랍스터, 캐비어 등

〈부표 3〉 독일의 식료품별 경감세율 대상

세율	내용
7%	- 살아있는 동물 • 노새 및 히니 • 사육용 소, 돼지, 양, 염소, 가금류, 토끼, 비둘기, 벌, 그리고 맹인을 위한 훈련된 안내견
	- 육류 및 식용 내장
	- 생선(애완동물 물고기 제외), 갑각류, 연체동물(가시가 있는 바닷가재, 굴, 달팽이 제외)
	- 우유 및 유제품: 새알과 계란, 노른자(껍질이 없는 계란과 노른자 제외), 천연꿀
	- 기타 동물성 상품 • 가축과 가금류의 위장, 뼈
	- 구근, 양파, 괴경, 덩이뿌리, 꽃, 치커리 식물과 뿌리, 버섯균사체
	- 절단된 꽃과 꽃봉오리
	- 꽃이나 꽃봉오리가 없는 식물의 잎
	- 채소, 식물, 뿌리 및 괴경 • 신선 또는 냉장 감자 • 신선 또는 냉장 토마토 • 신선 또는 냉장한 양파, 샐러드, 마늘, 부추 및 기타 알룸 계열의 채소 • 신선 또는 냉장한 양배추, 컬리플라워, 배추 순무, 사보이 및 기타 식용 배추 • 신선 또는 냉장한 샐러드 및 치커리 • 신선 또는 냉장한 당근, 순무, 비트, 솔시라이드, 셀레리악, 무, 기타 유사한 식용 뿌리 • 신선 또는 냉장 오이 • 신선 또는 냉장 채소 • 물 또는 증기로 조리된 채소 또는 냉동 채소 • 즉시 식용할 수 없는 일시적으로 보존된 채소(이산화황, 소금, 기타 일시적 보존물질이 첨가된 물에 담겨 있는 경우) • 건조된 채소(조각으로 자르거나 얇게 썰었는지 여부 불문) • 껍질을 벗기거나, 다지거나, 건조된 채소 • 예루살렘 아티초크
	- 식용 과일 및 견과류
	- 커피, 차, 향신료
	- 시리얼

〈부표 3〉의 계속

세율	내용
	- 제분제품 • 곡물가루 • 곡물펠릿 • 기타 가공곡물의 씨앗, 분쇄, 플레이크
	- 감자전분, 분말, 과립, 알갱이
	- 말린 콩과 식물로 만든 밀가루, 양질의 거친 밀가루 및 분말, 식용 과일로 만든 밀가루, 양질의 거친 밀가루 및 분말
	- 전분
	- 유지종자 및 올레아긴성 과일 및 그 가루
	- 파종용 씨앗, 과일, 포자
	- 로즈마리, 썩, 바질, 마조람, 민트, 세이지, 카모마일, 자보란디 잎
	- 캐롭과 사탕무(신선, 건조, 분쇄 여부 불문), 식품성 제품(볶지 않은 치커리 뿌리 포함), 다른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식용 채소(조류, 해조류, 사탕수수 제외)
	- 곡물의 밀짚과 왕겨, 식용 식물
	- 펙틴
	- 동식물성 유지(가공 여부 불문) • 라드 및 기타 돼지고기 및 가금 지방 • 소, 양, 염소의 지방 • 올레오마가린 • 식물성 지방 및 그 부산물(정제 포함)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 및 그 부산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공정을 거친 것(오팔 왁스 제외) • 마가린,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 식용 혼합물, 조제품, 각종 지방 및 그 부산물(특정 기름 제외)
	- 고기,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캐비어, 조리 또는 보존된 바닷가재, 바닷가재, 굴, 달팽이 제외)
	- 설탕과 설탕 과자
	- 무가당 코코아 분말과 초콜릿 및 코코아가 포함된 기타 식품 준비물
	- 곡물, 밀가루, 전분 또는 우유로 만든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 채소, 과일, 견과류 또는 기타 식물 조제품(과일 및 채소주스 제외)
	- 다양한 식용 준비물
	- 물(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미리 포장된 품목으로 시장에 판매되는 생수, 약수, 수증기 제외)
	- 최소 75%의 유제품을 함유한 음료
	- 식초

## 〈부표 3〉의 계속

세율	내용
	- 식품 산업에서 발생하는 잔류물 및 폐기물 제품 • 식탁용 소금 • 상업용 탄산암모늄 및 기타 탄산암모늄
	- 사카린, D-글루시톨
	- 아세트산
	- 사카린 소듐
	- 동물 또는 식물성 비료
	- 주방용 향수 혼합물
	- 젤라틴
	- 톱밥 등 목재

자료: 독일 「부가가치세법(UStG)」 [부록 2] 1 내지 48 참조하고 저자 재작성

## 6. 에스토니아

- 에스토니아는 부가가치세 세율로 표준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두고 있음<sup>13)</sup>
  - 표준세율은 20%임
  - 경감세율은 9%임
    - 경감세율은 도서 및 교육용 책자(면세 도서 제외), 간행물, 장애인용 특정의약품 및 의료장비, 숙박서비스에 적용됨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식료품은 세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표준세율을 적용함

13) IBFD, “Estonia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0 August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ee\\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ee_s_007.html), 검색일자: 2020. 11. 30.

## 7. 아일랜드

- 아일랜드는 부가가치세 세율로 표준세율, 경감세율, 초경감세율(super reduced rate), 정액세율(flat-rate), 영세율, 면세를 두고 있음<sup>14)</sup>
  - 표준세율은 23%임
    - 코로나19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표준세율을 21%로 경감함
  - 경감세율은 13.5% 또는 9%를 적용함
    - 식료품, 음료, 의약품, 안전용품, 카시트 등은 13.5%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스포츠 시설, 신문 및 정기간행물, 도서 등은 9%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초경감세율은 4.8%로 가축공급에 적용됨
  - 정액세율은 5.4%로 미등록사업자인 농민, 농산물에 적용함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VATCA 2010)」 [부록 3]에 열거된 항목에 한해 영세율, (초)경감세율이 적용됨<sup>15)</sup>
  - 빵 및 베이커리 제품, 과일, 채소 등 대부분의 식료품은 영세율이 적용됨
  - 가축 등은 4.8%의 초경감세율이 적용됨
  - 자판기나 케이터링을 통해 제공되거나 뜨거운 식음료는 9%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케이크 등 밀가루나 계란을 베이스로 한 제품은 13.5%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14) IBFD, “Ireland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31 July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ie\\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ie_s_007.html), 검색일자: 2020. 11. 30.

15) 아일랜드 국세청, “VAT on food and drink, 2020. 10,” pp. 3~4.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dm/value-added-tax/part03-taxable-transactions-goods-ica-services/Goods/goods-food-and-drink.pdf>, 검색일자: 2020. 11. 30.

## 〈부표 4〉 아일랜드의 식료품별 경감세율 대상

세율	구분	내용
영세율	- 식료품	- 빵, 버터, 치즈, 시리얼, 조미료, 밀가루, 과일, 허브, 육류, 우유, 파스타, 파스타 소스, 수프, 향신료, 설탕, 채소(신선 또는 냉동) 등 대부분의 식료품
4.8%	- 가축공급	- 소, 양, 염소, 돼지, 사슴, 식용 또는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말
9%	- 자판기 또는 케이터링 식음료 등	- 식음료를 자판기나 케이터링 등 추가 조리 없이 섭취하기에 적당한 다음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스크림, 냉동 디저트, 냉동 요거트 및 이와 유사한 냉동 제품, 유사 제품을 만들기 위한 혼합물 및 파우더</li> <li>• 곡물로 만든 제품, 곡물로 만든 전분, 돼지고기 스크래칭, 추가 조리 없이 먹을 수 있도록 공급되는 유사 제품</li> <li>• 감자칩, 감자 스틱, 감자 퍼프 및 감자 가루 또는 감자 전분으로 만든 유사 제품, 팝콘, 소금을 넣거나 구운 견과류(껍질 여부 불문)</li> </ul> - 뜨거운 식음료
13.5%	- 케이크 등	- 밀가루나 계란을 베이스로 한 케이크, 크래커, 웨이퍼, 비스킷(초콜릿으로 덮힌 웨이퍼와 비스킷, 초콜릿, 사탕류 제외)
표준세율	- 기타	- 알코올, 생수, 청량음료, 과일 및 채소주스 등 - 아이스크림, 냉동 디저트, 냉동 요거트 및 이와 유사한 냉동 제품, 유사 제품을 만들기 위한 혼합물 및 파우더 - 곡물로 만든 제품, 곡물로 만든 전분, 돼지고기 스크래칭, 추가 조리 없이 먹을 수 있도록 공급되는 유사 제품 - 감자칩, 감자 스틱, 감자 퍼프 및 감자 가루 또는 감자 전분으로 만든 유사 제품, 팝콘, 소금을 넣거나 구운 견과류(껍질 여부 불문) - 초콜릿으로 덮힌 웨이퍼와 비스킷, 초콜릿, 사탕류

자료: 「아일랜드 부가가치세법(VATCA 2010)」 [부록 3] 및 아일랜드 국세청, “VAT on food and drink, 2020. 10,”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dm/value-added-tax/part03-taxable-transactions-goods-ica-services/Goods/goods-food-and-drink.pdf>.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 8. 그리스

□ 그리스는 부가가치세율로 표준세율, (초)경감세율, 영세율, 면세가 있음<sup>16)</sup>

○ 표준세율은 24%임

16) IBFD, “Greece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6 September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gr\\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gr_s_007.html), 검색일자: 2020. 12. 02.

- 경감세율은 13%로 식품, 유아용품 등에 적용됨
  - 초경감세율은 6%로 책, 신문 잡지, 의약품 등에 적용됨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부록 3]에 해당하는 경우 13%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대부분의 식료품은 경감세율 대상임<sup>17)</sup>
    - 식품별 관세코드에 EX가 붙어있는 경우 명시적으로 열거된 상품에 한해 경감세율을 적용하며 관세코드에 EX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범주에 나열된 모든 제품에 대해 경감세율이 적용됨
  - 주스 및 청량음료 등은 표준세율이 적용됨<sup>18)</sup>

〈부표 5〉 그리스의 13% 경감세율 대상 식료품

내용	관세코드(CN CODE)
- 살아있는 말, 당나귀, 노새, 살아있는 소, 돼지, 양, 염소(경마 제외)	- EX 0101, 0102, 0103, 0104
- 살아있는 가금류(오리, 거위, 칠면조 기니새 등)	- 0105
- 식용목적의 살아있는 토끼, 비둘기, 메추라기, 꿩, 자고새, 산토끼 및 기타 살아있는 동물과 새 - 모피산업용 동물 - 꿀벌 - 아카리(살충제를 대신하여 재배에 사용되는 곤충)	- EX 0106
- 육류 및 식용 내장	-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 0208, 0209, 0210
- 생선 및 수생 무척추 동물(신선, 냉장 또는 냉동) - 살아있는 관상어 제외	- EX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0308

17) IBFD, "Greece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7. Annex I: Reduced/Increased Rates(Last Reviewed: 16 September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gr\\_annex\\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gr_annex_1.html), 검색일자: 2021. 1. 5.

18) *Tornos News International Edition*, "Small gains for F&B sector as coffee, soft drinks and juices in Greece retain 24% VAT," 2019. 5. 10., <https://www.tornosnews.gr/en/tourism-businesses/gastronomy/35510-small-gains-for-f-b-sector-as-coffee-soft-drinks-and-juices-in-greece-retain-24-vat.html>, 검색일자: 2021. 1. 5.

## 〈부표 5〉의 계속

내용	관세코드(CN CODE)
- 우유 및 유제품 - 새알 - 천연꿀 - 달리 명시되지 않은 동물 식용 제품	-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0407, 0408, 0409, 0410
- 신선, 냉장, 냉동, 염장 또는 염수, 건조 또는 훈제한 전체 또는 일부의 동물의 내장, 방광 및 위(생선 제외)	- 0504
- 구근, 괴경, 결절 뿌리, 코름, 크라운 및 뿌리 줄기, 휴면, 성장 또는 개화 - CN CODE 1212의 뿌리 이외의 치커리 식물 및 뿌리 - 기타 살아있는 식물(뿌리 포함) - 벼섯 균주	- 0601 및 0602
- 신선 또는 또는 장식용 꽃과 꽃봉오리 - 신선 또는 장식용 잎, 가지 - 신선 또는 장식용 이끼	- EX 0603 and EX 0604
- 식용 채소 및 특정 뿌리와 괴경	- 0701, 0702, 0703, 0704, 0705, 0706, 0707, 0708, 0709, 0710, 0711, 0712, 0713, 0714
-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껍질, 멜론 및 수박	- 0801,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0812, 0813, 0814
- 커피, 차, 마테 및 향신료	- 0901, 0902, 0903, 0904, 0905, 0906, 0907, 0908, 0909, 0910
- 시리얼	-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및 1008
- 제분제품(맥아, 전분, 인슐린, 밀 글루텐 및 기타 전분)	-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EX 1108
- 종자 및 유지, 포자, 각 종 과일	- 1201, 1202,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 신선 또는 건조(절단, 깨짐, 분말 여부 불문)한 세이지브러시, 바질, 카모마일, 야생 마조람, 멜로우, 로즈 멜로우, 페퍼민트, 모든 품종의 스피어민트, 오레가노, 로즈마리, 일반 세이지, 마운틴 티, 디타니, 톨레올 및 버베나	- EX 1211
- 냉장, 냉동 또는 건조(분말 여부 불문)한 메뚜기 콩, 사탕무, 사탕수수 - 달리 명시되지 않은 식용 과일스톤과 알맹이, 기타 채소 제품 (CICHORIUM INTYBUS SATIVUM 품종의 볶지 않은 치커리 뿌리 포함)	- EX 1212

〈부표 5〉의 계속

내용	관세코드(CN CODE)
- 잘게 썰거나, 빵거나, 눌렀거나, 펠렛 형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조리되지 않은 곡물의 낱과 껍질 - 스웨덴, 망골드, 사료 뿌리, 건초, 루체른(알팔파), 클로버, 사인포인, 포리지 케일, 루핀, 베치 및 유사한 포리지 제품	- 1213 및 1214
- 생 매스틱(흰색 여부 불문)	- EX 1301
- 올리브유 및 그 부산물(정제 여부 관계없이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을 것) - 올리브로부터만 얻은 기타 오일 및 그 부산물(정제 여부 관계없이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을 것)	- 1509 및 1510
- 대두유, 팜공유, 해바라기씨유(홍화유), 면실유, 옥수수유, 참기름 및 그 부산물(정제 여부 관계없이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을 것)	- 1507, 1508, EX 1512, EX 1515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및 그 부산물(정제 여부 관계없이 일부 또는 전부가 수소화된 것) - 마가린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 오일, 다른 지방의 부산물 등 식용 혼합물	- EX 1516, 1517
- 준비된 육류,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캐비어 제외)	- 1601, 1602, 1603, EX 1604, 1605
- 설탕 및 설탕이 들어간 과자	- 1701, 1702, 1703, 1704
- 코코아 및 코코아 제품	-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 곡물 기반 제품, 밀가루, 모든 유형의 제분제품 또는 유아 및 어린이의 영양을 위한 제품이 포함된 우유 - 과자	- 1901, 1902, 1903, 1904, 1905
- 채소, 견과류 및 과일 또는 기타 식물 - 과일 및 채소주스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EX 2009
- 커피, 차 또는 마테의 추출물, 에센스 및 농축물 및 커피, 차 또는 마테를 기본으로 한 조제품 - 볶은 치커리 및 기타 볶은 커피 대용품 및 추출물, 에센스 및 그 농축물 - 효모(활성 또는 비활성) - 죽은 기타 단세포 유기체(CN CODE 3002 백신 제외) - 베이킹 파우더 - 소스 및 조제품 - 수프, 국물 및 그 조제품 - 아이스크림(코코아 함유 여부 불문)	- 2101, 2102, EX 2103, EX 2104, 2105

## 〈부표 5〉의 계속

내용	관세코드(CN CODE)
- 설탕, 감미료, 풍미가 첨가되지 않은 물(천연 또는 인공 미네랄 워터 포함)	- EX 2201
- 아세트산에서 얻은 식초 및 식용 대체물	- 2209
- 식품 산업에서 발생하는 잔여물 및 폐기물 - 동물 사료(소매용으로 포장된 개와 고양이 사료 제외)	-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및 EX 2309
- 소금(식용 및 변성 소금 포함) 수용액 또는 방지제 등 첨가물 포함 여부 불문 - 해수	- 2501

자료: 그리스 「부가가치세법」 [부록 3] 제1호 내지 제33호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 9. 스페인

□ 스페인은 부가가치세 세율로 표준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두고 있음<sup>19)</sup>

○ 표준세율은 21%임

○ 경감세율은 4% 또는 10%를 적용함

- 기초 식료품, 도서, 잡지, 의약품, 장애인을 위한 특정 상품 및 서비스는 4%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식음료 등, 동물의약품, 특정 의료장비, 호텔 및 레스토랑 서비스는 10%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LIVA)」 제91조에 열거한 항목에 대해 4% 또는 10%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빵, 우유, 치즈, 달걀, 과일, 채소, 곡류 등 기초식품은 4%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19) IBFD, "Spain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 August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es\\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es_s_007.html), 검색 일자: 2020. 12. 3.

- 그 외 대부분의 식음료는 10%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알코올음료는 표준세율이 적용됨

〈부표 6〉 스페인의 식료품별 경감세율 대상

세율	구분	내용
4%	기초 식품	- 일반 빵(밀가루 외 통밀, 기타 곡물 등으로 만든 빵 포함), 및 냉동 빵 반죽
		- 제빵용 밀가루
		- 모든 동물에서 생산되는 천연, 인증, 저온살균, 농축, 탈지, 멸균, UHT, 증기, 분말 상태의 우유
		- 치즈
		- 달걀
		- 식품 코드 및 규정에 따라 자연식품(natural product)에 해당하는 과일, 채소, 콩류, 곡경, 곡류
10%	식음료 등	- 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식품 코드 및 규정에 따라 그 특성, 용도, 구성 요소, 준비 및 보존 상태로 인해 일반적으로 인간 또는 동물 소비를 위한 물질 또는 제품(원산지 불문)
		- 상기 제품을 얻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물, 채소 및 다른 원산지의 제품과 직접 또는 혼합된 제품
		- 객관적인 특성, 포장, 표시 및 보존 상태로 인해 농업, 임업 또는 축산 활동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통상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다음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 또는 채소의 재생산을 위한 종자 및 물질</li> <li>• 재배나 가축건강을 위한 비료, 유기잔류물, 토양개량제, 제초제, 농약</li> <li>• 농작물용 플라스틱, 과일 보호용 종이봉지</li> </ul>
		- 물(고체상태 포함)
		- 관상용 꽃, 식물, 꽃과 식물의 재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종자, 구근, 뿌리 및 기타 제품들

자료: 스페인 「부가가치세법(LIVA)」 제91조; IBFD, “Spain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7. Annex I: Reduced/Increased Rates (Last Reviewed: 1 August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es\\_annex\\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es_annex_1.html), 검색일자: 2021. 1. 7.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 10. 프랑스

- 프랑스는 부가가치세 세율 관련 표준세율, (초)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두고 있음<sup>20)</sup>
  - 표준세율은 20%임
  - (초)경감세율은 10%, 5.5%, 2.1%임
    - 식음료, 여객운송, 도서와 같은 기본필수품에는 10%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의료기기, 전기 등 특정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5.5%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특정 간행물, 의약품 공급은 2.1%의 초경감세율을 적용함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제278-0 a조 및 제 278 a조에 따라 특정 식품을 제외한 일반 식료품은 5.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식품 제조에 쓰이는 미가공 농수산물은 10%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일반 식료품 및 음료(알코올 음료 제외)는 5.5%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다만 초콜릿이 포함된 가공식품, 마가린, 캐비아 등은 20%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식품 제조용 미가공 농수산물 등은 10%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식품 제조 등을 위한 것으로 사전 처리 없이는 사람이 섭취할 수 없는 미가공 농산물에 대해 10%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다만 사람이 섭취할 목적으로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공 여부(껍질 제거, 건조, 조리 등)에 상관없이 5.5%를 적용함<sup>21)</sup>
    - 가령 사람이 그대로 소비한 감자는 5.5%가 적용되는 반면, 식품 산업에서 사용되는 전분 제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종의 감자는 10%가 적용됨

20) IBFD, “France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 July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fr\\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fr_s_007.html), 검색일자: 2020. 12. 7.

21) 프랑스 공공재정 총국, “TVA-Liquidation-Taux réduits - Produits et sous-produits d'origine agricole, de la pêche, de la pisciculture et de l'aviculture,” <https://bofip.impots.gouv.fr/bofip/273-PGP.html/identifiant=BOI-TVA-LIQ-30-10-20-20160302>, 검색일자: 2021. 1. 7.

〈부표 7〉 프랑스의 식료품별 경감세율 대상

세율	내용
5.5%	- 물 및 음료(알코올 제외)
	- 식료품 - 다만 과자, 초콜릿 또는 코코아를 포함한 모든 가공식품과 마가린 및 식물성 지방, 캐비어는 표준세율을 적용함(초콜릿 가공식품 중 초콜릿, 밀크 쿠키 초콜릿, 초콜릿 과자, 초콜릿 콩, 초콜릿 버터는 5.5% 적용)
10%	- 가공되지 않은 농업, 어업, 양식업, 양계업 생산물로서 일반적으로 식품 준비 또는 농업에 사용되는 제품
	- 장작, 임업에서 생산되는 난방용 목재, 난방용 칩핑, 가공되지 않은 원예 및 장식 화훼
	- 식품에 생산을 위해 사육되는 동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 복합사료, 첨가물 - 특정 농업용 제품

자료: 프랑스 「부가가치세법(CGI)」 제278-0 a조 및 제278 a조

## 11. 크로아티아

- 크로아티아는 부가가치세 세율 관련 표준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두고 있음<sup>22)</sup>
  - 표준세율은 25%임
  - 경감세율은 5% 또는 13%임
    - 빵과 우유, 교육서적, 과학잡지, 의약품, 의료장비, 영화티켓은 5%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농수산물, 정기간행물, 전기공급 등은 13%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Porez na dodanu vrijednost, PDV)」 제38조에 열거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5% 또는 13%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빵과 우유(초콜릿 우유 및 기타 유제품 등 제외)는 5%가 적용됨

22) IBFD, “Croatia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 July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hr\\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hr_s_007.html), 검색일자: 2021. 1. 7.

- 유아용 시리얼 및 신선, 냉장, 건조한 식료품 등은 13%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부표 8〉 크로아티아의 식료품별 경감세율 대상

세율	내용
5%	- 모든 종류의 빵
	- 모든 종류의 유유(소, 양, 염소) 신선, 저온살균, 균질화, 농축(신우유, 요구르트, 케피어, 초콜릿 우유 및 기타 유제품 제외)
13%	- 식물성 또는 동물성 식용유 및 지방
	- 유아용 시리얼로 만든 가공 식품
	- 물(시판용 생수 제외)
	- 묘목과 씨앗
	- 비료, 살충제 및 기타 농약
	- 동물용 식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애완용 사료 제외)
	- 살아있는 동물의 공급(소, 돼지, 양, 염소, 말, 당나귀, 가금류, 코니 및 토끼)
	- 도축한 동물(소, 돼지, 양, 염소, 말, 당나귀, 코니 및 토끼)을 신선하거나 냉장된 식용 가능한 제품
	- 신선 또는 냉장 소시지 및 기타 유사 제품, 도축된 동물 또는 혈액에서 나온 육류 제품
	- 활어 공급
	- 신선하거나 냉장된 생선,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의 공급
	- 신선하거나 냉장된 계(가재, 랍스터, 새우)
	- 신선하거나 냉장된 채소, 뿌리 및 괴경(레디컬 건조 채소 포함)
- 신선하고 말린 과일과 견과류	
- 신선한 가금류 알	

자료: 크로아티아 「부가가치세법(ZPDV)」 제38조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 12. 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부가가치세 세율로 표준세율, 경감세율, (초)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두고 있음<sup>23)</sup>

23) IBFD, "Ital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30 June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it\\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it_s_007.html), 검색

- 표준세율은 25%임<sup>24)</sup>
  - 경감세율은 12%이며 초경감세율은 4% 또는 5%임
    - 경감세율 또는 초경감세율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부록 A] Parte II 및 Parte II-bis 에 명시되어 있음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식품품은 「부가가치세법」(L'imposta sul valore aggiunto, IVA)에 명시된 것에 한해 식품 종류에 따라 4%, 5%, 10%의 (초)경감세율이 적용됨
- 우유, 버터, 빵, 곡류, 과일, 채소 등은 기본필수품으로 보아 4%의 초경감세율이 적용됨
  - 바질, 로즈마리, 신선·냉장 트러플 등 특정 식물은 5%의 초경감세율이 적용됨
  - 육류, 생선, 가금류, 가당우유, 요거트, 계란, 꿀 등은 10%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부표 9〉 이탈리아의 식품품별 경감세율 대상

세율	내용
4%	- 인간 소비를 위한 소매용으로 「보건법」에 의해 저온살균 또는 기타 처리된 농축되거나 가당되지 않은 신선한 우유
	- 버터, 치즈 및 유제품(HS 코드 04.03-04.04)
	- 트러플을 제외한 채소(신선, 냉동, 임시 보존을 위해 소금물 또는 유황물에 담근 상태로 제공하거나 일시적 보존을 위한 물질을 첨가한 채소 및 건조, 탈수, 증발, 절단한 채소(HS 코드 ex 07.01-ex 07.03-ex 07.04)
	- 채소 및 식용 식물(조리되거나 냉동 또는 급속 냉동된 채소 포함)(HS 코드 07.02)
	- 건조하거나 껍질을 벗긴 콩과 채소(껍질을 벗기거나 쪄개짐 여부 불문)(HS 코드 07.05)
	- 식용 과일(신선, 건조, 임시 보존 한 것)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 조리되거나 냉장 또는 급속 냉동된 과일(HS 코드 08.01 ~ 08.03-ex 08.04-08.05 ~ 08.12)

색일자: 2020. 1. 7.

24) 표준세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2%가 적용되며 2021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각각 25%, 26.5%로 인상됨. 경감세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가 적용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는 12%로 인상됨(IBFD, "Ital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30 June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it\\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it_s_007.html), 검색일자: 2020. 1. 7.)

## 〈부표 9〉의 계속

세율	내용
	- 밀, 호밀, 옥수수, 쌀, 보리(파종용 제외) 귀리, 메밀, 기장, 카나리아 종자, 수수 및 기타 가축용 곡물(HS Code 10.01, 10.02, ex 10.03, ex 10.04, 10.05, ex 10.06 및 ex 10.07, ex 21.07.02)
	- 밀, 옥수수 및 호밀, 보리 가루, 귀리 가루 및 가축용으로 사용되는 기타 곡류(HS 코드 ex 11.01~ex 11.02)
	- 깨지거나 으갠 밀, 옥수수, 호밀 및 보리, 쌀, 귀리 및 가축용으로 사용되는 기타 곡류(HS Code ex 10.06 및 ex 11.02)
	- 기름 추출을 위한 옥수수 종자(HS Code ex 11.02 G II)
	- 기름 추출 목적의 기름진 씨앗과 과일(아마씨, 피마자 및 분쇄된 것 제외)(HS Code ex 12.01)
4%	- 올리브유, 식품에 사용하기 위해 직접 정제하는 원료를 포함하여 인간 또는 동물 소비용 식물성 기름(HS Code ex 15.07)
	- 동물성 또는 식물성 마가린(HS Code ex 15.13)
	- 파스타, 크래커, 비스킷, 빵, 씨 비스킷, 일반 베이커리 제품(법 N° 580 Title III에서 허용하는 성분 및 물질이 첨가된 것으로 설탕, 꿀, 달걀, 지방, 치즈가 첨가되지 않은 제품 포함)
	- 껍질을 벗긴 토마토와 토마토 퓨레; 소금물에 담근 올리브(HS Code ex 20.02)
	- 곡물 및 콩류, 제분 또는 기타 가공에서 발생하는 밀기울, 샤프트 및 기타 잔류물(HS 코드 23.02)
	- 1984년 10월 19일 법률 N° 748에 따른 비료 등
	- 식물성 사료, 곡물, 밀가루, 설탕이 첨가된 사료, 이 표에 언급된 곡물이 50%를 초과하는 단순 복합 사료
5%	- 신선한 바질, 로즈마리 및 세이지, 가지 또는 껍질을 벗긴 오레가노, 식물 상태의 바질, 로즈마리 및 세이지(HS Code ex 12.07)
	- 신선하거나 냉장된 트러플
	- 식용 목적의 살아있는 말, 당나귀, 노새 및 히니(HS Code 01.01)
	- 버팔로, 돼지, 양 및 염소를 포함한 소 종류의 살아있는 동물(HS 코드 01.02; 01.03; 01.04)
	- 말, 당나귀, 노새, 소(버팔로 종류 포함), 돼지, 양, 염소 등 신선, 냉장, 냉동, 염장 또는 염수, 건조 또는 훈제한 동물의 육류 및 식용 부분(HS 코드 ex 02.01-ex 02.06 )
	- 살아있는 가금류, 신선 또는 냉동한 도축 가금류(HS 코드 01.05-ex 02.02)
10%	- 신선, 냉장, 염장, 염수, 건조 또는 훈제, 냉동 또는 급속 냉동한 육류, 내장 및 그 일부(HS 코드 ex 02.02~02.03)
	- 사육용 토끼, 비둘기, 산토끼, 자고새, 꿩, 개구리 및 기타 식용 동물
	- 신선, 냉장, 염장, 염수, 건조 또는 훈제한 육류, 내장 및 그 일부
	- 꿀벌 및 누에
	- 생선(생사 불문) 냉장, 냉동, 급속 냉동된 생선(HS 코드 ex 01.06, ex 02.04, ex 02.06 및 ex 03.01)

〈부표 9〉의 계속

세율	내용
10%	- 육류, 내장 및 일부, 식용, 냉동 또는 급속 냉동된 사육용 토끼, 비둘기, 산토끼, 자고새 및 평(HS 코드 ex 02.04)
	- 압축 또는 녹이지 않은 가금류 지방: 신선, 냉장, 염장, 염수, 건조, 훈제, 냉동, 급속 냉동한 가금류 지방 포함(HS 코드 ex 02.05)
	- 라드: 압축 또는 녹이지 않은 라드, 신선, 냉장, 냉동 또는 급속 냉동, 염장 또는 염수, 건조 또는 훈제한 라드 포함(HS 코드 ex 02.05)
	- 생선(살아있거나 죽은 생선): 냉장, 냉동 또는 급속 냉동, 염장, 염수, 건조 또는 훈제 포함(HS 코드 ex 03.01~03.02)
	- 갑각류 및 연체동물(껍질 분리 여부 불문): 신선, 냉장, 냉동 또는 급속 냉동, 건조, 염장, 염수한 갑각류 및 연체동물 포함(랍스터, 굴 제외), 물에 삶거나 쪄낸 갑각류 포함(랍스터 제외)(HS Code ex 03.03)
	- 요거트, 케피르, 신선한 우유, 응고된 우유, 유청, 버터밀크 및 기타 유형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우유(HS Code ex 04.01)
	- 보존, 농축 또는 가당 우유(HS Code ex. 04.02)
	- 보존 처리하거나 농축 및 가당하거나 하지 않은 생크림(HS Code ex 04.01~ex 04.02)
	- 신선 또는 보존 처리된 껍질이 있는 새의 알(HS Code ex 04.05)
	-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조 또는 보존 처리하거나, 가당하거나 하지 않은 새의 알과 노른자(HS Code 04.05)
	- 천연꿀(vide. 04.06)
	- 인간 또는 동물 소비 목적의 동물의 내장, 방광 및 위의 일부 또는 전체(생선 제외)(HS Code ex 05.04)
	- 동물 사료용 탈지, 산성화 또는 탈젤라틴화된 생뽕 및 그 분말 및 폐기물(HS Code ex 05.08)
	- 달리 명칭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동물 제품(힘줄, 신경, 기타 유사한 피부 폐기물 제외)(HS 코드 ex 05.15)
	- 휴면, 성장 개화 상태의 구근, 괴경, 괴근, 밀레트 및 뿌리 줄기, 기타 식물, 생뿌리(꽃다발 또는 장식을 위한 절단 및 접목, 꽃과 꽃 봉오리 절단, 신선한 잎, 가지, 식물의 기타 부분, 허브, 이끼 등 포함)(HS 코드 ex 06.01~06.02. ex 06.03~06.04)
	- 소금물이나 유황물에 담그거나 일시적 보존을 위해 다른 물질을 첨가하거나 건조, 냉동시킨 트러플(즉석식품 제외)
	- 채소 및 식용 식물(분쇄 또는 가루를 제외하고 가공되지 않은 것), 카사바 뿌리, 다로우 뿌리 및 살렘, 예루살렘 아티초크, 고구마 및 전분 또는 이눌린 함량이 높은 이와 유사한 뿌리 및 괴경(말리거나 자른 것 포함), 사노피스(HS 코드 ex 07.04 e 07.06)
- 포도와인(HS Code ex 08.04)	
- 감귤류 및 멜론의 껍질(냉동 제외): 소금물이나 유황물에 담그거나 일시적 보존을 위해 다른 물질을 첨가하거나 건조시킨 것(HS 코드 ex 08.13)	

## 〈부표 9〉의 계속

세율	내용
	- 차, 메이트(HS 코드 09.02~09.03)
	- 향신료(HS 코드 09.04에서 09.10까지)
	- 가축용이 아닌 파종용 보리, 귀리, 메밀, 기장, 카나리아 종자, 수수 및 기타 곡물(HS Code ex 10.03, ex 10.04 및 ex 10.07)
	- 가축용이 아닌 귀리 및 기타 곡물로 된 식사(HS Code ex 11.01)
	- 보리, 귀리 및 기타 곡물의 가루, 식사 및 세몰리나: 껍질을 벗기거나 연마하거나 얇게 눌린 곡물, 곡물의 배아(분쇄 여부 불문)(HS Code ex 11.02)
	- 가축용이 아닌 부서지거나 으갠 쌀, 귀리, 기타 곡물(HS Code ex 10.06 및 ex 11.02)
	- 건조한 콩과에 속하는 채소 또는 과일
	- 사교 및 뿌리와 괴경의 가루 및 세몰리나
	- 밀가루, 세몰리나, 감자 플레이크(HS 코드 11.04~11.05)
	- 맥아(로스팅 포함)(HS Code 11.07)
	- 전분; 이눌린(HS 코드 11.08)
	- 글루텐 및 글루텐 가루(로스팅 포함)(HS Code 11.09~ex 23.03)
	- 아마씨 및 피마자 씨앗; 으갠 것을 제외한 기름을 추출하지 않은 기타 유성 종자 및 과일 (HS Code ex 12.01)
	- 겨자 가루를 제외한 기름을 추출하지 않은 유성 종자 및 과일 가루(HS 코드 12.02)
10%	- 파종용 종자, 과일 및 포자(HS 코드 12.03)
	- 신선 또는 건조한 사탕무(HS Code ex 12.04)
	- 홉 콘(HS Code. ex 12.06)
	- 신선 또는 건조한 치커리 뿌리, 신선 또는 건조한 메뚜기 콩, 기타 명시되지 않은 인간의 소비에 주로 사용되는 과일 및 채소 제품(HS 코드 ex 12.08)
	- 미가공 또는 자른 질과 곡물의 껍질(HS Code 12.09)
	- 사료용 비트, 콜시드, 사료용 뿌리, 건초, 알팔파, 새싹포인, 클로버, 양배추, 포리지, 루핀, 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 제품(HS 코드 12.10)
	- 채소 및 홉 추출물, 만나(HS Code ex 13.03)
	- 해초(HS 코드 ex 14.05)
	- 라드 및 기타 돼지지방(압축 또는 녹임), 거위 지방 및 기타 가금류 지방(압축 또는 녹임)(HS Code ex 15.01)
	- 렌더링되지 않거나 녹인 소, 양 및 염소의 지방(인간 또는 동물 소비를 위한 “프리미어 jus”로 알려진 지방 포함)(HS Code ex 15.02)
	- 인간 또는 동물 소비를 위한 유화, 혼합, 기타 가공되지 않은 라드 스테아린, 올레오스테아린, 라드오일, 올레오마기린(HS Code ex 15.03)
	- 인간 또는 동물 소비를 위한 어류 및 해양 포유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 여부 불문)(HS Code ex 15.04)

〈부표 9〉의 계속

세율	내용
10%	- 동물 영양을 위한 기타 동물성 지방 및 오일; 인간 또는 동물 소비용 식물성 오일(HS 코드 ex 15.06~ex 15.07)
	- 인간 또는 동물 소비를 위해 가공되지 않은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수소화되고 다른 공정에 의해 고형화 또는 경화된 동물 또는 식물성 기름 및 지방(HS 코드 ex 15.12)
	- 모조 라드 및 기타 준비된 식용 지방(HS Code ex 15.13)
	- 생 밀랍(HS Code ex 15.15)
	- 소시지, 살라미 및 기타 육류, 내장 또는 피(HS 코드 16.01)
	- 거위 또는 오리의 간 및 야생 동물의 것 이외의 기타 준비되고 보존 처리된 육류 또는 내장(HS 코드 ex 16.02)
	- 육류 및 생선 추출물과 그 즙(HS Code 16.03)
	- 캐비어 및 그 대응품을 제외한 준비되거나 보존 처리된 생선, 갑각류 및 연체동물(고환 포함), 준비되거나 보존 처리된 랍스터, 가재 및 굴 제외(HS 코드 ex 16.04~16.05)
	- 향이나 색을 첨가하지 않은 고형 사탕수수 및 사탕무(HS 코드 ex 17.01)
	- 향이나 색을 첨가하지 않은 기타 고형 사탕; 향이나 색을 첨가하지 않은 설탕 시럽; 인공 꿀(천연꿀 혼합 여부 불문); 인간 또는 동물 소비를 위한 캐러멜 설탕 및 당밀(HS Code ex 17.02)
	- 향이나 색을 첨가하지 않은 인간 또는 동물 소비를 위한 당밀(HS Code ex 17.03)
	- 종이, 판지, 플라스틱, 주석, 알루미늄 또는 다용도 유리와 같은 저렴한 팩에 담긴 코코아(과자, 껌 캔디, 로렌즈, 누가 등)가 포함되지 않은 설탕 기반 제품(HS 코드 17.04)
	- 무가당 코코아 가루(HS 코드 18.05)
	- 종이, 판지, 플라스틱, 주석, 알루미늄 또는 다용도 유리와 같은 저렴한 팩에 담긴 코코아를 함유한 초콜릿 및 기타 가공식품(HS 코드 ex 18.06)
	- 맥아 추출물; 코코아 중량 기준 50% 미만의 코코아를 함유한 유아용 식품, 식이요법 또는 조리 목적의 밀가루, 세몰리나, 전분 또는 맥아 추출물(HS 코드 19.02)
	- 타피오카(감자 전분 포함)(HS 코드 19.04)
	- 시리얼 제품; 팝핑 또는 토스트 한 것: 팝핑 쌀, 콘플레이크 등
	- 페스트리, 비스킷, 케이크,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 함량 무관)(HS 코드 19.08)
	- 식초 또는 아세트산으로 준비하거나 보존 처리한 채소 및 과일(소금, 향신료, 스위트플, 설탕 첨가 여부 불문)(HS 코드 20.01)
	- 트러플을 제외한 식초 또는 아세트산 없이 준비되거나 보존 처리된 채소(HS 코드 ex 20.02)
	- 설탕이 첨가된 냉동 과일(HS 코드 20.03)
	- 설탕으로 조리하거나 설탕에 절인 과일, 과일 껍질, 식물 및 식물의 일부분(HS 코드 20.04)
	- 설탕 첨가 여부에 관계없이 조리한 과일 퓨레 및 과일 페이스트, 과일 젤리, 마멀레이드(HS 코드 20.05)

## 〈부표 9〉의 계속

세율	내용
	- 설탕 첨가 여부에 관계없이 달리 가공하거나 보존 처리한 과일(HS 코드 ex 20.06)
	- 볶은 치커리 및 기타 볶은 커피 대용품 및 그 추출물; 커피, 차, 마테 및 카모마일의 에센스 또는 추출물; 추출물 또는 에센스를 기반으로 한 가공품(HS 코드 21.02~ex 30.03)
	- 겨자 가루 및 트리티드 겨자(HS 코드 21.03)
	- 소스, 복합 조미료, 가공 수프, 채소수프 및 육수, 냉동 건조 수프, 채소 및 육수, 복합 균질 가공식품(HS 코드 21.04-21.05)
	- 활성 또는 비활성 천연 효모와 베이킹파우더(HS 코드 21.06)
	-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다른 곳에 포함되지 않은 가공식품(HS Code ex 21.07), 모든 종류의 시럽 제외
	- 물, 미네랄 워터(HS Code ex 22.01)
	- 맥주(HS 코드 22.03)
	- 와인 식초; 식용 비와인 식초 및 그 대체품(HS Code 22.10)
10%	- 인간이 섭취하기 부적합하여 동물만 섭취하는 육류, 내장, 생선, 갑각류, 연체 동물의 밀가루 및 분말. 인간 또는 동물 소비용 기름(HS Code ex 23.01)
	- 사탕무 펄프, 사탕수수 및 설탕 제조 폐기물; 알코올 양조 및 증류로 인한 잔여물; 전분 제조 잔여물 및 이와 유사한 잔여물(HS 코드 ex 23.03)
	- 양금을 제외한 올리브 오일에서 추출한 올리브 케이크, 올리브 잔여물 및 기타 잔여물, 유성 종자 및 과일에서 추출한 오일 케이크 및 기타 잔여물(HS 코드 23.04)
	- 와인 리, 생 타르타르(HS 코드 23.05)
	- 다른 곳에서 지정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동물 식품에 사용되는 식물성 제품(HS 코드 23.06)
	- 당밀 사료; 동물 사료에 사용되는 기타 가공식품(소매용 개 또는 고양이 사료를 제외)(HS 코드 ex 23.07)
	- 미가공 또는 생담배; 담배 쓰레기(HS Code 24.01)
	- 인간 또는 동물 소비용 레시틴(HS Code ex 29.24)
	- 통나무, 빌렛, 잔가지 또는 호모, 톱밥을 포함한 목재 폐기물(펠릿 제외)(HS 코드 44.01)

자료: 이탈리아 「부가가치세법(VAT Act)」 Tabella A Parte II and Parte II-bis VAT Act, abella A Parte III VAT Act)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 13. 키프로스

- 키프로스는 부가가치세 세율로 표준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두고 있음<sup>25)</sup>
  - 표준세율은 19%임
  - 경감세율은 5% 또는 9%의 세율이 적용됨
    - 「부가가치세법」 [부록 5]에 명시된 식음료, 살아있는 동물, 책, 장애인용 물품 등은 5%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부가가치세법」 [부록 12]에 명시된 수하물 운송,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서비스 등은 9%가 적용됨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식음료는 5%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식음료는 가공, 배송, 기타 서비스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됨<sup>26)</sup>
    - 다만 주류, 맥주, 와인, 탄산음료 는 경감세율 대상에서 제외됨

〈부표 10〉 키프로스의 5% 경감세율 대상

세율	내용
5%	- 새와 물고기를 포함한 동물용 사료
	- 동물 사료를 보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식품 및 동물 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또는 기타 식물 번식 수단
	- 식품 생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살아있는 동물
	- 물
	- 식음료(주류, 맥주, 와인, 탄산음료를 제외)

자료: 「부가가치세법(VAT Act)」 [부록 5]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25) IBFD, "Cyprus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 October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cy\\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cy_s_007.html), 검색일자: 2021. 1. 11.

26) 「부가가치세법(VAT Act)」 schedule 5 (7)

## 14. 라트비아

- 라트비아는 부가가치세 세율로 표준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두고 있음<sup>27)</sup>
  - 표준세율은 21%임
  - 경감세율은 5% 또는 12%가 적용됨
    - 특정 과일 및 채소는 5%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의료용품, 유아용품, 신문, 잡지 등은 12%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식료품은 일반적으로 표준세율이 적용되나 특정 식품에 한해 5% 또는 12%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신선한 특정 과일, 딸기, 채소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5%의 경감세율이 적용됨<sup>28)29)</sup>
    - 세척, 껍질 벗기기, 절단, 포장된 경우에 한하며 가열, 냉동, 염장, 건조와 같이 가공된 경우는 경감세율 대상에서 제외됨
  - 유아용 식품은 12%의 경감세율을 적용함<sup>30)</sup>

27) IBFD, “Latvia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 July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lv\\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lv_s_007.html), 검색일자: 2021. 1. 11.

28) section 42(16) of the VATL

29) 라트비아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13일까지 신선한 특정 과일, 딸기, 채소에 대해 5%의 경감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으나 농업 부분의 발전과 신선 과일의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Business World Magazine*, “Latvia: Saeima maintains reduced VAT for fruits, berries and vegetables,” <https://smiraponitke.com/2020/11/25/latvia-saeima-maintains-reduced-vat-for-fruits-berries-and-vegetables.html>, 검색일자: 2021. 1. 13.)

30) section 42(3) of the VATL

〈부표 11〉 라트비아의 5% 경감세율 대상 과일, 딸기, 채소

세율	내용
	- 사과
	- 애플베리
	- 라즈베리
	- 카우베리
	- 배
	- 당근
	- 퀴네스
	- 목련 열매
	- 스위트 콘
	- 상추 및 치커리
	- 크랜베리(대형 크랜베리 포함)
	- 구스베리
	- 회향
	- 비트 뿌리
	- 순무
	-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칼리플라워 및 이와 유사한 식용 브라시카
5%	- 허브(딜, 파슬리 잎, 바질, 고수(긴자), 페퍼민트 등 포함)
	- 오이
	- 비브르눔 열매
	- 붉은 건포도
	- 여름 호박(애호박 포함)
	- 스웨덴
	- 감자
	- 블랙베리
	- 로간베리
	- 콜라비
	- 커런트 포도
	- 하이 부시 블루베리
	- 마늘
	- 마늘, 쪽파
	- 호박
	- 체리
	- 클라우드 베리

## 〈부표 11〉의 계속

세율	내용
	- 차드
	- 고추냉이
	- 블루베리
	- 검은 무
	- 산딸기
	- 파스닙
	- 매로우
	- 파슬리 뿌리
	- 애쉬베리
	- 자두
	- 엘더베리
	- 발 콩
	- 콩
	- 부추
	- 대황
	- 무
	- 샐러드 채소(로메인 상추, 오크잎 상추, 루콜라, 엔다이브, 미즈나, 새싹 포함)
	- 허니슈클베리
	- 셀러리(뿌리, 줄기, 잎)
	- 양파와 샬롯
	- 파
	- 소렐
	- 씨벽톤베리
	- 아스파라거스
	- 시금치
	- 토마토
	- 예루살렘 아티초크
	- 순무
	- 검은 건포도
	- 딸기
	- 완두콩

자료: 「부가가치세법」 [부록], “Fruits, Berries and Vegetables to which the Reduced Tax Rate in the Amount of Five Per Cent is Applied”

## 15. 리투아니아

- 리투아니아는 부가가치세 세율로 표준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둠<sup>31)</sup>
  - 표준세율은 21%이며 경감세율은 5% 또는 9%를 적용함
    - 약품, 신문·잡지, 장애인을 위한 기기 등에는 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며 주거용 열에너지 공급, 책이나 비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정보성 출판물, 숙박서비스 등에는 9%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식품품의 세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표준세율을 적용함
  - 단 리투아니아 영토를 떠나는 군함, 선박과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또는 승무원이 사용하는 상품(식품품 등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함

## 16. 룩셈부르크

- 룩셈부르크는 부가가치세율로 표준세율, (초)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두고 있음<sup>32)</sup>
  - 표준세율은 17%임
  - 3%의 초경감세율과 8%, 14%의 경감세율을 두고 있음
    - 식품품(food product), 책·신문, 약품, 식당과 케이터링 서비스, 교통 등에 대해서는 3%의 초경감세율을 적용함
    - 가스, 전력, 열에너지, 난방용 목재, 살아있는 나무와 기타 꽃 원예상품, 청소업, 미용 서비스, 적격 유기농업 용도라고 인정받은 작물보호상품에 대해서는

31) IBFD, "Lithuania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 November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lt\\_s\\_007.html#evat\\_lt\\_s\\_7.4.](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lt_s_007.html#evat_lt_s_7.4.), 검색일자: 2020. 11. 30.

32) IBFD, "Luxembourg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31 July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lu\\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lu_s_007.html), 검색일자: 2020. 11. 25.

8%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고체가연성 광물, 세정제, 인쇄된 광고자료·상업카탈로그 등에 대해서는 14%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사람·동물 섭취용 식료품(food product)은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 [부록 B]에 따라 3%의 초경감세율 적용대상임

## 17. 헝가리

□ 헝가리는 부가가치세 세율로 표준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두고 있음<sup>33)</sup>

○ 표준세율은 27%임

○ 경감세율로는 5%와 18%의 두 가지가 있음

- 사람용 약품, 특정 식료품, 의료용품, 책·신문 등에 대해서는 5%를 적용함

- 공개적인 문화축제, 특정 식료품에 대해서는 18%를 적용함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특정 기본식료품에 한해 5% 또는 18%의 경감세율로 과세하며, 그 외 모든 식료품은 27%의 표준세율로 과세함

○ 5%의 세율은 「부가가치세법」 [부록 1] Schedule 3에 열거된 일부 기본식료품(육류·달걀·생선 등)에 대해 적용함

○ 18%의 세율은 「부가가치세법」 [부록 1] Schedule 3A에 열거된 일부 기본식료품(유제품·곡물 등)에 대해 적용함

33) IBFD, "Hungar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 July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hu\\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hu_s_007.html), 검색일자: 2020. 12. 3.

〈부표 12〉 헝가리의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세율	내용
5%	- 음식 보조제, 특별한 의료용 음식, 모유 대체·보충물(식료품)
	- 살아있는 돼지 또는 신선·냉장·냉동 상태인 돼지의 고기(번식용, 사육용 등) <sup>1)</sup>
	- 살아있는 소, 양, 염소 또는 신선·냉장·냉동 상태인 돼지의 고기(절단된 것과 절단되지 않은 것, 뼈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등을 포함함) <sup>1)</sup>
	- 신선·냉장·냉동 상태인 가금류의 고기와 식용내장
	- 신선 상태인 조류의 알
	- 신선우유, 초고온 처리(UHT)된 우유, 멸균(ESL)우유(면세대상인 모유는 제외함) <sup>2)</sup>
	- 살아있는 생선으로 인간이 섭취하기에 적합한 것(관상용은 제외함)
18%	- 신선·냉장·냉동 상태인 생선의 내장과 살(저렴한지 여부는 따지지 않음)로 인간이 섭취하기에 적합한 것(단 상어고기는 제외함)
	- 사육 돼지의 식용 내장
	- 우유(면세대상인 모유 또는 5% 적용대상인 우유가 아닌 것)
	- 유제품
표준세율	- 가향 우유
	- 곡물·밀가루·탄수화물·우유로 만든 제품(5% 적용대상인 모유 대체·보충물은 제외함)
표준세율	- 그 외

주: 1) 동물의 종류를 다시 세분하고 있으나 모두 5%의 경감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상세 설명은 생략함. 예를 들어서 돼지의 경우 중량이 50kg 미만인지 여부, 새끼를 한 번 이상 낳은 암돼지로서 중량이 160kg인 것 등등을 세분하고 있음

2) 초고온 처리된 우유, 멸균우유는 2018년까지 18%로 과세하였으나 2019년부터 5%의 세율로 과세함

자료: 헝가리 「부가가치세법」 [부록 1] Schedule 3, Schedule No.3A과 European Commission, 2020, p. 115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18. 몰타

□ 몰타는 부가가치세 세율로 표준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둠<sup>34)</sup>

○ 표준세율은 18%임

34) IBFD, "Malta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29 February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mt\\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mt_s_007.html), 검색일자: 2020. 12. 29.

- 동물 섭취용 식료품은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표준세율을 적용할 것임
  - 경감세율은 7%와 5%의 두 가지가 있는데 숙박, 스포츠시설 등에 대해 7%의 세율을 적용하며 과자류 및 이와 유사한 것, 의료용 장치, 인쇄물·서적, 장애인 전용 용품, 미술품 등에 대해 5%의 세율을 적용함<sup>35)</sup>
  - 영세율은 수출, 사람 섭취용 식료품(food for human consumption, excluding food supplied in the course of catering), 운수 용역 등에 대해 적용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등에 대해 적용함
- 식료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자류는 5%의 경감세율로 과세하며, 즉시 섭취하는(케이atering 과정에서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는) 식료품은 18%의 표준세율로 과세함
- 과자류(confectionery)는 「부가가치세법」 Article 19(2)의 Eighth Schedule 표 제3번째 열에 열거된 관세(Combined Nomenclature, CN) 코드에 속하는 식료품을 의미함<sup>36)</sup>
  - 케이atering 과정에서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는 식료품이란 공급된 장소에서 즉시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식사 또는 스낵, 액상형태로 공급된 밀크쉐이크·차·커피·초콜렛, 아이스크림 또는 아이스크림이 포함된 제품(단 1개당 350g 이상 단위로 판매된 것은 제외함), 요구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의미함<sup>37)38)</sup>

35) IBFD, “Malta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7. Annex I: Reduced/Increased Rates (Last Reviewed: 29 February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mt\\_annex\\_1#evat\\_mt\\_annex\\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mt_annex_1#evat_mt_annex_1), 검색일자: 2020. 12. 29.

36) 다음과 같은 관세 코드(CN code)에 속하는 식료품을 과자류로 간주함(IBFD, “Malta - VAT Law 1998 (Effective date: 1 January 2020, Last reviewed: 26 March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vatleg\\_mt\\_01\\_eng\\_\\_td2\\_tts10#vatleg\\_mt\\_01\\_eng\\_\\_td2\\_s176](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vatleg_mt_01_eng__td2_tts10#vatleg_mt_01_eng__td2_s176), 검색일자: 2020. 12. 29.) (a) 1207.30.90 and 1207.99.91; (b) 1302.11.00; 1302.14.00; 1302.19.05; 1302.19.30; 1302.19.91; 1302.19.98; 1302.20.10 and 1302.20.90; (c) 1503.00.19; 1517.90.93; 1520.00.00 and 1522.00.10; (d) 1702.90.10; 1704.10.11; 1704.10.19; 1704.10.91; 1704.10.99; 1704.90.10; 1704.90.55; 1704.90.61; 90.61704.5; 1704.90.71; 1704.90.75 and 1704.90.81; (e) 2006.00.10 and 2009; (f) family packs as defined in item 2(b) of Oart Five of the Fifth Schedule to the Act falling under CN codes 2105.00.10; 2105.00.91 and 2105.00.99; (g) 2501.00.10; (h) 3302.10.21.

37) 실제로 공급된 장소에서 식료품을 즉시 전부 섭취하였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음. 몰타 「부가가치세법」

- 식사 또는 스낵이란 따뜻하거나 차가운 요리(에피타이저, 디저트를 포함함), 샌드위치·토스트·감자칩·소세지롤·피자 등과 같은 스낵류, 비스킷·케이크·과자 (단 제조업자가 패키지로 밀봉했고 밀봉된 상태로 판매됐으며 1개당 500g 이상으로 판매된 것은 제외함)를 포함함

## 19. 네덜란드

- 네덜란드에서는 부가가치세 세율로 표준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둠<sup>39)</sup>
  - 표준세율은 21%임
  - 경감세율은 2020년 현재 9%이며 식품품, 약품, 서적, 신문, 잡지 등에 적용함
    - 기존에는 경감세율이 6%였으나 2019년부터 9%로 인상됨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사람 섭취용 식품품에 대해서는 9%의 경감세율을 적용함<sup>40)</sup>
  - 일반적으로 사람이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식품품, 동물 섭취용 식품품(예를 들어 낚시 미끼용으로 판매되는 빙어) 등은 21%의 표준세율로 과세함

---

Part 5. 2.(IBFD, “Malta - VAT Law 1998 (Effective date: 1 January 2020, Last reviewed: 26 March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vatleg\\_mt\\_01\\_eng\\_td2\\_tts10#vatleg\\_mt\\_01\\_eng\\_td2\\_s176](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vatleg_mt_01_eng_td2_tts10#vatleg_mt_01_eng_td2_s176), 검색일자: 2020. 12. 29.)

38) 1개당 350g 이상 단위로 판매된 아이스크림 또는 아이스크림이 포함된 제품, 제조업자가 패키지로 밀봉했고 밀봉된 상태로 판매됐으며 1개 단위당 500g 이상인 비스킷·케이크·과자는 케이팅 과정에서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는 식품품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함. 이들 상품은 관세 코드에 따라 과자류에 해당한다면 5%의 세율 적용대상이며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세율 적용대상일 것임

39) IBFD, “Netherlands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 July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nl\\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nl_s_007.html), 검색일자: 2020. 12. 4.

40) 네덜란드 정부, “Btw-tarief voedingsmiddelen,” [https://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nl/belastingdienst/zakelijk/btw/tarieven\\_en\\_vrijstellingen/goederen\\_9\\_btw/voedingsmiddelen/voedingsmiddelen](https://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nl/belastingdienst/zakelijk/btw/tarieven_en_vrijstellingen/goederen_9_btw/voedingsmiddelen/voedingsmiddelen), 검색일자: 2020. 12. 3.

## 20.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는 부가가치세 세율로 표준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둠<sup>41)</sup>

- 표준세율은 20%임
- 경감세율은 10%, 13%, 19%의 3가지가 있음<sup>42)</sup>
  - 10%의 세율은 「부가가치세법」 [부록(Annex) 1]에 열거된 재화(식료품, 물, 서적, 약품 등), 레스토랑에서 공급한 식음료 서비스 등에 대해 적용함
  - 13%의 세율은 「부가가치세법」 [부록 2]에 열거된 재화(파종용 씨앗·과일, 동물먹이용 뿌리)의 공급, 동식물의 번식, 스포츠 등에 대해 적용함
  - 19%의 세율은 독일과의 접경지역(Jungholz and Mittelberg)에 거주지·사업장·고정사업장 등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 지역 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에 한해 적용함<sup>43)</sup>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사람 섭취용 식료품은 10%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부가가치세법」 [부록 1]은 <부표 13>과 같은 것을 식료품으로 예시함
- 사람 섭취용 식료품에는 파종용 씨앗·과일, 동물먹이용 뿌리, 동식물 비육제, 식품산업의 부산물 및 쓰레기 등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은 「부가가치세법」 [부록 2]에 따라 13%의 경감세율 적용대상임

41) IBFD, "Austria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 August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at\\_s\\_7.4.&refresh=1607411443809#evat\\_at\\_s\\_7.4.](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at_s_7.4.&refresh=1607411443809#evat_at_s_7.4.), 검색일자: 2020. 12. 9.

42) 2020년 오스트리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일정 기간에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 등에는 특별히 0%, 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한정적 조치이므로 본문에서는 생략함

43) 이는 오스트리아 접경지역 사업자의 경쟁력을 위해 도입된 조치임. 독일의 표준세율이 19%인데 오스트리아의 기본세율이 20%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독일의 표준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 것임

〈부표 13〉 오스트리아의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세율	내용
10%	- 고기, 도살한 가축의 식용부산물
	- 생선(관상용 생선, 조개류, 연체동물, 다른 무척추 수생동물은 제외함)
	- 우유, 유제품, 조류의 알, 천연꿀, 식용 동물성생산물(animal product)
	- 채소, 건조한 콩과의 채소(껍질을 벗긴 것, 분쇄한 것을 포함함)
	- 식용 과일, 견과류
	- 향신료
	- 옥수수
	- 제분상품(milling products)
	- 감자의 가루, 세몰리나, 낱알, 펠렛
	- 말린 콩류의 가루, 세몰리나, 파우더 상품
	- 밀, 곡물, 감자의 녹말
	- CN 12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름을 짤 수 있는 식물 종자, 기름원료가 되는 과일(oleaginous fruits)과 그 가루</li> <li>• 신선·건조·갈린·분쇄·펠렛 상태의 홉, 홉가루(루폴린)</li> <li>• 민트, 라임 꽃, 린덴 잎, 세이지, 카모마일 꽃, 기타 가정용 차</li> <li>• 향신료용으로 소매 판매되며 포장 팩에 든 로즈마리, 썬, 바질, 오레가노</li> <li>• 신선·냉장·냉동·건조·갈린 상태의 캐러프, 사탕무, 과일의 씨나 알맹이 또는 기타 채소상품(부지 않은 치커리종의 뿌리)으로 주로 사람이 섭취할 용도인 것</li> <li>• 곡물의 껍과 겉껍질(생것, 절단된 것, 갈린 것, 압착된 것, 펠렛을 포함함)</li> </ul>
	- 펙틴 결정체
	- CN 15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쇠(양)기름, 조류 기름</li> <li>• 올레오 마가린(oleomargarine, 인조 마가린)</li> <li>• 식용 식물성 기름과 그 일부(정제되었지만 화학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포함함)</li> <li>• 식용 동물성, 식물성 지방 및 그 일부(수소와 결합되었거나 에스테르화되었거나 정제되었지만 화학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포함함)</li> <li>• 마가린, 동식물성 지방과 기름의 식용 혼합물 또는 조제물</li> </ul>
	- 고기, 생선, 조개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무척추 수생동물
	- 설탕과 그 제품(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과 엿당은 제외함)
	- 코코아 파우더(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초콜릿, 첨가제를 포함하지 않는 것)
	- 제빵제품으로 곡물, 밀가루, 녹말, 우유로 만든 조제용 물질
	- 채소, 과일, 견과류, 기타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용 물질(과일, 야채 주스를 제외함)
	- 기타 식품 조제용 물질
	- 물

## 〈부표 13〉의 계속

세율	내용
10%	- 우유, 유제품(첨가물이 있는 것을 포함하나 커피, 차, 마테차와 그 추출물 등을 포함한 것은 제외함)
	- 식초
	- 가정용 소금
	- 상업용 암모늄 탄산염 등
	- 초산
	- 사카린과 그 염
	- 취기제(odorants)와 그 혼합물(식품 소매판매업에서 포장에 사용하는 것)
	- 젤라틴
	- 건조된 효소로 영양성분을 포함하는 것
	- 감미료

자료: 오스트리아 「부가가치세법」 [부록(Annex) 1]을 저자 정리

## 21. 폴란드

□ 폴란드는 부가가치세 세율로 표준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둠<sup>44)</sup>

○ 표준세율은 23%임

○ 경감세율은 8%, 5%의 두 가지가 있음

- 8%의 세율은 폴란드 「부가가치세법」 [부록(Annex) 3] Schedule 3에 열거된 농업 관련 용역과 재화(일부 일반식료품을 포함함), 레스토랑,<sup>45)</sup> ISBN 번호가 매겨진 인쇄된 책자, 의료기기 등에 대해 적용함<sup>46)</sup>

- 5%의 세율은 일부 기본식료품, 농업생산용 종자, 20% 이상의 과일원료가 들어간 과일주스, 일정 지역에서만 발간되는 기간지나 연보 등 폴란드 「부가가치

44) IBFD, "Poland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 October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pl\\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pl_s_007.html), 검색일자: 2020. 11. 25.

45) 레스토랑에서 알코올을 포함한 상품, 커피, 차, 탄산수를 공급한 경우에는 표준세율 적용대상임

46) 폴란드 재무부 장관은 8% 경감세율 적용대상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세법」 [부록 3] Schedule 10에 열거된 일부 재화에 대해 적용함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열거된 일부 일반식료품, 기본식료품에 대해 각각 8%, 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며 열거되지 않은 식료품에 대해 23%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부가가치세법」 [부록 3] Schedule 3에 열거된 일부 일반식료품(신선 감귤류 과일, 견과류, 보존 처리된 과일, 말린 채소, 일부 과자류(pastry goods))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적용함
  - 「부가가치세법」 [부록 3] Schedule 10에 열거된 일부 기본식료품(빵·고기·신선 과일과 채소, 유제품 등)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함
  - 고급식료품(탑스터·캐비어 등), 감미료, 미네랄워터 등 경감세율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식료품에 대해서는 23%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동물 섭취용 식료품은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표준세율을 적용할 것임

〈부표 14〉 폴란드의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세율	관세번호	내용
8%	ex 09	- 커피, 차, 마테차, 향신료(단 아래에 열거한 것들은 제외함) • CN 0901에 해당하는 구워지지 않았거나 디카페인 처리된 커피, 커피 껍질, 커피를 포함하는 커피 대체품(커피 함량은 불문함) • CN 0902에 해당하는 차 • CN 0903.00.00에 해당하는 마테차
	ex 2101	- 설탕, 설탕과자류(sugar confectionery): 단 CN 1704에 해당하는 과자류(화이트초콜릿을 포함함)는 제외함
	ex 2101	- 구운 치커리 및 다른 구운 커피대체품과 그 추출물, 에센스, 농축물
	ex 2103	- 소스와 그 조제용 물질, 혼합 양념과 시즈닝, 머스터드향과 굵은 가루, 준비된 머스터드
	ex 2106	- 달리 명시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식품 조제용 물질: 동식물성 지방(혼합물), 치즈 유사품(cheese-like products), 실제 알코올 농도가 1.2%를 초과하는 상품, 유아용 조제분유(infant formulae), 우유와 아동용 가공 우유 등
	ex 3503	- 젤라틴과 그 부산물
	ex 2201	- 물

## 〈부표 14〉의 계속

세율	관세번호	내용
	021	- 육류, 식용 내장
	ex 03	-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무척추 수생동물(단 랍스터, 문어와 CN 0306-CN030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04	- 유제품, 조류의 알, 자연꿀, 기타 식용 동물성 제품
	0504.00.00	- 신선·냉장·냉동·염장·소금물에 담근·건조·훈연한 동물(생선은 제외함)의 내장, 방광 및 위
	07	- 식용 식물, 뿌리와 줄기
	08	- 식용 과일과 견과류, 감귤류나 멜론의 껍질
	10	- 곡물
	11	- 도정제품, 맥아, 녹말질(starches), 이눌린, 글루텐
	ex 12	- 기름 짜기용 씨앗, 기름원료가 되는 과일, 잡곡, 씨앗 및 과일, 산업용 또는 약용 식물, 짚과 사료 - 사람 섭취용인 것에 한함
	ex 15	- 동식물의 지방, 기름, 유제품, 왁스 등(식용에 한함)
	ex 16	- 고기,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단 CN 1604에 해당하는 캐비어와 그 대체품, 랍스터·문어와 CN 1603.00과 CN 1605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ex 19	- 곡물, 밀가루, 전분, 우유, 과자류(pastry goods)
5%	ex 20	- 야채, 과일, 견과류 또는 기타 식물의 일부(실제 알코올 함량이 1.2% 이상인 것은 제외함)
	2104	- 수프, 죽 등
	2105.00	- 아이스크림, 기타 식용 얼음(코코아 포함 여부는 불문함)
	ex 2106	- 동식물성 지방(의 혼합물), 치즈 유사제품(모조 치즈), 「식품영양안전법」에 따른 유아용 분유 및 성장기용 분유
	ex 2202	- 물(미네랄워터, 탄산수, 기타 설탕이나 감미료, 가향제를 포함한 비주류)로 CN 4단위가 2009에 해당하는 과일·야채주스를 제외한 것으로 아래의 것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구르트, 버터밀크, 케피어, CN04에 포함되지 않는 우유(단 커피와 그 추출물 등을 포함하는 것은 제외함)</li> <li>• 비알코올음료로 과일·야채 중량의 비중이 전체 구성물질의 20% 이상인 것</li> <li>• 이유식(「식품영양안전법」에 따른 영아용 조제분유 및 성장기용 조제분유(infant formulae, follow-on formulae) 등)</li> <li>• CN 0401부터 CN 0404에 해당하는 상품 또는 이들 상품에서 얻은 지방을 포함하지 않는 것(콩으로 만든 음료로 단백질 포함량이 2.8% 이상인 것(CN 2202.99.11), 콩으로 만든 음료로 단백질 포함량이 2.8% 미만인 것·견과류로 만든 음료(CN 08), CN 10에 속하는 곡물 또는 CN 12에 속하는 씨앗(CN 2202.99.15)</li> </ul>
	-	- 기타 「식품영양안전법」에 규정된 특별한 의료목적의 식이용법용 식품
표준세율	-	- 그 외 식료품(랍스터·캐비어와 같은 고급식료품, 감미료, 미네랄워터 등)

자료: 폴란드 「부가가치세법」 [부록(Annex) 3]을 저자 정리

## 22. 포르투갈

- 포르투갈은 부가가치세 과세 시 3개 지역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데, 본문은 포르투갈 본토(mainland Portugal) 지역의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함<sup>47)</sup>
  - 부가가치세 과세 시 포르투갈 본토, 아조레스 군도, 마데이라 3개 지역으로 나눠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함
    - 표준세율의 경우 포르투갈 본토는 23%, 아조레스 군도(Azores)는 18%, 마데이라섬(Madeira)은 22%임
    - 경감세율의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포르투갈 본토는 13%와 6%, 아조레스 군도는 9%와 4%, 마데이라섬은 12%와 5%임
  - 단 세율만 차이가 있으며 표준세율과 경감세율 적용 범위는 포르투갈 본토 기준을 다른 2개 지역에서 준용하므로 차이가 없음
  
- 포르투갈은 부가가치세 세율로 표준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둠<sup>48)</sup>
  - 표준세율은 23%임
  - 경감세율은 6%와 13%의 두 가지가 있는데 6%는 기본식료품, 서적·신문·약품 등에 대해 적용하며 13%는 일부 기본식료품(통조림, 조리된 식사, 미네랄워터 등), 악기, 유류, 식품과 음료 관련 식사용역의 공급 등에 대해 적용함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모유의 공급을 포함함), 교육 등에 적용됨
  
- 기본식료품은 6%, 통조림·조리된 식사 등 일부 가공식료품은 13%의 경감세율로

47) IBFD, "Portugal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 February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pt\\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pt_s_007.html), 검색일자: 2020. 12. 25.

48) IBFD, "Portugal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 February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pt\\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pt_s_007.html), 검색일자: 2020. 12. 25.

과세하며 그 외 식료품은 23%의 표준세율로 과세함

- 곡류·육류·생선·유제품·채소 등 일반적 식료품에 대해서는 6%를 적용하며 일부 생선과 연체동물의 통조림·조리된 식사·탄산수 등 일부 식료품에 대해서는 13%를 적용함
  - 건조·염장·통조림으로 만든 생선이 일반적인 생선인 경우에는 6%로 과세하나 황새치, 철갑상어, 연어인 경우에는 13%로 원료에 따라 차등 과세함
  - 또한 연체동물을 건조·염장한 경우에는 6%로 과세하나 통조림으로 만든 경우에는 13%로 가공방법에 따라 차등 과세함
- 앞서 열거되지 않은 기타 식료품에 대해서는 23%의 세율을 적용함

〈부표 15〉 포르투갈의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세율	내용
6%	- 곡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껍질을 벗긴 것, 빵은 것, 정미한 것, 데친 것, 냉동한 것(glacée), 파쇄한 것)</li> <li>• 우유 또는 비우유 성분으로 만든 가루</li> <li>• 페스트리(사람 섭취용)와 기타 유사한 말린 파스타(속을 소 등으로 채운(stuffed) 파스타는 제외함)</li> <li>• 빵</li> <li>• 세이탄(고단백 저지방 밀 글루텐), 두부, 템페(콩을 발효시킨 인도네시아 음식), 대두조직(texturized soya)</li> </ul>
	- 신선·냉동 상태의 육류, 식용 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종류의 동물</li> <li>• 돼지류 동물</li> <li>• 양, 염소류 동물</li> <li>• 말과(equidae) 동물</li> <li>• 가금류</li> <li>• 가축용 토끼</li> </ul>
	- 생선, 연체동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선, 연체동물: 신선(살아있는지 여부는 불문함)·냉장·냉동·건조·염장한 생선을 포함함. 단 생선의 훈제, 황새치·철갑상어·연어를 건조·염장·통조림화한 것 및 그 알(캐비어)은 대상에서 제외함</li> <li>• 생선통조림: 통·부분·슬라이스된 것·파테(pâtê, 으갠 것)를 포함함. 단 훈제한 생선이나 황새치, 철갑상어, 연어의 경우 건조·염장·통조림 및 그 알(캐비어)은 대상에서 제외함</li> <li>• 건조·냉동한 연체동물</li> </ul>

〈부표 15〉의 계속

세율	내용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유, 유제품, 조류의 알</li> <li>• 우유(자연우유, 농축우유, 멸균우유, 농축 무가당우유, 저온살균우유, 연유, 발효유, 덩어리·가루·과립우유)와 크림</li> <li>• 식이요법용 우유(dietetic milks)</li> <li>• 버터(다른 제품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함)</li> <li>• 치즈</li> <li>• 요구르트(저온살균 요구르트를 포함함)</li> <li>• 신선·건조·보존 처리된 조류의 알</li> <li>• 초콜릿·향·비타민 등이 첨가된 우유</li> <li>• 우유음료(milky drink)와 디저트</li> <li>• 두유, 요구르트(두부를 포함함)</li> <li>• 식용 지방, 기름: 올리브유, 라드와 돼지 지방을 포함함</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과일, 채소, 원예 상품, 수생식물(algae)</li> <li>• 신선·냉장·건조·탈수된 채소, 원예 상품</li> <li>• 냉동된 채소, 원예 상품(기존에 조리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함)</li> <li>• 말린 콩과의 채소(날알, 껍질을 벗긴 것, 쪄진 것)</li> <li>• 원상태인 과일, 탈수된 과일</li> <li>• 날 것·신선·건조 상태의 수생식물</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미네랄워터, 샘물, 약용 물, 탄산수 또는 다른 물질이 첨가된 것은 제외함)</li> <li>- 벌꿀, 전통적인 꿀</li> <li>- 소금(염화나트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압염</li> <li>• 바다소금</li> </ul> </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스: 과일, 원예상품, 수생식물즙, 시리얼, 쌀, 아몬드, 캐슈넛, 헤이즐넛이 든 것으로 주류가 아닌 것</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이요법용 상품: 소화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장 건강용, 글루텐이 없는 것</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생선과 연체동물의 통조림</li> <li>- 조리된 식사(ready-made meals): 현장에서 섭취할 수 있는 것, 포장용인 것, 배달용(home delivery)인 것을 포함함</li> <li>- 미네랄워터, 샘물, 약용 물, 탄산수 또는 다른 물질이 첨가된 물</li> <li>- 식사용 저가 포도주(table wine)</li> </ul>
표준세율	위에 열거되지 않은 식품

자료: 포르투갈 「부가가치세법」 [부록(Annex) I-A]를 저자 정리

## 23. 루마니아

- 루마니아는 부가가치세 세율로 표준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둠<sup>49)</sup>
  - 표준세율은 2020년 현재 19%임
    - 루마니아의 표준세율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24%,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20%로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음
  - 경감세율은 5%와 9%의 두 가지가 있음
    - 9%의 경감세율은 사람·동물 섭취용 식료품(food), 사람·동물용 약품, 인공기관과 부속물(단 치과용 인공기관은 제외함), 농업용 생산용품(비료 등) 등에 대해 적용함
    - 5%의 경감세율은 교과서, 도서, 뉴스, 기간지, 고품질음식(high-quality foods), 문화 예술 공간(박물관, 동물원, 문화행사, 영화관 등), 숙박업, 식당과 케이터링 서비스 등에 대해 적용함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사람·동물 섭취용 식료품에 대해 9%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품질음식에 해당한다면 더 낮은 5%의 경감세율을 적용함<sup>50)</sup>
  - 사람·동물 섭취용 식료품은 사람과 동물이 섭취하기 위한 용도의 식료품으로 살아있는 동물과 가금류, 식품 준비에 사용되는 식물·재료, 식료품의 보충제와 첨가물을 의미함
    - 단 고품질 음식은 일반적 식품에 대한 규정이 아닌 별도 규정을 적용함
    - 음료(단 주류는 제외함)도 일반적 식품에 포함함
  - 고품질음식(high-quality foods)이란 루마니아 농촌개발부로부터 산악·친환경

49) IBFD, "Romania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23 October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ro\\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ro_s_007.html), 검색일자: 2020. 12. 17.

50) 루마니아 「부가가치세법」 Annex I-A (d), (k)

적·전통적 제품이라고 인증받은 음식을 의미함

## 24. 슬로베니아

- 슬로베니아는 부가가치세 세율로 표준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둠<sup>51)</sup>
  - 표준세율은 22%임
  - 경감세율은 9.5%이며 「부가가치세법」 [부록 I]에 열거된 사람·동물용 식료품, 물, 약품, 문화전시, 작가·작곡가의 로열티, 주거용 부동산, 요양서비스 등에 대해 적용함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사람·동물 섭취용 식료품에 대해 9.5%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식료품은 음료를 포함하며 식품을 조리하기 위한 살아있는 동물, 종자, 식물, 원료 및 일반적으로 식품 첨가물·대체물로 사용되는 제품을 포함함<sup>52)</sup>
  - 알코올음료는 식품이 아니므로 22%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25. 슬로바키아

- 슬로바키아는 부가가치세 세율로 표준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둠<sup>53)</sup>
  - 표준세율은 20%임
  - 경감세율은 10%인데 열거된 식품, 서적·신문·정기간행물(광고 비중이 50% 미

---

51) IBFD, “Slovenia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31 July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si\\_s\\_7.&refresh=1606286894399#evat\\_si\\_s\\_7.](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si_s_7.&refresh=1606286894399#evat_si_s_7.), 검색일자: 2020. 1. 5.

52) 슬로베니아 「부가가치세법」 [부록 (Appendix)] I Article 1

53) IBFD, “Slovak Republic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 July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sk\\_s\\_7.&refresh=1606285644570#evat\\_sk\\_s\\_7.](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sk_s_7.&refresh=1606285644570#evat_sk_s_7.), 검색일자: 2020. 1. 8.

만인 것) 등에 대해서 적용함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열거된 일반식료품에 한해 10%의 경감세율로 과세하고 그 외 식료품은 20%의 세율로 과세함<sup>54)</sup>

○ 「부가가치세법」 [부록(Annex) 7]에 경감세율 적용대상으로 열거된 일반식료품으로는 육류, 유제품, 생선, 채소, 케이크, 빵 등이 있음

〈부표 16〉 슬로바키아의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세율	관세번호	내용
10%	0201	- 신선·냉장 상태인 소의 고기
	ex 0203	- 신선·냉장·냉동 상태인 식용 돼지의 고기
	ex 0204	- 신선·냉장·냉동 상태인 염소·양 고기(야생 염소·양은 제외함)
	ex 0207	- 신선·냉장·냉동 상태인 가금류의 고기와 식용 내장
	ex 0208	- 그 외 신선·냉장·냉동된 사육토끼 등의 고기와 식용 내장
	ex 0301	- 민물 활어(03011100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ex 0302	- 신선·냉장·냉동된 민물생선(0304)의 살코기(03011100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ex 0304	- 신선·냉장·냉동된 생선 살코기와 기타 생선(03011100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의 고기(저뚱는지 여부는 불문함)
	ex 0401	- 우유, 크림(응축되었거나 설탕, 감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것에 한함)
	0405.10	- 버터
	0403	- 버터밀크, 덩어리진(curdled) 우유와 크림, 요구르트, 케피르 및 기타 발효되었거나 산화된 우유와 크림(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향, 견과류, 과일, 코코아 등이 포함되었는지는 불문함)
	0406	- 치즈와 응유(양의 젖으로 일정한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에 한함)
	0409.00.00	- 자연 꿀
	0701	- 신선·냉장 상태의 감자
	0702.00.00	- 신선·냉장 상태의 토마토

54) IBFD, "Annex 7 to Act No. 222/2004 Coll. as amended by Act No. 656/2006 Coll. LIST OF GOODS WITH THE REDUCED TAX RATE,"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sk\\_annex\\_1\\_a#evat\\_sk\\_annex\\_1\\_a](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sk_annex_1_a#evat_sk_annex_1_a), 검색일자: 2021. 1. 4.

〈부표 16〉의 계속

세율	관세번호	내용
10%	0703	- 신선·냉장 상태의 양파, 샐롯, 마늘, 기타 파속 채소
	0704	- 신선·냉장 상태의 양배추·컬리플라워·콜라비·케일·기타 배추속 식물
	0705	- 신선·냉장 상태의 양상추·치커리
	0707.00	- 신선·냉장 상태의 오이·콩과 채소(껍질을 벗겼는지 여부는 불문함)
	0709	- 신선·냉장 상태의 기타 채소
	0808	- 신선 상태의 사과·배·마르멜로
	1905	- 빵·페스트리, 케이크, 비스킷, 기타 제과제품(코코아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불문함), 제약 용도로 사용하는 식용 빈껍술, 라이스페이퍼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 농림부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신선 빵, 40~50g 이내 중량으로 특별처방 (special prescription)에 따른 신선 페스트리에 한함
	ex 2009	- 과일주스(포도액을 포함함)와 야채주스로 발효되지 않았고 알코올을 포함하지 않은 것(설탕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설탕함량이 100ml당 5g 이하인 것에 한함)
	ex 1905.90.30	- 빵(꿀, 달걀, 치즈, 과일을 포함하지 않고, 설탕과 지방 함량이 각각 5% 이하인 것으로서 농림부 규정을 준수하는 것)
2925.11.00	- 사카린과 그 염	
표준세율	10% 경감세율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식품

자료: 슬로바키아 「부가가치세법」 [부록(Annex) 7]

## 26. 핀란드

□ 핀란드는 부가가치세 세율로 표준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둠<sup>55)</sup>

- 표준세율은 24%임
- 경감세율은 14%와 10%의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동물의 섭취용 식료품과 그 혼합물·첨가물, 식당과 케이터링 서비스(식음료 공급)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TV 라이선스비용, 스포츠 활동, 「약품법」에 규정된 약품, 서적, 미술품 등에 대해

55) IBFD, "Finland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 January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fi\\_s\\_7.2.&refresh=1606281319210#evat\\_fi\\_s\\_7.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fi_s_7.2.&refresh=1606281319210#evat_fi_s_7.2.), 검색일자: 2020. 12. 9.

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함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사람·동물의 섭취용 식료품에 대해 14%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식품·식료품(foodstuffs and groceries), 음료 및 기타 사람의 영양물질, 재료, 향신료, 보존료, 식용색소, 기타 이들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첨가물(additives used in manufacturing them)은 14%의 경감세율 적용대상임
    - 또한 가축의 사료와 혼합물, 재료, 첨가물, 사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한 산업폐기물, 사료용 물고기(fodder fish)도 14%의 경감세율 적용대상임
    - 모유의 공급은 면세대상임
    - 살아있는 동물, 수돗물(tap water), 약품 및 독, 사람·동물의 섭취용 식품을 제조하는 것 외의 산업용도로 사용된 제품은 표준세율을 적용함

## 27. 스웨덴

- 스웨덴은 부가가치세 세율로 표준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면세를 둠<sup>56)</sup>
  - 표준세율은 25%임
  - 경감세율은 12%, 6%의 두 가지가 있는데 식료품(수입품을 포함함), 레스토랑과 케이터링 서비스, 숙박업 등에 대해서는 12%의 세율을 적용하고 서적, 정기간행물, 교통,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을 적용함
  -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는 보험,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적용됨
- 식료품에 대해 일괄 12%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단 알코올음료 등은 표준세율 적용대상임

56) IBFD, "Sweden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7 February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se\\_s\\_007.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se_s_007.html), 검색일자: 2020. 12. 7.

세법연구 20-07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외사례 연구**

---

발 행 2020년 12월 31일  
저 자 정다운·이성현·이서현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쇄 거목정보산업(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ISBN 979-11-6655-051-5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